

2021 군사법원 연감

[2021. 1. ~ 2021. 12.]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14대 고등군사법원장
대령 송 광 석
(2022. 1. 3. ~ 현재)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군사법원 연감은 지난 1년 간의 군사법원 운영 현황과 통계자료를 정리·수록하여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은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 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인원현황, 군사법 행정의 운영 현황,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한 소중한 기록입니다.

지난해 군사법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및 판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판결서 열람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민에게 임의어 검색을 통한 판결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비실명판결서 처리기준 준수를 통한 소송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2018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최초로 ‘상관명예훼손 등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이후 2020년도에는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2021년 4월부터는 군사기밀보호법 양형기준안 마련을 추진하여 군사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 군내 성범죄 사건처리과정에서 촉발된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법원 전 직원은 더욱 엄격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국민 및

장병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신뢰받는 군사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연감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병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운영은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 앞에 놓여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의 투명성, 재판 결과의 공정성, 모든 군사법원 소속원들의 직무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고등군사법원이 발간하는 마지막 연감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니는 이번 군사법원 연감이 장병과 국민을 위한 군사법 제도 구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군사법원 연감은 책자 이외에도 군사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PDF파일)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므로, 법원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향후 개정법에 따른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이후에도 군사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료로서 군사법원 연감 발간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연감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이하 각 군사법원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료수집 및 발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대령 송 광 석

목 차 / CONTENTS

군사법원 청사 전경	1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
육군 군사법원	4
해군 군사법원	5
공군 군사법원	7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9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
육군 군사법원	12
해군 군사법원	13
공군 군사법원	14
군사법원 부대기	15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7
육군 군사법원	18
해군 군사법원	19
공군 군사법원	20
연간 발자취(화보)	21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3
육군 군사법원	30
해군 군사법원	31
공군 군사법원	32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33

연간 군사법원 운영	37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9
육군 군사법원	50
해군 군사법원	57
공군 군사법원	60
2021년 사건 통계현황	63
고등군사법원	65
국방부/각 군 보통군사법원 종합	8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01
육군 군사법원	119
해군 군사법원	137
공군 군사법원	155
2021년 주요 판례	173
고등군사법원	17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99
육군 군사법원	206
해군 군사법원	227
공군 군사법원	234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237
2021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243

2021 군사법원 연감

군사법원 청사 전경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육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육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해군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 해병대



[해병사 군사법원 청사 전면]



[해병사 군사법원 법정 내부]

□ 공군 군사법원



[공군본부 군사법원 청사 전면]



[공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내부]

2021 군사법원 연감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준장 박 중 형
(2020. 1. 3. ~ 2022. 1. 2.)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육군대령 서성훈



고등2부장
해군대령 장준홍



보통부장
육군대령 정유림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이형일



국선변호부장
육군중령 노연우



행정처장
4급 전철영

□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장



18대 법원장 대령 정의관
(2020. 12. 30. ~ 2021. 12. 28.)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김화경



재판2부장
중령 김영오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재판4부장
대령 황민제



재판연구부장



국선변호부장
소령 이미지



행정과장
4급 유재열

□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장



16대 법원장 중령 김성준
(2021. 1. 5. ~ 현재)

○ 재1재판부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소령 설리라



군판사
소령(진) 이희래



국선번호부장
중위 설민우



주임원사
원사 류재명

○ 재2재판부 주요 직위자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군판사
소령 김다미



군판사
소령(진) 권경민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장



14대 법원장 대령 송 가 준
(2019. 12. 24. ~ 2022. 1. 4.)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대령 송가준



재판2부장
대령 권상진



선임군판사
소령 서대봉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손승우



행정과장
준위 정대기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2021 군사법원 연감

군사법원 부대기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생명, 힘, 정열, 사랑)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창 안 자: 군판사 대위 박 성 완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홑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공군 군사법원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햇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2021 군사법원 연감

연간 발자취(화보)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감사장 수여 (2021. 1. 11.)



군사경찰 정병 교육 (2021. 1. 13.)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방문 (2021. 2. 2.)



국선번호인 화상접견 시행 (2021. 2. 15.)



고등군사법원-숙명여대 軍·學 협약 (2021. 3. 23.)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방문 (2021. 3. 24.)



국방기관 업무평가 회의 (2021. 4. 22.)



군판사 직무교육 (2021. 5. 12.)



사법연수원 교수진 방문 (2021. 5. 27.)



개인화기 사격훈련 (2021. 6. 21.)



전반기 성과분석 회의 (2021. 7. 2.)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재판 방청 (2021. 8. 12.)



보안표어 작성 경연대회 표창수여 (2021. 10. 27.)



우수 국선변호인 감사장 수여 (2021. 12. 28.)

□ 육군 군사법원



모의 장병참여재판 개최 (2021.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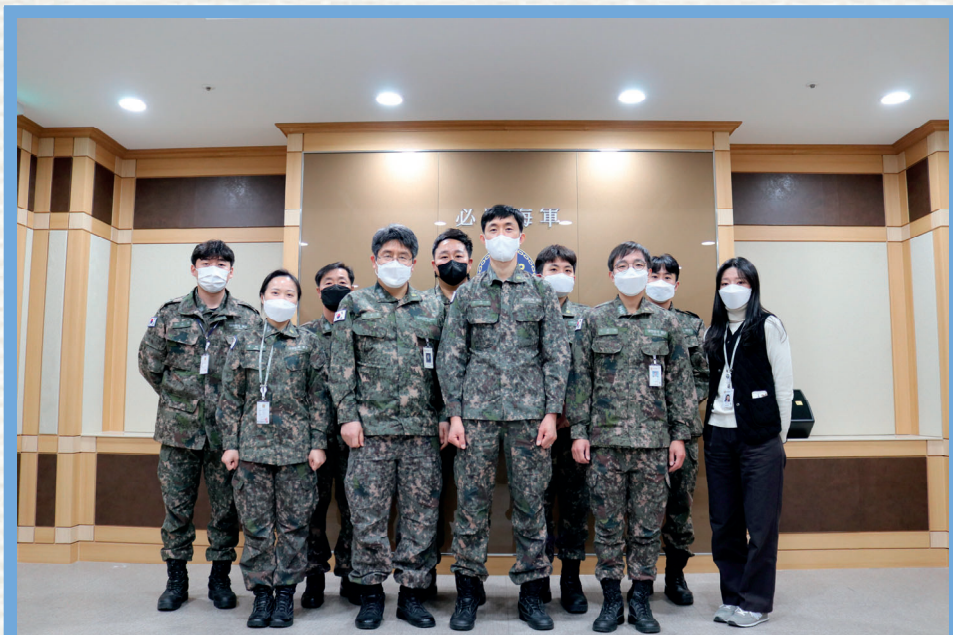


군판사 성인지 교육 (2021. 10. 8.)

□ 해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2021.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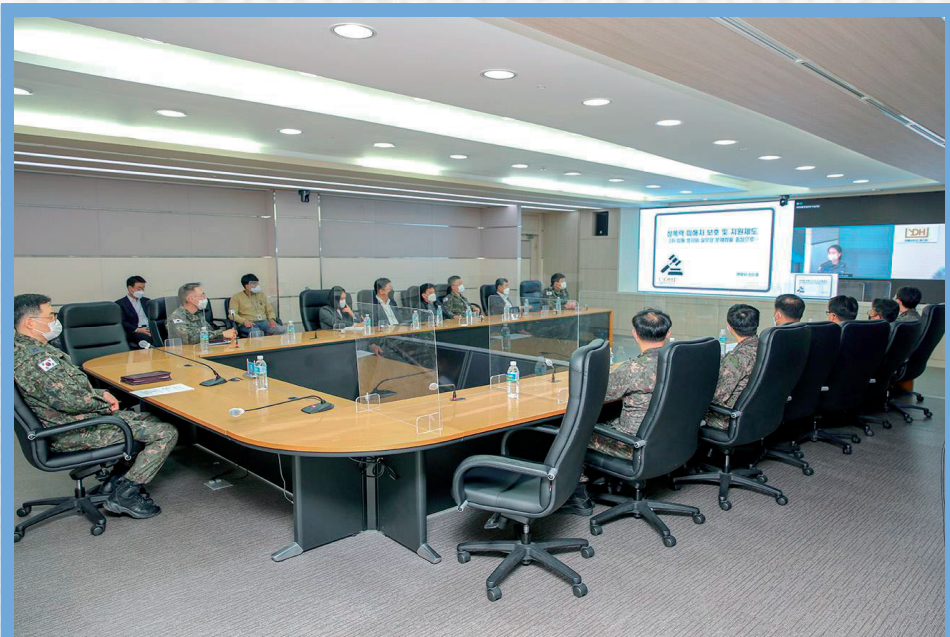


해군본부 군사법원 직무간담회 (2021.12.31.)

□ 공군 군사법원



소송관계자 간담회 (2021. 2. 16.)



성범죄 재판특강 (2021. 10. 28.)

2021 군사법원 연감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p>1월</p>	<p>4일 [해 군] 제15대 군사법원장 이임 5일 [해 군] 제16대 군사법원장 취임 11일 [국방부] 우수 국선변호인 감사장 수여식</p>
<p>2월</p>	<p>1일 [국방부] 청사 대규모 보수공사(~6월) 16일 [공 군] 21년 소송관계자 간담회</p>
<p>3월</p>	<p>22일~26일 [육 군] 종행교 군판사반 교육 2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숙명여대 군·학 협약 체결</p>
<p>4월</p>	<p>21일 [해 군] 제1해병사단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 22일 [국방부] 국방기관 업무평가 회의 27일 [육 군] 군판사 임명식</p>
<p>5월</p>	<p>12일~14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25일 [공 군] 미 공군 우주법 화상 강연 31일 [육 군]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 개정</p>
<p>6월</p>	<p>16일 [해 군] 해군작전사령부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 18일 [공 군] 법원장 주관 성폭력 예방 교육 21일 [국방부] 개인화기 사격 등 각종 훈련 실시</p>

7월	<p>1일 [해 군] 해군 군사법원 창설 21주년 기념행사</p> <p>1일 [공 군] 제21주년 공군 군사법원 창설행사</p> <p>2일 [국방부] 전반기 성과분석 회의 및 표창장 수여</p>
8월	<p>1일 [육 군] 재판연구담당 신규임용</p> <p>4일 [해 군] 해군 제1함대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p> <p>12일 [국방부] 군 성범죄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 재판 방청</p>
9월	<p>17일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등 교육</p> <p>28일 [육 군] 모의 장병참여재판 개최</p>
10월	<p>8일 [육 군] 군판사 성인지 교육</p> <p>14일 [육 군] 저작사 전자법정 구축 공사 완료</p> <p>14일 [해 군] 해군 제2함대 지도방문 및 직무감찰</p> <p>19일 [국방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p> <p>28일 [공 군] 성범죄 재판 특강</p> <p>29일 [육 군] 2작사 군사법원 지도방문</p>
11월	<p>9일 [공 군] 제17회 항공 우주법 세미나</p> <p>4일~5일 [육 군] 2, 8군단 군사법원 지도방문</p> <p>10일 [해 군] MZ세대 장병 이해를 위한 토론회</p> <p>15일~16일 [육 군] 1, 5, 6군단 군사법원 지도방문</p> <p>22일 [국방부] 각군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p> <p>24일 [해 군] 2021 군사재판실무 발간</p> <p>29일 [해 군] 해군 군사법원 성과 및 양형분석 회의 및 서기 실무토의</p>
12월	<p>1일 [국방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 행사</p> <p>14일 [육 군] 저작사, 특전사 군사법원 지도방문</p> <p>31일 [해 군] 해군본부 군사법원 직무간담회</p>



2021 군사법원 연감

연간 군사법원 운영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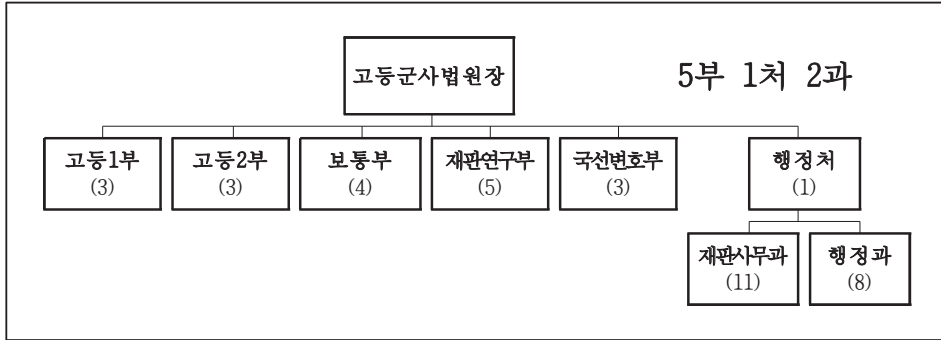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혁

194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 ○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
195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 -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196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 -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존치 -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
198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 ○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199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통합(국방부, 육·해·공군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 - 구속영장발부권: 관할관(지휘관) → 군판사
2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2016. 1. 6. (2017. 7. 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2021. 9. 24. (2022. 7. 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폐지 → 서울고등법원 이관 - 1심 5개 지역군사법원 운영 -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42	17	0	8	14
평 시	39	17	0	8	14

• 주요 보직자('21. 12. 31.기준)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박 종 형	법무#60	군법11
고등1부장	육군대령	서 성 훈	법무#45	군법14
고등2부장	해군대령	장 준 흥	해법무#23	군법15
보통부장	육군대령	정 유 림	법무#69	군법17
재판연구부장	공군중령	이 형 일	공법무#22	군법14
국선번호부장	육군중령	노 연 우	법무#76	사시50
행정처장	4급	전 철 영	'21년 임용	임기제
재판사무과장	4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5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21. 12. 31.기준)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		
고등1부	부 장	육군대령	서성훈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전도환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박지윤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장준홍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이준우		
	고등군판사	육군소령	정초아		
보통부	부 장	육군대령	정유림		
	보통군판사	해군소령	이성은		
	보통군판사	공군소령	홍지연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김형모		
재판연구부	부 장	공군중령	이형일		
	재판연구관	육군소령	추대성		
	외국법령연구관	육군대위	박성렬		
	법원조사관	5급	양홍승		
	법원조사관	7급	—		
국선연구부	부 장	육군중령	노연우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권장안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윤성훈		
행정처	행정처장	4급	전철영		
	재판사무과	재판사무과장	4급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6급	김교성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김영화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김화연	
		군사법원서기	해군상사	임유민	
		군사법원서기	공군상사	—	
		군사법원서기	8급	이윤희	
		사건접수담당	9급	최태석	
		영장담당서기	해군중사	김한서	
		속기사	8급	이영하	
		법무통합체계담당	9급	유은옥	
		행정과	행정과장	5급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한시임기제7호	이양현	
	인사담당		한시임기제7호	임범식	
	재정담당		육군원사	손병택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한진의	
	법령자료담당		6급	백숙현	
	지휘부행정담당		7급	김유라	
전산정보담당	9급	전홍길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고등부

-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집중심리제 등 지속 실시

-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경우 수회 기일을 지정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
- 변론종결 이후 선고 전까지의 기간(평균 1개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 코로나 19로 인한 재판 연기시 즉시 특별기일 지정하여 재판 실시

- '항소심판결 파기 관리'를 통해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2021년 접수·선고한 사건 134건 중 중 대법원 파기 사건은 3건으로 파기율 2.2%, 목표치(3% 이내)미만으로 군사재판의 전문성 재확인
- 파기된 항소심판결은 '메모보고' 등을 통해 공유 및 분석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함.

- '재판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변화 노력

- 피고인, 군검사, 변호인, 증인, 피해자, 방청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판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평가 후 자체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마련

● 보통부

-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보장을 위해 변론준비절차 및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재판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 향후 공판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① 공판준비절차 적극 활용

- 피고인이 다수이거나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기일 등 공판 준비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기일이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2021년에는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공판준비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쟁점정리 및 심리절차 진행이 가능하였음.

② 공판 사건 160일 이내 처리

- 장병의 신상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판절차에 관여 중인 사건관계인의 불안한 지위 내지 정신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21년 접수된 사건의 경우 '160일 이내 사건처리율 60% 이상'으로 목표 설정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기일 연기,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사건 증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접수된 20건의 사건 중 19건 (95%)을 160일 이내에 처리하였음.

③ 재판 만족도 평가 실시

- 공판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사법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함.
- 법정 입구에 설문지를 상시 비치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군검사, 변호인, 증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방청객 등 다양한 계층에게 설문지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익명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21년은 만족도 90점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함. 설문지 답변 항목에 대하여 접수 부여 후 평균한 결과 95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열린 법원, 경청하는 법원 구현에 이바지함.

● 재판연구부

- 군형사법 양형기준 정립

- 불합리한 양형편차 시정을 통한 군사재판의 신뢰 제고 필요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軍전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어 활동
- 신설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양형기준은 '19. 7. 1.부터,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20. 7. 1.부터 시행
- '21. 4.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양형기준안 마련 중
- 매년 군사법원 판결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 군사법개혁 TF 운영 지원

- '21. 9.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군사법개혁 TF 운영 지원

[개정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진행 경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21. 8. 24.) / 본회의 통과(8. 31.) / 국무회의 통과(9. 14.)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2. 7. 1.부

·주요 내용

- 수사 재판권 민간이관 : 고등군사법원 폐지(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및 입대 전 범죄
- 군사법원 독립: 각 군 군단급 30개 → 국방부장관 소속의 1심 5개 지역군사법원
-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 평시 완전 폐지
- 군판사 신분 보장
- 각 군 본부 소속 검찰단 설치 및 군검사 독립성 강화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간 상호 협력 의무 명시
- 전시 특례 신설

- 예하 부대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 각 군 보통군사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인적교류 강화 및 군사법원 운영 관련 개선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 육군본부, 교육사, 제2군단, 제8군단 대상 실시
- 양형기준 준수 여부 및 군사법원 거점지 사전 점검 등

- 정기적 판례세미나 실시

- 고등군사법원 자체 판례세미나 활동을 통한 군판사 상호 의견 교류 및 재판 전문성 강화
- 군사법원 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 등 검토 보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검토 보고, 미국 연방 양형제도의 검토 보고, 구인영장 관련 문제점 등 검토 보고 등

- 전군 군사법원장 및 선임 군판사 간담회

-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를 통해 군사법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중추적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코로나19로 인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간담회 실시
- 각 군 군사법원 주요 실시사항 공유 및 향후 사업계획 소개

-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

-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소통 강화 및 군사재판과 관련한 최신 이슈와 민군 사법 시스템 비교 등 개선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직무연수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 교육 실시
-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최신 형사 판례 경향 등 9과목 편성
- '21 군판사 직무교육 자료 각 군 군사법원에 배포

- 양형조사 활성화 방안 추진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자 등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등을 위한 양형 조사 확대 지원
- 전군 보통군사법원 양형조사 확대 지원 안내 협조 공문 발송, 양형조사 제도 안내문 인쇄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양형조사 제도 안내문 소법정 및 대법정 게시

- 숙명여대 군학협약(MOU) 체결

- 학술대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등 공동 개최 및 교수와 군판사 상호 협력 강화

- 군사법원 관련 법령 및 예규 제·개정

- 기타 각종 규정 개정·폐지 등 협조

- 국회 업무

- 법사위 및 국방위 등 국회 각종 질의응답 자료 회신
- 각 의원실 연락 및 국회 출장 업무 수행 등

● 국선변호부

- 민간 국선변호인 명부 운영으로 피고인의 선택권 제고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추천 의뢰하여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50명(군법무관 출신 14명, 사법시험 19명, 변호사시험 17명)과 국선변호부 소속 군법무관 3명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시 해당 명부를 함께 제공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
- 다양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연임 기간 제한(3년)

-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변호 보장

- 재판부 평가서(50점), 피고인 평가서(50점)의 반영률을 1:1로 하여 합산된 평가 점수는 당해연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과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갱신 과정에 반영
- 재판부 및 피고인의 평가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의 충실한 변호를 유도하고 부적격 국선변호인은 명부 갱신 시 배제함
-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감사장 수여(연 1회)
 - * 우수 국선변호인에게 자긍심 고취: '21년 우수 국선변호인(변호사 김미경, 권혜정)

- 구속피고인 화상접견제도 구축

- 피고인 접견 편의를 위하여 민간 국선변호인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 접견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의 화상접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국선변호장교만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과 화상접견이 가능하였으나, 민간 국선변호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21. 2. 15.부터 실시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상접견신청서 및 안내자료 게시

- 국군교도소 수용자 정기 면담

- 매주 4회(월, 화, 목, 금) 국군교도소 정기 화상 법률상담 및 매월 1회 정기 방문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
 - * 기존 매주 2회(화, 목)로 진행되는 화상 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하여 국군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 실시
- 판결 주요 내용과 의미, 보석, 상소 여부 등 관련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 법률상담 강화

- 국군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방문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에 기여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속한 상담 실시

● 행정처

- 일방적이고 정적인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그룹별 소통 간담회 시행

- 개선사항

현 재		개 선
전 직원 회의	→	직책·신분 등 다양한 그룹별 순환식 간담회
부처장 중심	→	실무자 중심

- 전반기 부서별 간담회

일 정	구 분	주요내용
8.25.(수)	부서별	전반기 주요업무 내용 평가 및 후반기 주요업무 공유, 업무 배분 등 관련사항 토의

- '21년 부서별 성과분석/간담회

일 정	구 분	주요내용
12.14.(화)	재판사무과	업무실적분석/현안토의 '22년 주요업무 및 부대 재개편에 따른 준비사항 논의 기타 주요업무사항 공유
12.15.(수)	행정과	
12.16.(목)	보통부	
12.20.(월)	고등2부	
12.21.(화)	고등1부	
12.22.(수)	국선변호부	
12.28.(화)	재판연구부	

- 지휘관 주관 소수 그룹별 오찬 간담회 다수 실시
- 개선 효과 : 업무 공유 및 소통의 활성화

- 적극행정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2020년): 행정처 행정과
- 적극행정 관련 기관장 지시 및 관심사항
 -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점 부여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포상 추진
 - 민간국선변호인 화상접견 활성화 방안 지시: '21. 1월, 시무식

• 추진 사항

일 자	주 제	강 사	주요내용
6. 9.(수)	적극행정 관련 교육	문서회람 메모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개와 면책 사례 중심으로 교육
10.27.(수)	정부혁신평가 관련 교육	문서회람 질의응답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분야 (민간 국선변호인 화상접견 시행)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 자체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 국무총리 표창 수여

대 상	적극행정 내용	후속조치
중령 노연우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구속 피고인에 대한 민간 국선변호인 화상접견 제도 시행	· 혁신행정담당관실 보고 · 국무총리표창 수여

- 유연근무를 통한 “저녁이 있는 날” 시행

- 저녁이 있는 날 시행(2019. 1월부터 지속 시행)
 - 매월 마지막주 화~목 30분 추가 근무,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16: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저녁이 있는 날 제한 시행
- 시차출근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구 분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탄력근무
대 상	4명	0명	4명

-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 “단합대회” 시행

- 부서별 워크숍 실시

일 자	부서명	부서별 워크숍 행사 내용
11. 9.(화)	고 등 부 국 선 변 호 부	• 워크숍 행사(회의실) 및 오찬 - 재판에 따른 영내 간담회 실시
11.10.(수)	행 정 과	• 문화행사(영화관람) 및 오찬
11.12.(금)	보 통 부 재 판 연 구 부	• 남산 둘레길 탐방 및 오찬
11.16.(화)	재 판 사 무 과	• 인왕산 둘레길 및 창덕궁 문화탐방 / 오찬

- 부서별 워크숍을 통한 의사소통 및 단합계기 마련

- 군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활동 활성화

- 출·퇴근 및 보안일일결산 점검 : 매월
 - 점검결과 매월 전 직원 공개 및 성과상여금 반영
- 사건 재배당에 따른 공정한 재판 실시 여부 점검 : 반기
 - 점검결과 : 1분기(3), 2분기(2), 3분기(0), 4분기(0)
- 외부강의 등 규정 실태 점검
 - 외부강의 규정 등 전 직원 교육 : 연 2회, 전입 시
 - 점검결과 : 외부강의 현황 없음
- 예산 사용현황 점검 : 반기
 - 점검결과 : 목적외 사용, 시간외사용, 휴일 사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취약분야 시기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연말연시, 명절 기간 전후 이행실태 점검

-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 군무원 육아휴직(2명)에 대한 대체인력 적기 채용
 - 주무관 임범식('21. 4. 1. ~ '22. 1.31. 한시임기제)
 - 주무관 이양현('21. 7. 1. ~ '22. 9.30. 한시임기제)
- 부서관 육아휴직 및 전역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군사법개혁 및 부서관의 군무원 전환 등으로 인력보충 제한)
 - 법원서기 공군상사 박명균휴직('21. 9. 1. ~ '22. 2.28.)
 - * 법무통합체계담당 주무관 유은옥 법원서기 겸직 임무수행
 - 사건접수담당 육군중사 최재희전역('21.11.30.)
 - * 신규임용자(11. 1.) →법무통합체계담당과 사건접수담당 겸직 임무수행

- 부서의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상여금 평가 제도 운영

- 부서별 성과상여금 평가('21. 2~ 3월)

성과평가 결과 공개 (부서별 검증)	⇨	이의신청 및 접수	⇨	성과상여금 심의
------------------------	---	-----------	---	----------

- '21년 성과평가 지침 개선 의견수렴 및 평가 개선안 보고('21. 1.22.)

평가항목	내 용	사 유
공직기강	5점 → 10점	퇴근시간 미준수율 추가 반영
체력단련	10점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검정 합격여부 : 2.5점 - 특급 판정 및 체력향상 여부 : 2.5점
교육이수	3개 →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 항목에 2개 교육 추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 개선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국방기관 업무평가 항목은 그대로 유지: 재판부서(5점), 지원부서(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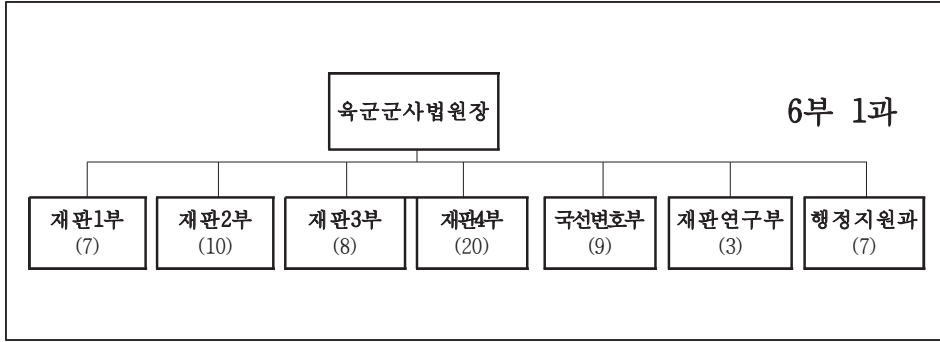
- 공적 위주의 심의를 통한 모범직원 선발 및 포상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대 상	9급 전홍길	6급 김교성	소령 홍지연
심 의	4.14.(수)	6. 9.(수)	9.23.(목)
공 적	전산(보안)업무 유공	민원업무 유공	주요 재판업무 유공

□ 육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전 시	164	83	0	40	22	19
평 시	66	34	0	13	19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령	정의관	법무68기	
재판1부장	중령	김화경	법무77기	
재판2부장	중령	김영오	법무62기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법무67기	
재판4부장	대령	황민제	법무60기	
국선번호부장	소령	이미지	법무90기	
재판연구부장	—	공석	—	
행정지원과장	4급	유재열	'86 공채	

○ 직원 보직현황('21. 12. 31.기준)

● 장교 및 행정지원과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진)	권도형	
재판1부	부장	중령	김화경	
	군판사	공석		
	군판사	소령	서지현	
	군판사	소령	조인혜	
재판2부	부장	중령	김영오	
	군판사	소령	양성화	
	군판사	소령	이시은	
	군판사	중령	최정용	
재판3부	부장	중령	박지근	
	군판사	소령	이동연	
	군판사	소령	최종욱	
	군판사	소령	오병조	
재판4부	부장	대령	황민제	
	군판사	소령	윤미섭	
	군판사	소령	박종권	
	군판사	소령	이정	
	군판사	중령	김형동	
	군판사	소령	김종광	
	군판사	소령	김희진	
	군판사	중령	송경인	
	군판사	중령	이상재	
	군판사	소령	이미정	
국선변호부	부장	소령	이미지	
	국선변호장교	대위	정문성	
	국선변호장교	대위	최상진	
	국선변호장교	대위	하준영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한동훈	
	국선변호장교	대위	박시우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정선호	
	국선변호장교	대위(진)	이수종	
재판연구부	부장	공석		
	재판연구담당	5급	김민승	
	재판연구담당	공석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4급	유재열	
	재정담당	6급	서은희	
	행정/통계자료담당	8급	성애리	

• 법원서기 및 속기사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재판1부	법원서기	6급	강은정	
	법원서기	7급	안승률	
	법원서기	8급	최양선	
	전자법정운용담당	8호	소정인	8급 이하리 육아휴직 대체
재판2부	법원서기	상사	장승환	
	법원서기	9급	권윤주	
	법원서기	하사	최규진	
	법원서기	상사	백혁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여새롬	
재판3부	법원서기	중사	사혜진	
	법원서기	중사	성은빈	
	법원서기	하사	이찬형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우은채	
재판4부	법원서기	상사	이지원	
	법원서기	중사	류지성	
	법원서기	9급	이찬희	
	법원서기	중사	윤준필	
	법원서기	7급	서윤아	
	법원서기	하사	김경렬	
	법원서기	공석		육아휴직
	법원서기	중사	박경록	
	법원서기	상사	박혜진	
	법원서기	중사	위보라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김남용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군판사 임명식

군사법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은 참모총장이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 4. 27. 참모총장 주관으로 군판사 임명식이 있었고, 2020년 이전에 임명된 군판사를 제외하고 총 14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육본 군판사 2명만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의 군판사는 장성급 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임명식이 실시되었다.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판사는 전원 영관급 법무장교로 임명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군기강 확립 및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 군판사 임명 전 종합교 교육

2021년 육·해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등을 대상(육군 9명, 해군 1명)으로 하여 육군 주관하에 2021.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군판사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재판 실무 강의뿐만 아니라 '군검사 및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군사법원 재판' 등의 강의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이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관점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군판사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신임 군판사 직무교육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주관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전군 군판사들에 대해 2021.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군판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화상 교육(Zoom 강의)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들은 주로 현직 민간 판사들이었으며 그 내용은 최신 형사판례의 경향, 영장실무, 형사증거법, 전자증거의 선별 압수 및 양형기준과 양형심리 등 형사법 최신경향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전반에 관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화상으로나마 군판사들 상호 간 및 민간 판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중한 기회도 되었다.

- 우수 국선 담당 민간변호사, 군법무관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연례적으로 위 표창 및 감사장 수여는 국선변호장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수여되었다.

● 군사법원 소통 강화

- 지도방문을 통한 야전 및 군사법원 조직개편 이해 제고

델타변이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행사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군사법원은 워크숍의 진행을 과감히 취소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도 방문을 하반기까지 미루어 오다가 방역 여건이 개선된 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지역군사법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방문을 시행하였다. 2021. 10. 29.에는 재판3부의 2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2021. 11. 4.부터 5.까지는 재판2부의 2군단과 8군단을 방문하였으며, 2021. 11. 15.부터 16.까지는 재판4부 중 1군단, 5군단 및 6군단을 방문하고 2021. 12. 14.에는 재판4부의 지상작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지도방문을 통하여 야전지역 군사법원 인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직이 개편된 후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군사법원 인원변동에 따른 예하 군사법원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군사법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 SNS 등을 활용한 군사법원 요원 의사소통 강화

군사법원과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 등의 이슈와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군판사·법원서기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빠른 피드백이 일상화되었으며, 전방부대와 수도권 및 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군사법원 판결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에 기여하고 있다.

●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 개정

이번 예규의 개정은 재판연구부의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 육군 군사법원은 재판연구담당을 5급 군무원으로 1명 선발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재판연구담당 군무원은 실질적인 군사법원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으로는 각종 판례 및 사법제도 연구, 민간 법원과 군사법원의 비교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 근거를 위 예규에 마련하였다.

- 신속한 재판 정착화

장기미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병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9년 및 2020년과 같이 월 1회 이상 공판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년 이상 지속되는 사건이 민간 법원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게 되었다.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대비

야전지역 지도방문을 통하여 지역군사법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지리적 여건과 시설 여건 등을 점검하고 조직개편 이행기의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조직개편을 전후하여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 연구 및 발간 활동

- 「재판장 매뉴얼」 개정

2020. 11. 육군본부 군사법원 조인혜 군판사가 수많은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재판장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재판장 매뉴얼」은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 각종 법률과 형사재판실무 등을 참고하여 재판장 업무 시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한 것으로, 초임 군판사 뿐만 아니라 타 보직을 거친 후 오랜만에 군판사 임무를 수행하는 중견 법무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업무 참고서적이다. 매뉴얼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오류를 점검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 주요 판례연구

중요·최신 판례에 대한 연구를 2021년에도 지속하여 군판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업무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판례연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요판례를 재판연구부에서 선정하여 요약·편집하고 일부 설명과 분석을 추가한 것으로서, 법률가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중요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연구 자료는 육군 군사법원 홈페이지 및 JAGC-NET을 통하여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메모 보고를 통해 병과원들에게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연구는 형사사건과 군 형사사건 전반을 다루었다.

- 판결문 검토보고

각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형사판결서 작성실무례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JAGC-NET에 게시함으로써 군판사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 「국선번호 모범사례집」 발간

2021년에 발간된 국선번호 모범사례집은 2020년 한 해 동안 국선번호장교들이 실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변론 방향의 설정부터 실제 진행되었던 변론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다.

- 재판연구부의 확장과 재판연구담당의 충원

군사법원 재판연구부가 실질적인 판례 및 제도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담당(군무원 5급) 1명을 선발하였다. 재판연구담당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발 후 외국과 민간 법원의 각종 판례와 군사법원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군사법원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재판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

- 적시적인 인사/행정업무 지원

2020년 후반기에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2명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을 추진하여 2021. 2. 1.부로 임용되었다. 그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면직 신청함에 따라 2021. 4. 16.부 계약 해지되어 지작사 군사법원 재판업무 지원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군무원 채용부서에 협조하여 2021년 전반기 공석 직위에 긴급 소요 반영하여 신규 채용을 추진한 결과,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1명과 재판연구담당 채용 대상 5급 2명 중 1명이 2021. 8. 1.부로 신규 임용되었다. 또한, 2021. 6. 30.부로 계약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 전자법정운용담당 2명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1년 연장 조치하였다. 2019년 조직개편 및 2021년 현역에서 군무원으로 변경된 법원 정책담당 및 법원서기 공석 직위인 6급 1명, 7급 3명에 대하여는 2021년 군무원 경채로 선발 추진하여 2021. 12. 1.부로 신규 임용되어 보직되었다. 2021. 12. 2.부로 전자법정운용담당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대체군무자로 한시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3차에 걸쳐 추진한 결과 1차에는 육본 군사법원에만 2명이 지원하여 1명이 2021. 12. 2.부 채용되었으며, 2작사 군사법원에는 근무 기간이 짧아 채용공고 2차까지 지원자가 없어 3차 공고 시 1명이 지원하여 2022. 2. 7.부로 임용되었다.

- 법원 신축(증축) 예산 반영

3군단 법원 증축은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 및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2025년도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2023년~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추진연도를 202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 요구하였으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토결과 증축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중기계획에서 제외하였다. 육·해·공군 군사법원 신축은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통합되어 국직기관으로 전환되는 등 조직 변화와 예산안 규모를 재검토하고, 기확보된 육·해·공군군사법원 신축부지가 인사사령부 인재선발센터 신축건물과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반영연도를 2024년~2026년으로 조정하여 면밀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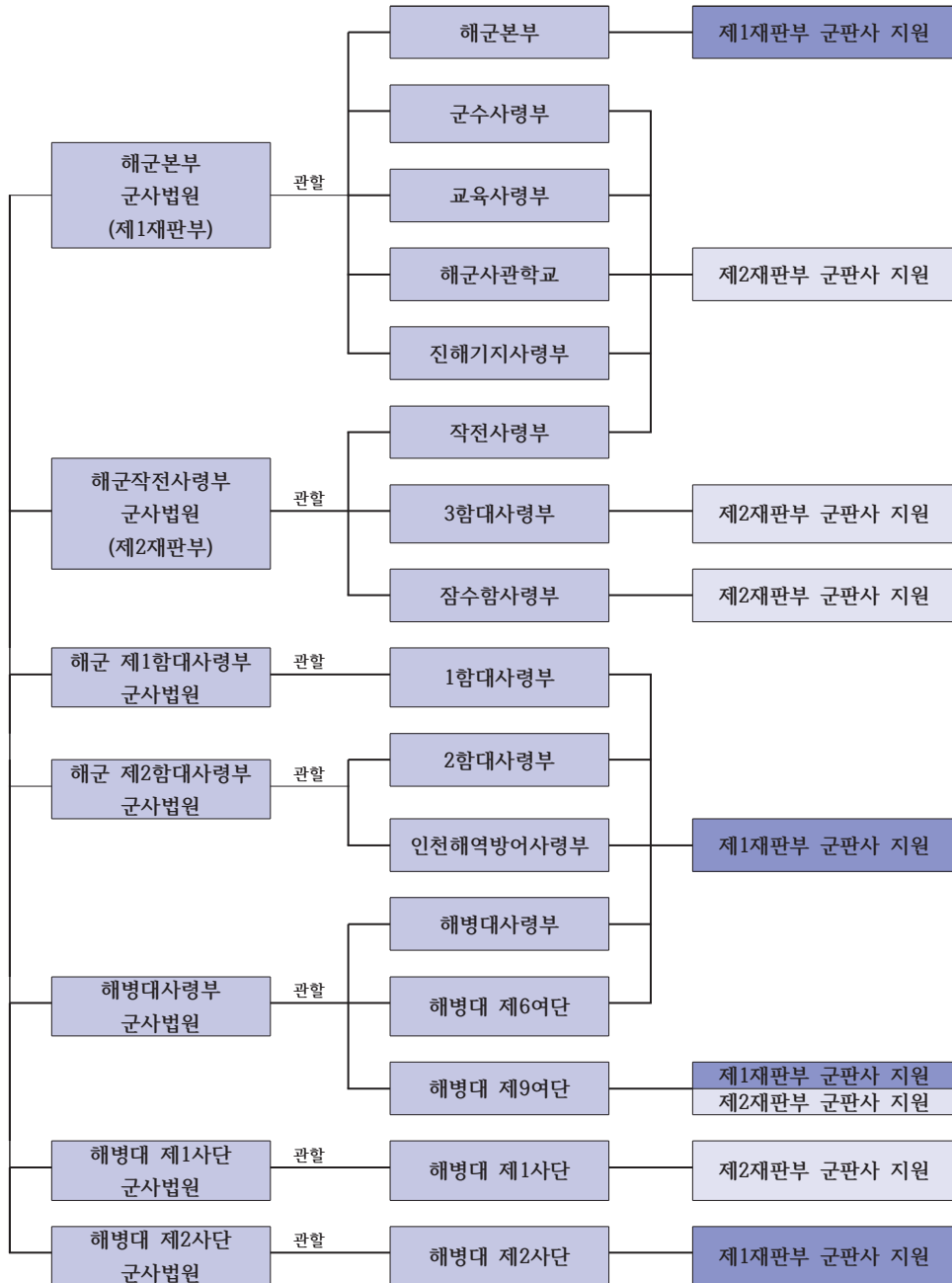
- 비품구입 및 법복구매

부대비품비 7,330만 원 예산을 배정받아 노후화된 비품 교체로 5군단, 31사단, 8군단, 2군단 재배정 및 육본에서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조기에 반납하였다. 피복비 85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군판사 9벌, 군검사 10벌, 법원서기 4벌의 법복을(단가 291,500원) 6월 중에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법복과 함께 착용하는 정복 와이셔츠를 일괄 구매하여 군판사 및 법원서기, 군검사에게 각각 보급하였다.

□ 해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일반현황('21. 12. 31.기준)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군 본 부	제1재판부	군사법원장	중 령	김 성 준		
		제1재판담당1	소 령	설 리 라		
		제1재판담당2	소령(진)	이 희 래		
		해군본부법원서기	원 사	류 재 명		
		해군본부법원서기	하 사	박 지 원		
		순회재판지원서기1	상 사	하 진 흥		
		순회재판지원기록담당	하 사	안 상 민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9 급	박 민 선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중 위	김 규 성		
		국선변호담당	중 위	설 민 우	직무 대리	
	제2재판부	제2재판부장	중 령	하 성 호		
		제2재판담당1	소 령	김 다 미		
		제2재판담당2	소령(진)	권 경 민		
		순회재판 지원서기1	상 사	정 영 미		
		순회재판 지원서기2	중 사	양 승 진		
		전자법정운영담당(속기)	9 급	이 수 현		
	행정과	행정과장	소령(진)	이 희 래	겸직	
		행정담당	중 사	이 재 권		
		예산/행정/제수담당	9 급	윤 다 은		
	작전사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 위	정 동 일	
		1함대	법원서기	상 사	이 영 주	
	2함대	법원서기	상 사	이 삼 선		
	해병대사	법원서기	상 사	정 혜 진		
	1사단	법원서기	중 사	김 중 수		
	2사단	법원서기	상 사	정 우 석		

○ 연간 주요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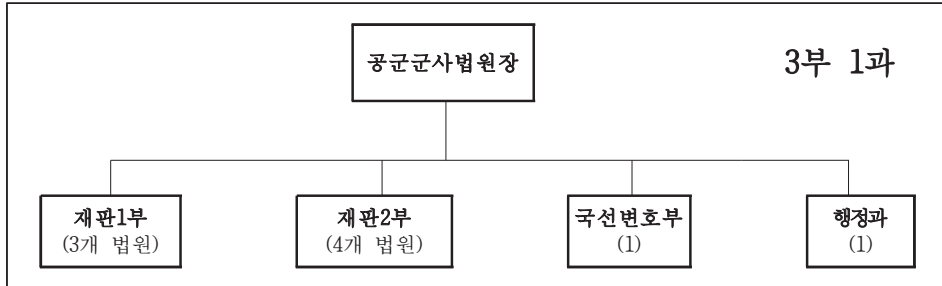
- '21년 군사재판실무서(골드북) 발간('21.11.24.)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실무처리절차 개선과 신설법령 및 최신 판례 추가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례 등 최신판례 추가
- 해군 군사법원 성과 및 양형분석 회의('21.11.29.)
 - 대상 : 해군 군사법원 군판사 및 국선변호장교
 - 장소 :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사법원장실
 - 군사법원 재판 제1,2부 성과분석 회의 및 양형분석 회의 진행
- 해군 군사법원 서기 실무토의('21.11.29.)
 - 대상 : 해군 군사법원 법원서기 및 군무원
 - 장소 : 해군본부 군사법원 법정
 - 군사법원 서기 실무토의 및 교육 진행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적극 시행

관련근거	구분	내용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공판기일의 통지)	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찰관이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그 변호사 및 국선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 기일을 통지한다.
	제20조 (의견의 진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제21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20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재판장은 제20조 6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22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5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준용)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 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공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직원 보직현황('21. 12. 31.기준)

부서	직책	현보직		비고
		계(직)급	성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공군대령	송가준	
재판1부	재판1부장(겸직)	공군대령	송가준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서대봉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권미정	
	재판연구관	공군중위	이형준	
	단독재판사무담당	공군원사(진)	이정길	
	합의재판사무담당	4급	김종만	
재판2부	재판2부장	공군대령	권상진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이용찬	
	보통법원판사	공군소령	엄현정	
	합의재판사무담당	8급	이여진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손승우	
	국선변호담당	공군중위	연제린	
		공군중위	한다윳	
	국선변호사무담당	8급	이인수	
행정과	행정과장	공군준위	정대기	
	행정담당	8급	김일환	
	속기사	8급	이기문	
	속기사	8급	염혜정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재판부

- 2020년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공군 군사법원은 코로나 예방 및 안전에 우선권을 두고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방역을 위해 법정예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실시.
- 구속사건 및 전역 임박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유있는 사건의 경우 코로나 확산시기가 심한 시기를 피해 기일을 지정하는 등 노력.
- 고등군사법원과 연계, 온라인 군판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최신 동향이 수록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토의 및 연구 실시.

● 성범죄 재판특강

- '21. 10. 28. 급증하는 성범죄 재판을 대비, 외부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성범죄 재판에 관한 유의사항 및 피해자 측 요청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성범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함.

● 장병 법률상담 등

- 법률상담
 - 장병(인트라넷, 전화, 방문) 법률상담 약 198건
 - 시민(계룡시청 격주 2시간) 법률상담 약 19건

●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및 미 공군 우주법 전문가 화상 강연

- '21. 11. 9. 공군호텔에서 주요 내빈 및 항공우주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함(코로나 상황을 고려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송출로 현장 외 인원 참석).
- '21. 5. 25. 미 공군 우주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주에서의 위협과 대응조치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강연 실시.



2021 군사법원 연감

2021년 사건 통계현황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각 군 보통군사법원 종합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2021년 사건통계 현황

◆ 일러두기(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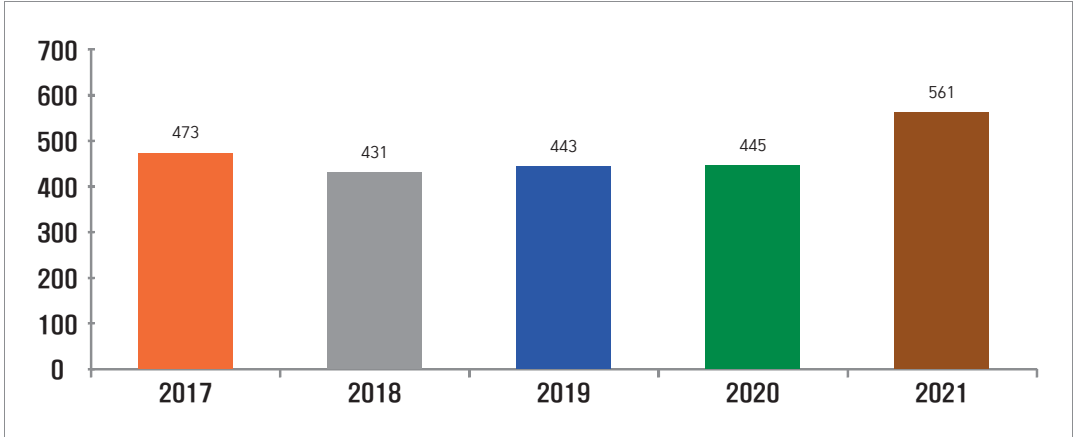
- 사건은 인원수(명)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는 해당 연도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을 의미함
- “처리”는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처리한 사건을 의미함
 - * 단, 육군의 경우 자체 사건통계시스템상 해당 연도 접수사건 기준으로 작성됨
- 약식사건 처분별 처리결과에서 ‘기타’는 공판절차회부와 이송만 기재하고, 정식재판청구는 별금에 기재함
-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만으로 기재함
-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으로 기재함
- 기소죄명과 인정죄명이 다를 경우 접수에는 기소죄명을, 처리에는 인정죄명을 기준으로 각각 기재함
- 신분별 현황에서 ‘생도’는 민간인에 기재함
- 표 또는 도표 중 “기타”는 구분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수를 나타냄
-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는 약식사건을 포함하여 기재함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	473	431	443	445	561

○ 분석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26% 증가

2. 2021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561 (100)	27 (4.8)	407 (72.5)	70 (12.5)	57 (10.2)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353 (100)	150 (6.4)	1,748 (74.3)	258 (10.9)	197 (8.4)
2017년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2018년	명 (비율)	431 (100)	29 (6.7)	324 (75.2)	29 (6.7)	49 (11.4)
2019년	명 (비율)	443 (100)	34 (7.7)	337 (76.1)	40 (9.0)	32 (7.2)
2020년	명 (비율)	445 (100)	24 (5.4)	323 (72.6)	63 (14.2)	35 (7.9)
2021년	명 (비율)	561 (100)	27 (4.8)	407 (72.5)	70 (12.5)	57 (10.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74.3%, 해군 10.9%, 공군 8.4%, 국방부 6.4%
- 2021년 육군 72.5%, 해군 12.5%, 공군 8.4%, 국방부 6.4%
- 2021년 전년 대비 공군 사건 증가, 국방부 및 해군 사건 소폭 감소, 육군 사건 유사

3. 2021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561 (100)	172 (30.7)	179 (31.9)	210 (37.4)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	합계 (비율)	2,353 (100)	880 (37.4)	681 (28.9)	792 (33.7)
2017년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2018년	명 (비율)	431 (100)	165 (38.3)	120 (27.8)	146 (33.9)
2019년	명 (비율)	443 (100)	167 (37.7)	128 (28.9)	148 (33.4)
2020년	명 (비율)	445 (100)	157 (35.3)	139 (31.2)	149 (33.5)
2021년	명 (비율)	561 (100)	172 (30.7)	179 (31.9)	210 (37.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37.4%, 군검사 항소 28.9%, 쌍방 항소 33.7%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21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 항소 30.7%, 군검사 항소 31.9%, 쌍방 항소 37.4%
- 2021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감소, 군검사 항소율 유사, 쌍방 항소율 증가

4. 2021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561 (100)	111 (19.8)	179 (31.9)	241 (42.9)	25 (4.5)	5 (0.9)

4-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비율)	2,353 (100)	489 (20.8)	741 (31.5)	999 (42.5)	100 (4.2)	24 (1.0)
2017년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2018년	명 (비율)	431 (100)	90 (20.9)	147 (34.1)	174 (40.4)	16 (3.7)	4 (0.9)
2019년	명 (비율)	443 (100)	87 (19.6)	150 (33.9)	176 (39.7)	24 (5.4)	6 (1.4)
2020년	명 (비율)	445 (100)	102 (22.9)	151 (33.9)	170 (38.2)	15 (3.4)	7 (1.6)
2021년	명 (비율)	561 (100)	111 (19.8)	179 (31.9)	241 (42.9)	25 (4.5)	5 (0.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42.5%, 준·부사관 31.5%, 장교 20.8%, 군무원 4.2%
- 2021년 접수 중 병 42.9%, 준·부사관 31.9%, 장교 19.8%, 군무원 4.5%
- 2021년 전년 대비 군무원 및 병 사건 증가,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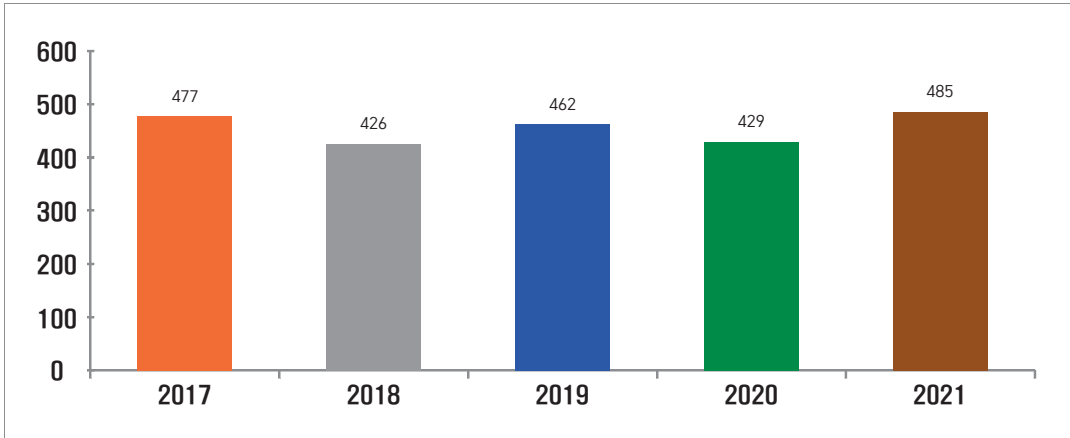
5. 2021년 항소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561	111	179	241	25	5
민간인	간첩이적	0	0	0	0	0	0
	군무이탈	15	3	7	4	1	0
	상관에관한죄	30	7	10	12	1	0
	군용물관련죄	5	0	3	1	0	1
	초병에관한죄	5	0	0	3	0	2
	성범죄(군인등)	106	28	53	19	6	0
	기타	9	2	6	1	0	0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0	0	0	0
	뇌물에관한죄	5	1	3	0	1	0
	문서인장죄	6	1	2	1	2	0
	살인의죄	0	0	0	0	0	0
	과실치사상죄	3	2	0	1	0	0
	절도강도의죄	6	1	2	3	0	0
	사기공갈죄	34	0	4	29	1	0
	횡령배임죄	4	3	1	0	0	0
	풍속에관한죄	3	0	1	2	0	0
	기타	42	9	20	10	3	0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7	1	1	4	1	0
	도교법위반	7	1	3	3	0	0
	도교법위반(음주)	10	4	1	5	0	0
	특가법(도주)	6	1	3	2	0	0
	특가법(치사상)	3	1	1	1	0	0
성범죄	형법위반	61	14	13	32	2	0
	성폭법위반	47	3	11	32	1	0
	아청법위반	54	8	12	34	0	0
	성매매특별법	1	0	1	0	0	0
	기타	3	1	0	2	0	0
폭력범죄	상해,폭행	26	5	10	10	1	0
	상해등치사	0	0	0	0	0	0
	폭처법위반	11	1	0	10	0	0
국가보안법	0	0	0	0	0	0	
군사기밀보호법	6	3	1	0	0	2	
기타	46	11	10	20	5	0	

○ 분석

- 2021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48.5%, 주요형법범 18.4%, 폭력범죄 6.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1.4%, 교통범죄 5.9%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성범죄(군형법 포함) 48.6%, 주요형법범 15.3%
 - 준·부사관: 성범죄(군형법 포함) 50.3%,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4.5%
 - 병: 성범죄(군형법 포함) 49.4%, 주요형법범 19.1%
 - 군무원: 성범죄(군형법 포함) 36%, 주요형법범 28%
 - 민간인: 군형법범 60%

6.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결과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	477	426	462	429	485

○ 분석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7% 감소

7. 2021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85 (100)	24 (4.9)	344 (70.9)	63 (13.1)	54 (11.1)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79 (100)	149 (6.5)	1,694 (74.3)	251 (11.1)	185 (8.1)
2017년	명 (비율)	477 (100)	34 (7.1)	351 (73.6)	63 (13.2)	29 (6.1)
2018년	명 (비율)	426 (100)	33 (7.7)	324 (76.1)	38 (8.9)	31 (7.3)
2019년	명 (비율)	462 (100)	34 (7.4)	351 (76.0)	30 (6.5)	47 (10.2)
2020년	명 (비율)	429 (100)	24 (5.6)	324 (75.6)	57 (13.3)	24 (5.6)
2021년	명 (비율)	485 (100)	24 (4.9)	344 (70.9)	63 (13.1)	54 (11.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74.3%, 해군 11.1%, 공군 8.1%, 국방부 6.5%
- 2021년 육군 70.9%, 해군 13.1%, 공군 8.1%, 국방부 6.5%
- 2021년 전년 대비 공군 사건 증가, 육군 사건 감소

8. 2021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명 (비율)	485 (100)	104 (21.4)	381 (78.6)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79 (100)	477 (20.9)	1,802 (79.1)
2017년	명 (비율)	477 (100)	126 (26.4)	351 (73.6)
2018년	명 (비율)	426 (100)	88 (20.7)	338 (79.3)
2019년	명 (비율)	462 (100)	76 (16.5)	386 (83.5)
2020년	명 (비율)	429 (100)	83 (19)	346 (81)
2021년	명 (비율)	485 (100)	104 (21.4)	381 (78.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20.9%, 불구속 사건 79.1%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증가, 불구속 사건 감소 추세
- 2021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21.4%, 불구속 사건 78.6%
- 2021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증가, 불구속 사건 감소

9. 2021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동일	양형부당					
명 (비율)	485 (100)	133 (27.4)	18 (3.7)	38 (7.8)	77 (15.9)	231 (47.6)	13 (2.7)	108 (22.3)	36.5%

* 1심 판결 파기율=파기인원/판결인원×100 [항소취하, 이송 등 제외]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1심 판결 파기율	
		파기자판				항소기각				
		소계	동일	양형부당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79 (100)	857 (37.6)	233 (10.2)	167 (7.3)	457 (20.1)	959 (42.1)	81 (3.5)	382 (16.8)	47.2%
2017년	명 (비율)	477 (100)	203 (42.6)	53 (11.2)	35 (7.3)	115 (24.1)	187 (39.2)	23 (4.8)	64 (13.4)	52.1%
2018년	명 (비율)	426 (100)	192 (45.1)	69 (16.2)	31 (7.3)	92 (21.6)	162 (38)	18 (4.2)	54 (12.7)	54.2%
2019년	명 (비율)	462 (100)	182 (39.4)	53 (11.5)	35 (7.6)	94 (20.3)	192 (41.6)	16 (3.5)	72 (15.6)	48.7%
2020년	명 (비율)	429 (100)	147 (34.2)	40 (9.3)	28 (6.5)	79 (18.4)	187 (43.6)	11 (2.6)	84 (19.6)	44%
2021년	명 (비율)	485 (100)	133 (27.4)	18 (3.7)	38 (7.8)	77 (15.9)	231 (47.6)	13 (2.7)	108 (22.3)	36.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 파기 37.6%, 항소기각 42.1%, 이송 등 16.8%, 항소취하 3.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심 파기 감소, 항소기각 증가 추세
- 2021년 항소사건 중 1심 판결 파기율 36.5%, 전년 대비 파기율 감소

10. 2021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85 (100)	103 (21.2)	146 (30.1)	202 (41.6)	26 (5.4)	8 (1.6)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9 (100)	471 (20.7)	705 (30.9)	975 (42.8)	102 (4.5)	26 (1.1)
2017년	명 (비율)	477 (100)	93 (19.5)	126 (26.4)	230 (48.2)	23 (4.8)	5 (1)
2018년	명 (비율)	426 (100)	79 (18.5)	133 (31.2)	193 (45.3)	19 (4.5)	2 (0.5)
2019년	명 (비율)	462 (100)	103 (22.3)	154 (33.3)	178 (38.5)	21 (4.5)	6 (1.3)
2020년	명 (비율)	429 (100)	93 (21.7)	146 (34)	172 (40.1)	13 (3)	5 (1.2)
2021년	명 (비율)	485 (100)	103 (21.2)	146 (30.1)	202 (41.6)	26 (5.4)	8 (1.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42.8%, 준·부사관 30.9%, 장교 20.7%, 군무원 4.5%, 민간인 1.1%
- 2021년 병 41.6%, 준·부사관 30.1%, 장교 21.2%, 군무원 5.4%, 민간인 1.1%
- 2021년 전년 대비 군무원 사건 증가, 준·부사관 사건 감소

11. 2021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명 (비율)	485 (100)	52 (10.7)	105 (21.6)	29 (6.1)	227 (46.8)	37 (7.6)	7 (1.4)	28 (5.8)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9 (100)	221 (9.7)	360 (15.8)	155 (6.8)	937 (41.1)	225 (9.9)	21 (0.9)	360 (15.8)
2017년	명 (비율)	477 (100)	47 (9.9)	74 (15.5)	34 (7.1)	190 (39.8)	44 (9.2)	4 (0.8)	84 (17.6)
2018년	명 (비율)	426 (100)	26 (6.1)	62 (14.6)	36 (8.5)	163 (38.3)	61 (14.3)	6 (1.4)	72 (16.9)
2019년	명 (비율)	462 (100)	51 (11.0)	57 (12.3)	29 (6.3)	173 (37.4)	54 (11.7)	3 (0.6)	95 (20.6)
2020년	명 (비율)	429 (100)	45 (10)	62 (14.5)	27 (6.2)	184 (42.9)	29 (6.8)	1 (0.02)	81 (18.9)
2021년	명 (비율)	485 (100)	52 (10.7)	105 (21.6)	29 (6.1)	227 (46.8)	37 (7.6)	7 (1.4)	28 (5.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형법 포함) 41.1%, 주요형법범 15.8%, 폭력범죄 9.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9.7%
- 2021년 성범죄(군형법 포함) 46.8%, 주요형법범 21.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7%, 폭력범죄 7.6%
- 2021년 전년 대비 성범죄(군형법 포함) 및 주요형법범 증가

12. 2021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85 (100)	0 (0)	79 (16.3)	114 (23.5)	103 (21.2)	19 (3.9)	49 (10.1)	121 (25.0)

* 이송 등: 이송(107), 항소취하(13), 공소기각(1)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2,279 (100)	0 (0)	345 (15.1)	575 (25.2)	547 (24.1)	83 (3.6)	259 (11.4)	470 (20.6)
2017년 명 (비율)	477 (100)	0 (0)	91 (19.1)	127 (26.6)	104 (21.8)	16 (3.4)	52 (10.9)	87 (18.2)
2018년 명 (비율)	426 (100)	0 (0)	63 (14.8)	115 (27)	109 (25.6)	7 (1.6)	58 (13.6)	74 (17.4)
2019년 명 (비율)	462 (100)	0 (0)	56 (12.1)	108 (23.4)	135 (29.2)	20 (4.3)	53 (11.5)	90 (19.5)
2020년 명 (비율)	429 (100)	0 (0)	56 (13)	111 (25.9)	96 (22.4)	21 (4.9)	47 (11)	98 (22.8)
2021년 명 (비율)	485 (100)	0 (0)	79 (16.3)	114 (23.5)	103 (21.2)	19 (3.9)	49 (10.1)	121 (2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25.2%, 재산형 24.1%, 자유형 15.1%, 무죄 11.4%, 선고유예 3.6%
- 2021년 집행유예 23.5%, 재산형 21.2%, 자유형 15.1%, 무죄 11.4%, 선고유예 3.6%
- 2021년 전년 대비 자유형 증가, 집행유예 감소

13. 2021년 항소사건 죄명별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85	0	79	114	103	19	49	121
미판유죄	간첩이적	0	0	0	0	0	0	0
	군무이탈	18	0	4	2	3	3	3
	상관에관한죄	23	0	3	2	1	4	9
	군용물관련죄	6	0	1	3	0	1	0
	초병에관한죄	4	0	0	4	0	0	0
	성범죄(군인등)	77	0	4	36	0	3	3
	기타	5	0	0	0	1	2	0
미판유죄+구	내란소요죄	0	0	0	0	0	0	0
	뇌물에관한죄	6	0	0	4	0	1	0
	문서인장죄	8	0	0	3	2	2	1
	살인의죄	2	0	1	1	0	0	0
	과실치사상죄	4	0	0	0	2	0	2
	절도강도의죄	9	0	0	4	3	0	2
	사기횡령배임죄	29	0	5	4	10	0	4
	중속에관한죄	2	0	0	0	1	0	0
기타	34	0	0	7	14	1	8	
미판유죄+구+기	교특법위반	6	0	2	0	1	0	2
	도교법위반	17	0	0	2	11	0	2
	특가법(도주)	6	0	1	0	2	0	3
선고유죄	형법위반	48	0	9	9	12	0	4
	성폭법위반	62	0	19	15	11	2	1
	아청법위반	38	0	18	4	3	0	2
	성매매특별법	2	0	0	0	0	0	2
	기타	3	0	1	2	0	0	0
선고유죄+구+기	상해·폭행	29	0	2	5	13	0	3
	상해등치사	0	0	0	0	0	0	0
	폭처법위반	8	0	0	1	4	0	0
	군사기밀보호법	7	0	1	5	0	0	1
국가보안법	0	0	0	0	0	0	0	
기타	32	0	8	1	9	0	7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47.4%, 주요형법범 19.4%,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1.5%, 폭력범죄 7.6%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집행유예 28.7%, 자유형 22.2%, 재산형 11.3%, 무죄 5.2%
- 주요형법범의 경우 재산형 34%, 집행유예 24.5%, 무죄 16%, 자유형 6.4%

14. 2021년 항소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85	0	79	114	103	19	49	121
장교	장성	1	0	0	0	0	1	0
	영관	44	0	4	12	13	3	3
	위관	58	0	8	11	19	2	16
준·부사관	146	0	13	43	29	10	27	24
병	202	0	51	38	34	2	6	71
군무원	26	0	2	5	8	2	3	6
민간인	8	0	1	5	0	0	1	1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1.1%, 집행유예 22.3%, 자유형 및 무죄 각 11.7%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9.5%, 재산형 19.9%, 무죄 18.5%, 자유형 8.9%
- 병 사건의 경우 자유형 25.2%, 집행유예 18.8%, 재산형 16.8%, 무죄 3%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0.8%, 집행유예 19.2%, 무죄 11.5%
- 민간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62.5%

15. 2021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79 (100)	0 (0)	5 (6.3)	13 (16.5)	18 (22.8)	30 (37.9)	13 (16.5)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45 (100)	0 (0)	12 (3.5)	32 (9.3)	61 (17.7)	167 (48.4)	73 (21.1)
2017년	명 (비율)	91 (100)	0 (0)	0 (0)	6 (6.6)	18 (19.8)	46 (50.5)	21 (23.1)
2018년	명 (비율)	63 (100)	0 (0)	1 (1.6)	3 (4.8)	4 (6.3)	40 (63.5)	15 (23.8)
2019년	명 (비율)	56 (100)	0 (0)	0 (0)	2 (3.6)	10 (17.9)	29 (51.8)	15 (26.8)
2020년	명 (비율)	56 (100)	0 (0)	6 (10.7)	8 (14.3)	11 (19.6)	22 (39.3)	9 (16.1)
2021년	명 (비율)	79 (100)	0 (0)	5 (6.3)	13 (16.5)	18 (22.8)	30 (37.9)	13 (16.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48.4%, 3년 이상 30.4%, 1년 미만 21.1%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미만 감소 추세
- 2021년 1년 이상 3년 미만 37.9%, 1년 미만 16.5%, 3년 이상 45.6%
- 2021년 전년 대비 3년 이상 5년 미만 증가, 1년 이상 3년 미만 감소

16. 2021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명 (비율)	485 (100)	79 (16.3)	36 (7.4)	62 (12.8)	94 (19.4)	83 (17.1)	57 (11.7)	32 (6.6)	21 (4.3)	10 (2.1)	11 (2.3)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79 (100)	270 (11.8)	125 (5.5)	262 (11.5)	450 (19.7)	462 (20.3)	321 (14.1)	171 (7.5)	84 (3.7)	65 (2.9)	69 (3)
2017년	명 (비율)	477 (100)	45 (9.4)	31 (6.5)	61 (12.8)	122 (25.6)	92 (19.3)	58 (12.2)	29 (6.1)	21 (4.4)	13 (2.7)	5 (1.0)
2018년	명 (비율)	426 (100)	49 (11.5)	15 (3.5)	43 (10.1)	86 (20.2)	99 (23.2)	60 (14.1)	28 (6.6)	21 (4.9)	11 (2.6)	14 (3.3)
2019년	명 (비율)	462 (100)	46 (10.0)	21 (4.5)	49 (10.6)	65 (14.1)	106 (22.9)	84 (18.2)	39 (8.4)	10 (2.2)	17 (3.7)	25 (5.4)
2020년	명 (비율)	429 (100)	51 (11.9)	22 (5.1)	47 (10.9)	83 (19.3)	82 (19.1)	62 (14.5)	43 (10.2)	11 (2.6)	14 (3.2)	14 (3.2)
2021년	명 (비율)	485 (100)	79 (16.3)	36 (7.4)	62 (12.8)	94 (19.4)	83 (17.1)	57 (11.7)	32 (6.6)	21 (4.3)	10 (2.1)	11 (2.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28.8%,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4.1%, 211일 이상 17.1%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증가, 121일 이상 감소 추세
- 2021년 처리 중 120일 이내 36.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48.2%, 211일 이상 15.3%
- 2021년 전년 대비 121일 이상 210일 이내 감소, 120일 이내 증가

17. 2021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64 (100)	129 (35.4)	104 (28.5)	25 (6.9)	235 (64.6)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815 (100)	725 (39.9)	569 (31.3)	156 (8.6)	1,090 (60.1)
2017년	명 (비율)	390 (100)	177 (45.4)	119 (30.5)	58 (14.9)	213 (54.6)
2018년	명 (비율)	354 (100)	160 (45.2)	119 (33.6)	41 (11.6)	194 (54.8)
2019년	명 (비율)	374 (100)	136 (36.4)	117 (31.3)	19 (5.1)	238 (63.6)
2020년	명 (비율)	333 (100)	123 (37.8)	110 (33)	13 (3.9)	210 (63)
2021년	명 (비율)	364 (100)	129 (35.4)	104 (28.5)	25 (6.9)	235 (64.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60.1%,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31.3%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추세
- 2021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64.6%,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28.5%
- 2021년 전년 대비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18. 2021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합계	226	8	17	11	1	2	0	9	8	27	8	3	9	0	16	35	16	6	0	0	0	0	0	39	14	1	3	1	0	0	0	6
군형법위반	76	1	14					4	3	19		2	3		9		1						14	2							4	
형법위반	52	1	1	6		1		2		2	4	1	3		1		6	1					13	1		1					1	
성폭법위반	58	3	2	4	1	1		1	2	6	4				3	14	5	3					7								1	
아청법위반	36	3		1				2	3					1	3	12	3	2					5								1	
기타	4												2		1	1															1	

1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예	무죄	공기	소각
5년 평균	합계	933	27	68	43	5	21	0	20	39	100	54	13	46	0	34	98	110	57	5	21	0	142	2	9	4	1	5	0	9		
	군형법위반	309	11	50	0	3	7	0	10	13	71	2	10	20	0	15	8	27	0	1	0	0	45	1	7	0	1	1	0	6		
	형법위반	278	5	13	15	0	10	0	3	10	14	19	2	18	0	9	26	46	25	3	9	0	45	1	0	3	0	2	0	0		
	성폭법위반	223	8	4	22	2	3	0	4	9	14	26	0	3	0	5	38	18	20	1	7	0	32	0	2	1	0	2	0	2		
	아청법위반	104	3	1	4	0	1	0	2	7	1	4	1	2	0	5	25	17	7	0	4	0	19	0	0	0	0	0	0	1		
2017년	소계	190	6	13	10		6		5	5	18	8	1	10		3	19	26	14	2	7		34	3								
	군형법위반	59	2	9			1		2		16		1	5		1	1	9		1			9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2018년	소계	163	5	8	5		3		2	4	13	12	3	9		7	18	28	18	1	3		22			1	1					
	군형법위반	48	3	7			2		2	2	5		3	4		1	4	6					8				1					
	형법위반	59		1	1		1			1	6	5		5		3	7	14	10		1		4									
	성폭법위반	38	2		4					1	2	4				1	5	3	7	1	1		6			1						
	아청법위반	14										1				2	2	5		1		3										
2019년	소계	173	2	15	10	1	5	0	2	7	19	12	5	12	0	3	11	20	10	1	4	0	24	1	2	2	0	3	0	2		
	군형법위반	65	2	11		1	2		1	2	15		4	4		1	2	8					7	1	2			1		1		
	형법위반	54		4	2		3		1	3	1	4	1	5		2	1	8	4	1	2		9					1				
	성폭법위반	37			6					2	3	7		2			7	3	2		1	2	2					1		1		
	아청법위반	12			1												1	1	2		1		6									
2020년	소계	181	6	15	7	3	5	0	2	15	23	14	1	6	0	5	15	20	9	1	7	0	23	0	1	0	0	2	0	1		
	군형법위반	61	3	9		2	2		1	6	16	2		4		3	1	3					7		1						1	
	형법위반	55	2	4	3		2			3	4	4		1		1	5	9	4	1	3		8					1				
	성폭법위반	37	1	1	3	1	1		1	2	2	7				1	3	2	4		1	6							1			
	아청법위반	24		1						4	1	1	1	1			6	5			2	2										
2021년	소계	226	8	17	11	1	2	0	9	8	27	8	3	9	0	16	35	16	6	0	0	0	39	1	3	1	0	0	0	6		
	군형법위반	76	1	14					4	3	19		2	3		9		1					14	2							4	
	형법위반	52	1	1	6		1		2		2	4	1	3		1	8	6	1				13	1		1						
	성폭법위반	58	3	2	4	1	1		1	2	6	4				3	14	5	3				7		1						1	
	아청법위반	36	3		1				2	3					1	3	12	3	2				5								1	
기타	4												2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3.1%, 아청법위반 11.1%,
신분별 병 46.4%, 준·부사관 30.6%, 장교 19.7%, 군무원 3.2%,
처분별 집행유예 30.8%, 자유형 17.8%, 재산형 16.9%, 무죄 10%
- 연도별 분석결과 죄명별 성폭법위반 및 아청법위반 증가, 형법범 감소 추세,
신분별 준·부사관 및 병 감소 추세,
처분별 자유형 증가, 집행유예·재산형·무죄 감소 추세
- 2021년 군형법위반 33.6%, 성폭법위반 25.7%, 전년 대비 성폭법위반 증가
- 2021년 병 42.5%, 준·부사관 31.4%, 장교 21.2%, 전년 대비 준·부사관 감소
- 2021년 집행유예 27.9%, 자유형 23%, 재산형 11.5%, 무죄 4.9%
전년 대비 자유형 증가, 집행유예·재산형·무죄 감소

19. 2021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8 (100)	1 (12.5)	5 (62.5)	0 (0)	0 (0)	1 (12.5)	1 (12.5)

* 사건유형: 초병폭행 3, 군기법위반 2, 군용물손괴 1, 사관생도 1, 항소사건 접수 전 전역 1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6 (100)	4 (15.4)	13 (50)	0 (0)	0 (0)	4 (15.4)	5 (19.2)
2017년	명 (비율)	5 (100)	2 (40)	1 (20)	0 (0)	0 (0)	2 (40)	0 (0)
2018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2019년	명 (비율)	6 (100)	1 (16.7)	4 (66.7)	0 (0)	0 (0)	0 (0)	1 (16.6)
2020년	명 (비율)	5 (100)	0 (0)	2 (40)	0 (0)	0 (0)	1 (20)	2 (40)
2021년	명 (비율)	8 (100)	1 (12.5)	5 (62.5)	0 (0)	0 (0)	1 (12.5)	1 (12.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50%, 자유형 및 무죄 각 15.4%
- 2021년 집행유예 62.5%, 자유형 및 무죄 각 12.5%
- 2021년 전년 대비 민간인 사건 증가

20. 2021년 항소심 파기자판 무죄 선고 현황(8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1심 선고결과	2심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20노297	육군 중사	위증	벌금 500만 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1. 7. 8. 상고기각
2020노407	육군 소장	수뢰후 부정처사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여자가 소속대에 기부 금품을 공여한 것과 관련해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진행 중
2021노14	공군 소령	상관명예훼손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를 소대장에게 읽도록 한 것이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와 문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진행 중
2021노28	육군 상사	도박	벌금 50만 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오락을 넘어서선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1. 9. 30. 상고기각
2021노51	육군 원사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1. 11. 11. 상고기각
2021노104	공군 7급	정통법위반 (명예훼손)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1. 6. 24. 항소심 확정
2021노155	육군 하사	성매매법위반 (성매매)	벌금 100만 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2. 3. 11. 상고기각
2021노213	육군 중사	청소년성 보호법위반 (음란물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2. 3. 11. 상고기각

21. 2021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명	364	203	55.8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율	1,816	935	51.5
2017년	390	172	44.1
2018년	354	173	48.9
2019년	374	204	54.5
2020년	334	183	54.8
2021년	364	203	55.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51.5%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증가 추세
- 2021년 대법원 상고율 55.8%, 전년 대비 상고율 소폭 증가

22. 2021년 상고사건 처리 결과

구분	합계	판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명 (비율)	228 (100)	8 (3.5)	7 (3.1)	1 (0.4)	0 (0)	212 (93)	8 (3.5)	0 (0)	3.6

* 2심 판결 파기율=파기인원/판결인원×100[상고취하, 기타 제외]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합계	판결					상고취하	기타	2심 판결 파기율
		파기							
		소계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상고기각			
5년 평균율	936 (100)	25 (2.7)	23 (2.5)	1 (0.1)	1 (0.1)	842 (89.9)	69 (7.4)	0 (0)	2.9
2017년	168 (100)	1 (0.6)	1 (0.6)	0 (0)	0 (0)	139 (82.7)	28 (16.7)	0 (0)	0.7
2018년	166 (100)	4 (2.4)	4 (2.4)	0 (0)	0 (0)	147 (88.6)	15 (9)	0 (0)	2.6
2019년	198 (100)	5 (2.5)	4 (2)	0 (0)	1 (0.5)	184 (93)	9 (4.5)	0 (0)	2.6
2020년	176 (100)	7 (4)	7 (4)	0 (0)	0 (0)	160 (90.9)	9 (5.1)	0 (0)	4.2
2021년	228 (100)	8 (3.5)	7 (3.1)	1 (0.4)	0 (0)	212 (93)	8 (3.5)	0 (0)	3.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 89.9%, 파기 2.7%, 상고취하 7.4%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파기율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 2021년 2심 판결 파기율 3.6%, 전년 대비 감소
- 2021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 3.5%, 전년 대비 감소

사건번호	계급	죄 명	처 분 결 과	파 기 사 유
2020노296	육군 중령	특가법위반 (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징역 8년, 벌금 4억 5,000만 원, 추징 2억 1,015만 원 - 2심: 징역 4년 - 3심: 파기환송 - 환송 후: '21. 10. 28. 징역 4년 확정 	원심은 토지의 고가 매도를 통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억 4,000만 원과의 차액인 1억 5,515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라는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액수 미상 시가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 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라고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함
2020노227	육군 일병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유사강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징역 1년 6월 - 2심: 징역 2년 6월 - 3심: 파기환송 - 환송 후: '21. 9. 8. 이송결정(서울고등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행 행위에 착수할 때에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심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함
2020노88	해군 하사	상관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무죄 - 2심: 선고유예(징역 4월) - 3심: 파기환송 - 환송 후: '21. 12. 2. 항소기각 확정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인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는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층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24. 2021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명 (비율)	128 (100)	98 (76.5)	11 (8.6)	2 (1.6)	17 (13.3)

24-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02 (100)	463 (76.9)	43 (7.2)	35 (5.8)	61 (10.1)
2017년	명 (비율)	101 (100)	87 (86)	4 (4)	5 (5)	5 (5)
2018년	명 (비율)	99 (100)	68 (68.7)	11 (11.1)	7 (7.1)	13 (13.1)
2019년	명 (비율)	136 (100)	97 (71.3)	8 (5.9)	14 (10.3)	17 (12.5)
2020년	명 (비율)	138 (100)	113 (81.9)	9 (6.5)	7 (5)	9 (6.5)
2021년	명 (비율)	128 (100)	98 (76.5)	11 (8.6)	2 (1.6)	17 (13.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76.9%, 보석청구 7.2%, 형사보상청구 5.8%
- 2021년 재정신청 76.5%, 보석청구 8.6%, 형사보상청 1.6%
- 2021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및 형사보상청구 감소, 보석청구 증가

25. 2021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101	0	84	17	11	0	11	2	1	1	0	14	2	12	0

25-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년평균	445	3	369	73	42	3	39	35	28	6	1	68	11	49	8
2017년	49	0	40	9	4	0	4	5	4	0	1	6	0	5	1
2018년	70	2	64	4	9	1	8	5	4	1	0	12	3	8	1
2019년	112	1	91	20	10	0	10	13	11	2	0	16	1	12	3
2020년	113	0	90	23	8	2	6	10	8	2	0	20	5	12	3
2021년	101	0	84	17	11	0	11	2	1	1	0	14	2	12	0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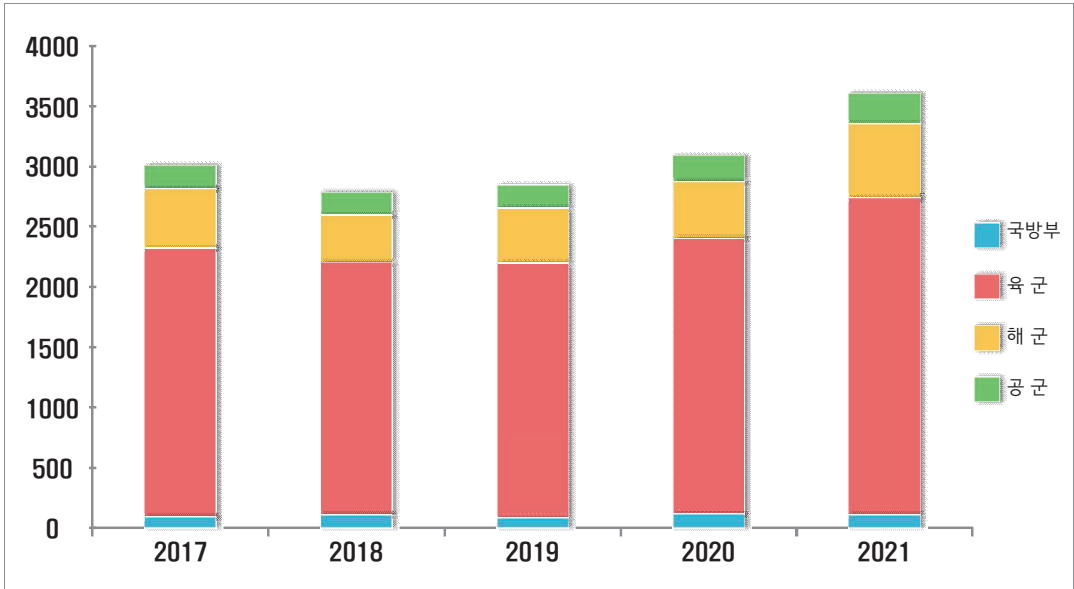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0.7%, 보석청구 허가율 7.1%,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17.1%
- 2021년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0%, 재정신청 이송률 16.84%,
보석청구 허가율 0%,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50%(비용보상청구 1건 기각)
- 2021년 전년 대비 재정신청 및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각률 증가

보통군사법원 종합



□ 국방부/각 군 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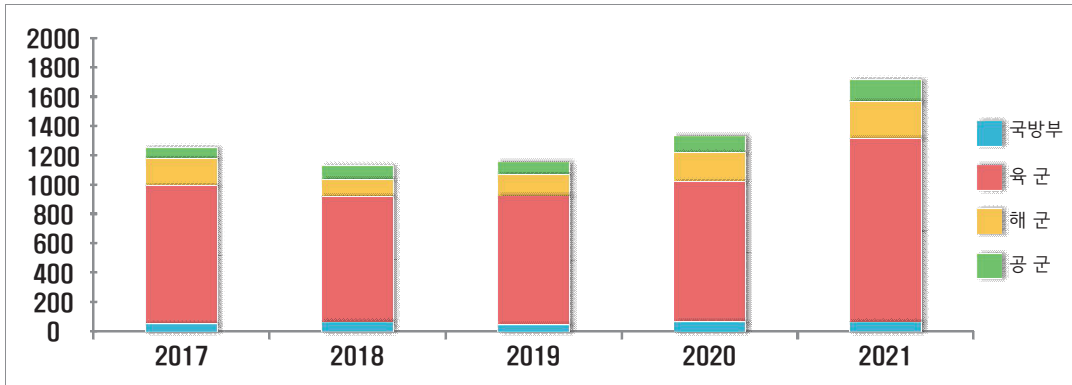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5,314 (100)		491 (3)		11,363 (74)		2,429 (16)		1,031 (7)	
	공판 약식	6,556 (100)	8,758 (100)	255 (4)	236 (3)	4,893 (74)	6,470 (74)	893 (14)	1,536 (17)	515 (8)	516 (6)
2017년	명 (비율)	3,006 (100)		88 (3)		2,231 (74)		494 (17)		193 (6)	
	공판 약식	1,248 (100)	1,758 (100)	45 (3)	43 (2)	945 (76)	1,286 (73)	184 (15)	310 (18)	74 (6)	119 (7)
2018년	명 (비율)	2,780 (100)		105 (4)		2,096 (75)		393 (14)		186 (7)	
	공판 약식	1,126 (100)	1,654 (100)	55 (5)	50 (3)	859 (77)	1,237 (75)	115 (10)	278 (17)	97 (8)	89 (5)
2019년	명 (비율)	2,840 (100)		82 (3)		2,114 (74)		456 (16)		188 (7)	
	공판 약식	1,148 (100)	1,692 (100)	38 (3)	44 (3)	878 (77)	1,236 (73)	147 (13)	309 (18)	85 (7)	103 (6)
2020년	명 (비율)	3,085 (100)		112 (4)		2,287 (74)		470 (15)		216 (7)	
	공판 약식	1,325 (100)	1,760 (100)	61 (5)	51 (3)	955 (72)	1,332 (76)	199 (15)	271 (15)	110 (8)	106 (6)
2021년	명 (비율)	3,603 (100)		104 (3)		2,635 (73)		616 (17)		248 (7)	
	공판 약식	1,709 (100)	1,894 (100)	56 (3)	48 (3)	1,256 (73)	1,379 (73)	248 (15)	368 (19)	149 (9)	99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4%, 해군 16%, 공군 7%, 국방부 3%
- 전체 형사사건 감소하던 중 2021년 전년 대비 17% 증가

2.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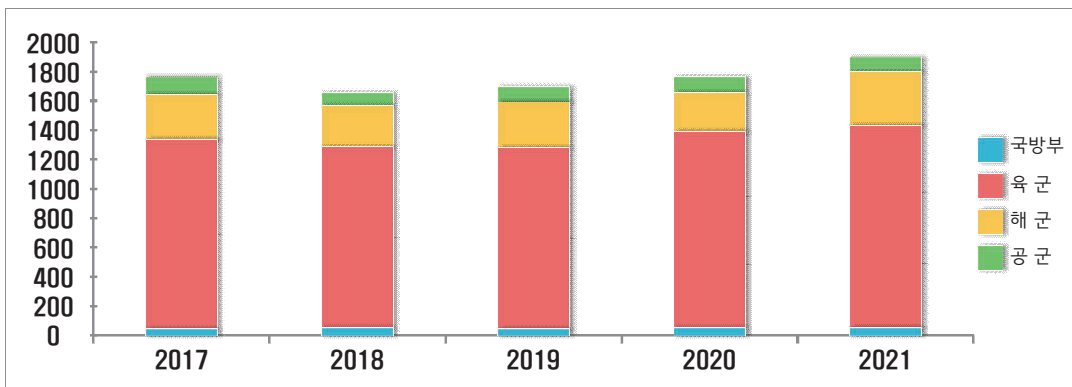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556 (100)	255 (4)	4,893 (76)	893 (13)	515 (7)
2017년	명 (비율)	1,248 (100)	45 (3)	945 (76)	184 (15)	74 (6)
2018년	명 (비율)	1,126 (100)	55 (5)	859 (77)	115 (10)	97 (8)
2019년	명 (비율)	1,148 (100)	38 (3)	878 (77)	147 (13)	85 (7)
2020년	명 (비율)	1,325 (100)	61 (5)	955 (72)	199 (15)	110 (8)
2021년	명 (비율)	1,709 (100)	56 (3)	1,256 (74)	248 (14)	149 (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6%, 해군 13%, 공군 7%, 국방부 4%
- 전체 공판사건 2021년 전년 대비 29% 증가

3.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758 (100)	236 (3)	6,470 (74)	1,536 (17)	516 (6)
2017년	명 (비율)	1,758 (100)	43 (2)	1,286 (73)	310 (18)	119 (7)
2018년	명 (비율)	1,654 (100)	50 (3)	1,237 (75)	278 (17)	89 (5)
2019년	명 (비율)	1,692 (100)	44 (3)	1,236 (73)	309 (18)	103 (6)
2020년	명 (비율)	1,760 (100)	51 (3)	1,332 (76)	271 (15)	106 (6)
2021년	명 (비율)	1,894 (100)	48 (3)	1,379 (73)	368 (19)	99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약식사건 중 육군 74%, 해군 17%, 공군 6%, 국방부 3%
- 전체 약식사건 2021년 전년 대비 8% 증가

4.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3,603 (100)	383 (11)	1,021 (28)	2,098 (58)	86 (3)	15 (≒0)
국방부 (비율)	104 (100)	35 (34)	28 (27)	20 (19)	18 (17)	3 (3)
육군 (비율)	2,635 (100)	256 (10)	709 (27)	1,616 (61)	47 (2)	7 (≒0)
해군 (비율)	616 (100)	43 (7)	207 (33)	351 (57)	10 (2)	5 (1)
공군 (비율)	248 (100)	49 (20)	77 (31)	111 (45)	11 (4)	0 (0)

○ 분석

- 2021년 전체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중 병 58%, 준·부사관 28%, 장교 11%, 군무원 3%
- 국방부 장교 34%, 육군 병 61%, 해군 병 57%, 공군 준·부사관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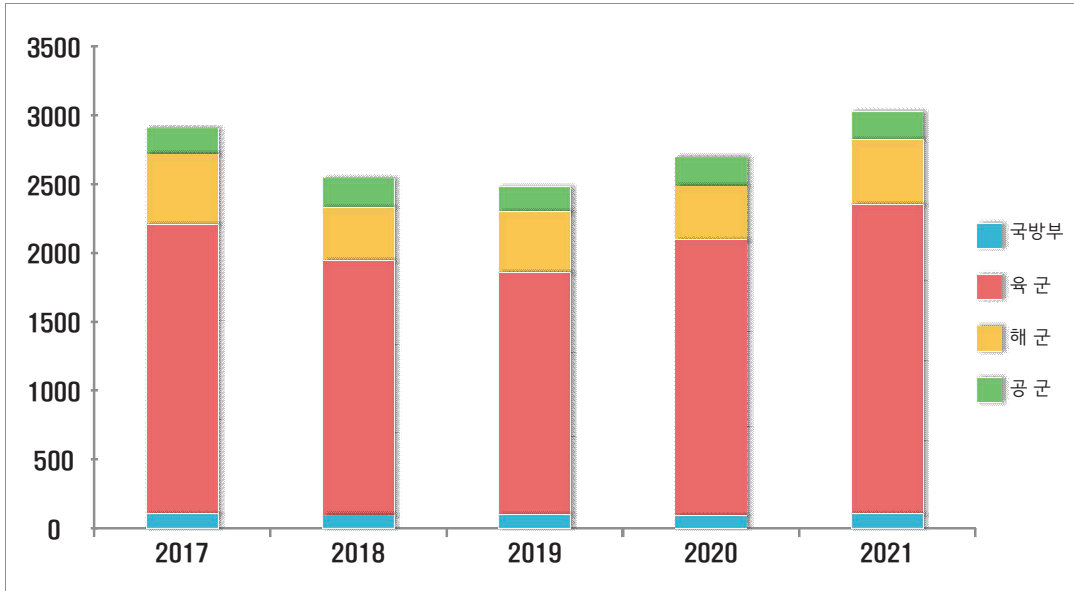
5.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죄명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3,603	383	1,021	2,098	86	15
	군형법(성범죄 제외)	348	28	80	224	3	13
	주요 형법	810	80	166	547	17	0
	교통범죄	632	108	361	132	31	0
	성범죄(군형법 포함)	900	105	233	545	17	0
	폭력범죄	417	25	102	280	10	0
	국보법/군기법	4	2	0	0	0	2
	기타법률위반	492	35	79	370	8	0
국방부	소계	104	35	28	20	18	3
	군형법(성범죄 제외)	2			1		1
	주요 형법	33	15	7	6	5	
	교통범죄	20	7	6	3	4	
	성범죄(군형법 포함)	21	5	8	4	4	
	폭력범죄	10		4	3	3	
	국보법/군기법	2					2
기타법률위반	16	8	3	3	2		
육군	소계	2,635	256	709	1,616	47	7
	군형법(성범죄 제외)	223	17	56	141	2	7
	주요 형법	626	42	126	452	6	
	교통범죄	460	79	249	110	22	
	성범죄(군형법 포함)	648	74	156	410	8	
	폭력범죄	282	20	68	189	5	
	국보법/군기법	1	1				
기타법률위반	395	23	54	314	4		
해군	소계	616	43	207	351	10	5
	군형법(성범죄 제외)	100	5	17	72	1	5
	주요 형법	95	11	18	65	1	
	교통범죄	116	11	87	16	2	
	성범죄(군형법 포함)	146	9	44	90	3	
	폭력범죄	98	3	23	71	1	
	국보법/군기법	0	0				
기타법률위반	61	4	18	37	2		
공군	소계	248	49	77	111	11	0
	군형법(성범죄 제외)	23	6	7	10		
	주요 형법	56	12	15	24	5	
	교통범죄	36	11	19	3	3	
	성범죄(군형법 포함)	85	17	25	41	2	
	폭력범죄	27	2	7	17	1	
	국보법/군기법	1	1				
기타법률위반	20		4	16			

○ 분석

- 2021년 전체 형사사건 죄명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5%, 교통범죄 18%, 군형법(성범죄 제외) 10%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72%, 해군 16%, 공군 10%, 국방부 2%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육군 73%, 해군 18%, 공군 6%, 국방부 3%
- 전체 군형법(성범죄 제외) 사건 중 육군 64%, 해군 29%, 공군 6.5%, 국방부 0.5%

6.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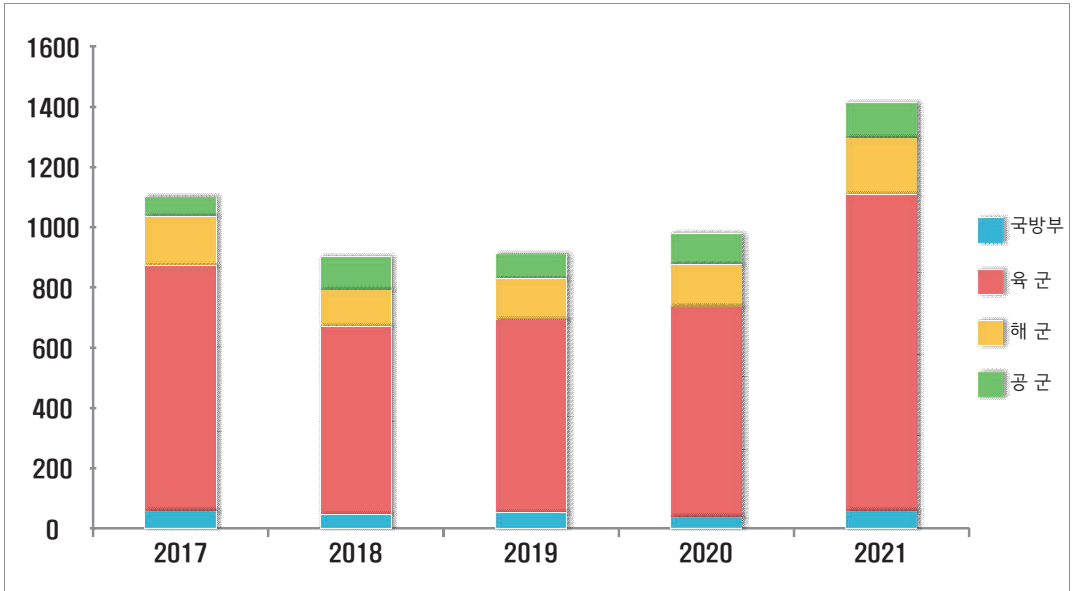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3,633 (100)		473 (4)		9,956 (73)		2,208 (16)		996 (7)	
	공판 약식	5,295 (100)	8,480 (100)	241 (5)	232 (3)	3,826 (72)	6,130 (73)	751 (14)	1,457 (18)	477 (9)	517 (6)
2017년	명 (비율)	2,901 (100)		98 (3)		2,107 (73)		509 (18)		187 (6)	
	공판 약식	1,099 (100)	1,802 (100)	55 (5)	43 (2)	815 (74)	1,292 (72)	164 (15)	345 (19)	65 (6)	122 (7)
2018년	명 (비율)	2,540 (100)		93 (4)		1,847 (73)		386 (15)		214 (8)	
	공판 약식	899 (100)	1,641 (100)	44 (5)	49 (3)	624 (70)	1,223 (75)	121 (13)	265 (16)	110 (12)	104 (6)
2019년	명 (비율)	2,691 (100)		96 (4)		1,755 (71)		444 (18)		184 (7)	
	공판 약식	978 (100)	1,713 (100)	51 (6)	45 (3)	639 (70)	1,116 (71)	137 (15)	307 (20)	81 (9)	101 (6)
2020년	명 (비율)	2,691 (100)		87 (3)		2,003 (74)		392 (15)		209 (8)	
	공판 약식	978 (100)	1,713 (100)	35 (4)	52 (3)	697 (71)	1,306 (76)	143 (15)	249 (15)	103 (10)	106 (6)
2021년	명 (비율)	3,022 (100)		99 (3)		2,244 (74)		477 (16)		202 (7)	
	공판 약식	1,411 (100)	1,611 (100)	56 (4)	43 (3)	1,051 (75)	1,193 (74)	186 (13)	291 (18)	118 (8)	84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3%, 해군 16%, 공군 7%, 국방부 4%
- 2021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해군 사건 증가, 공군 사건 감소

7.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295 (100)	241 (5)	3,826 (72)	751 (14)	477 (9)
2017년	명 (비율)	1,099 (100)	55 (5)	815 (74)	164 (15)	65 (6)
2018년	명 (비율)	899 (100)	44 (5)	624 (70)	121 (13)	110 (12)
2019년	명 (비율)	908 (100)	51 (6)	639 (70)	137 (15)	81 (9)
2020년	명 (비율)	978 (100)	35 (4)	697 (71)	143 (15)	103 (10)
2021년	명 (비율)	1,411 (100)	56 (4)	1,051 (75)	186 (13)	118 (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2%, 해군 14%, 공군 9%, 국방부 5%
- 2021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해군·공군 사건 모두 증가

8. 2021년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411 (100)	158 (11)	325 (23)	877 (62)	37 (3)	14 (1)
국방부 (비율)	56 (100)	19 (34)	10 (18)	13 (23)	10 (18)	4 (7)
육 군 (비율)	1,051 (100)	96 (9)	237 (23)	693 (65)	18 (2)	7 (1)
해 군 (비율)	186 (100)	21 (11)	40 (21)	120 (65)	2 (1)	3 (2)
공 군 (비율)	118 (100)	22 (19)	38 (32)	51 (43)	7 (6)	0 (0)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중 병 62%, 준·부사관 23%, 장교 11%, 군무원 3%
- 국방부 장교 34%, 육군 병 65%, 해군 병 65%, 공군 병 43%

9. 2021년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국보/군기	기 타
합계 (비율)	1,411 (100)	236 (16.5)	242 (17)	81 (6)	576 (41)	123 (9)	7 (0.5)	146 (10)
국방부 (비율)	56 (100)	2 (4)	10 (18)	5 (9)	20 (35)	6 (11)	4 (7)	9 (16)
육 군 (비율)	1,051 (100)	173 (16)	190 (18)	65 (6)	425 (41)	86 (8)	2 (=0)	110 (11)
해 군 (비율)	186 (100)	43 (23)	19 (10)	8 (4)	76 (41)	22 (12)	0 (0)	18 (10)
공 군 (비율)	118 (100)	18 (15)	23 (19)	3 (3)	55 (46)	9 (8)	1 (1)	9 (8)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41%,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6.5%, 주요 형법범 17%, 폭력범죄 9%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74%, 해군 13%, 공군 10%, 국방부 3%
- 전체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사건 중 육군 73%, 해군 18%, 공군 8%, 국방부 1%
- 전체 폭력범죄 사건 중 육군 70%, 해군 18%, 공군 7%, 국방부 5%

10. 2021년 공판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합계	합계	1,411	0	161	367	390	83	75	20	308	7	
	장교	장성	0	0	0	0	0	0	0	0	0	0
		영관	72	0	7	21	22	4	8	2	8	0
		위관	86	0	13	19	35	5	9	0	3	2
	준·부사관	325	0	49	81	103	24	36	7	23	2	
	병	877	0	85	227	218	48	17	9	271	2	
	군무원	35	0	6	8	12	1	3	2	3	0	
	민간인	16	0	1	11	0	1	2	0	0	1	
국방부	소계	56	0	9	15	13	2	4	3	10	0	
	장교	장성	0									
		영관	15		2	6	2		2	1	2	
		위관	4				4					
	준·부사관	10		2	3	3			1	1		
	병	13		1	2	3	1		1	5		
	군무원	8		3	1	1	1			2		
민간인	6		1	3			2					
육군	소계	1,051	0	118	250	302	62	61	14	238	6	
	장교	장성	0									
		영관	36		2	10	11	2	6		5	
		위관	60		10	12	22	3	8		3	2
	준·부사관	237		36	50	76	20	29	5	19	2	
	병	693		70	168	185	36	16	7	210	1	
	군무원	18			5	8		2	2	1		
민간인	7			5		1				1		
해군	소계	186	0	19	55	52	9	9	1	41		
	장교	장성	0									
		영관	10		1	2	5			1	1	
		위관	11		1	2	7		1			
	준·부사관	40		5	15	11	2	7				
	병	120		12	33	27	7	1		40		
	군무원	2				2						
민간인	3			3								
공군	소계	118	0	15	47	23	10	1	2	19	1	
	장교	장성	0									
		영관	11		2	3	4	2				
		위관	11		2	5	2	2				
	준·부사관	38		6	13	13	2		1	3		
	병	51		2	24	3	4		1	16	1	
	군무원	7		3	2	1		1				
민간인	0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처분별 처리 중 재산형 28%, 집행유예 26%, 자유형 11%, 선고유예 6%, 무죄 5%, **이송 22%**
- 국방부 처분별 집행유예 27%, 신분별 장교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32%
- 육군 처분별 재산형 29%, 신분별 병의 경우 재산형 27%, 이송 30%
- 해군 처분별 집행유예 30%, 신분별 병의 경우 집행유예 28%, 이송 33%
- 공군 처분별 집행유예 40%, 신분별 병의 경우 집행유예 47%, 이송 31%

11. 2021년 공판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합계	1,411	359	323	241	160	106	68	45	34	22	53
	구 속	126	28	25	25	16	25	0	2	1	0	4
	불구속	1,285	331	298	216	144	81	68	43	33	22	49
국방부	소 계	56	9	2	10	8	8	0	2	2	1	14
	구 속	10	0	0	3	1	3	0	1	0	0	2
	불구속	46	9	2	7	7	5	0	1	2	1	12
육 군	소계	1,051	250	263	175	124	72	59	37	24	17	30
	구 속	82	14	21	18	10	16	0	1	1	0	1
	불구속	969	236	242	157	114	56	59	36	23	17	29
해 군	소계	186	52	26	45	19	15	6	5	5	4	9
	구 속	16	5	1	2	3	4	0	0	0	0	1
	불구속	170	47	25	43	16	11	6	5	5	4	8
공 군	소계	118	48	32	11	9	11	3	1	3	0	0
	구 속	18	9	3	2	2	2	0	0	0	0	0
	불구속	100	39	29	9	7	9	3	1	3	0	0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처리일수 중 120일 이내 처리 65%(구속 62%, 불구속 66%)
- 120일 이내 처리 국방부 38%, 육군 65%, 해군 66%, 공군 77%

12. 2021년 공판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율)	161 (100)	0 (0)	5 (3)	21 (13)	48 (30)	60 (37)	27 (17)
국방부 (비율)	9 (100)	0 (0)	0 (0)	1 (11)	2 (22)	6 (67)	0 (0)
육 군 (비율)	118 (100)	0 (0.0)	5 (4)	13 (11)	40 (34)	45 (38)	15 (13)
해 군 (비율)	19 (100)	0 (0.0)	0 (0)	4 (22)	5 (26)	5 (26)	5 (26)
공 군 (비율)	15 (100)	0 (0)	0 (0)	3 (20)	1 (7)	4 (27)	7 (46)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37%, 1년 미만 17%, 3년 이상 46%
-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국방부 67%, 육군 38%, 공군 27%, 해군 26%
-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국방부 33%, 육군 49%, 해군 48%, 공군 27%

13. 2021년 공판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합계	576	14	26	16	3	8	0	6	36	49	22	4	12	0	8	47	121	54	16	6	2	114	3	4	3	0	1	0	1	
	군형법위반	234	7	20	1	3	5	0	5	21	39	1	3	4	0	3	5	38	0	12	0	0	58	2	4	1	0	1	0	1	
	형법위반	101	3	3	7	0	3	0	1	4	2	5	0	3	0	2	9	22	15	1	4	0	15	1	0	1	0	0	0	0	
	성폭법위반	106	0	1	6	0	0	0	0	6	3	12	0	2	0	2	15	15	23	2	0	1	17	0	0	1	0	0	0	0	
	아청법위반	127	4	1	2	0	0	0	0	5	5	4	1	3	0	1	18	44	13	1	2	1	22	0	0	0	0	0	0	0	
	기타	8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0	0	0	2	0	0	0	0	0	0	0	
국방부	소계	20	0	3	2	0	1	0	1	1	1	1	0	0	0	1	1	0	2	0	0	0	2	2	0	0	0	1	0	1	
	군형법위반	8		2			1			1	1												1				1		1		
	형법위반	6			2				1						1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5		1								1				1	1					1									
	기타	0																													
육군	소계	425	12	17	10	0	7	0	5	26	29	15	4	10	0	6	37	85	48	12	6	2	89	0	3	2	0	0	0	0	
	군형법위반	157	6	13			4		5	14	23	1	3	4		3	4	23		9			41		3	1					
	형법위반	80	2	2	4		3			3	1	5		3			6	18	14	1	4		14								
	성폭법위반	87		1	4					5	1	8		1		2	14	10	22	2		1	15			1					
	아청법위반	96	4		2					4	4	1	1	2		1	13	33	10		2	1	18								
	기타	5		1														1	2				1								
해군	소계	76	0	1	2	0	0	0	0	5	12	3	0	2	0	0	8	19	4	3	0	0	16	0	0	1	0	0	0	0	
	군형법위반	37		1	1					3	9						1	8		2			12								
	형법위반	10			1					1	1						2	3	1							1					
	성폭법위반	11									2	1		1			1	4					2								
	아청법위반	15								1		2		1			4	3	2	1			1								
	기타	3																1	1				1								
공군	소계	55	2	5	2	3	0	0	0	4	7	3	0	0	0	1	1	17	0	1	0	0	7	1	1	0	0	0	0	0	
	군형법위반	32	1	4		3				3	6							7		1			5	1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7			2					1		3						1													
	아청법위반	11									1							8					2								
	기타	0																													

○ 분석

- 2021년 전체 성범죄 처리 중 신분별 병 63%, 준·부사관 23%, 장교 13%, 군무원 2%, 처분별 집행유예 35%, 자유형 17%, 재산형 16%, 이송 **22%**
- 국방부 재산형 25%, 자유형 20%, 이송 25%
- 육군 집행유예 32%, 자유형 18%, 이송 24%
- 해군 집행유예 42%, 자유형 17%, 이송 21%
- 공군 집행유예 55%, 자유형 15%, 이송 15%

14. 2021년 공판사건 무죄 현황

구 분	범죄유형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74	20	33	17	4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3	3	7	3	0	0
	주요 형법범	16	5	8	2	1	0
	교통범죄	3	0	1	1	1	0
	성범죄(군형법 포함)	26	7	12	6	1	0
	폭력범죄	3	1	1	1	0	0
	국보법/군기법	0	0	0	0	0	0
기타법률위반	13	4	4	4	1	0	
국방부	소계	4	2	0	0	2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0					
	주요 형법범	0					
	교통범죄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1				1	
	폭력범죄	1	1				
	국보법/군기법	0					
기타법률위반	1	1					
육 군	소계	61	17	26	16	2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	2	5	3		
	주요 형법범	16	5	8	2	1	
	교통범죄	2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23	7	10	6		
	폭력범죄	1			1		
	국보법/군기법	0					
기타법률위반	9	3	2	3	1		
해 군	소계	9	1	7	1	0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3	1	2			
	주요 형법범	0					
	교통범죄	0					
	성범죄(군형법 포함)	2		2			
	폭력범죄	1		1			
	국보법/군기법	0					
기타법률위반	3		2	1			
공 군	소계	0	0	0	0	0	0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0					
	주요 형법범	0					
	교통범죄	0					
	성범죄(군형법 포함)	0					
	폭력범죄	0					
	국보법/군기법	0					
기타법률위반	0						

○ 분석

- 2021년 전체 무죄 판결 중 신분별 준·부사관 45%, 장교 27%, 병 23%, 군무원 5%, 죄명별 성범죄(군형법 포함) 35%, 교통범죄 4%
- 전체 성범죄(군형법 포함) 사건 중 육군 88%, 해군 8%, 국방부 4%

15. 2021년 공판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합계 (비율)	1,411 (100)	515 (37)	582 (41)	314 (22)
국방부 (비율)	56 (100)	34 (61)	12 (21)	10 (18)
육 군 (비율)	1,051 (100)	364 (35)	444 (42)	243 (23)
해 군 (비율)	186 (100)	63 (34)	82 (44)	41 (22)
공 군 (비율)	118 (100)	54 (46)	44 (37)	20 (17)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중 1심 확정 41%, 항소 37%(이송 제외한 항소율 47%)
- 이송 제외한 항소율 국방부 74%, 공군 55%, 육군 45%, 해군 43%

16. 2021년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합계 (비율)	515 (100)	160 (31)	160 (31)	195 (38)
국방부 (비율)	34 (100)	14 (41)	6 (18)	14 (41)
육 군 (비율)	364 (100)	126 (35)	129 (36)	109 (29)
해 군 (비율)	63 (100)	10 (16)	17 (27)	36 (57)
공 군 (비율)	54 (100)	10 (19)	8 (15)	36 (66)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중 피고인 항소 31%, 군검사 항소 31%, 쌍방 항소 38%
- 피고인의 항소율 공군 85%, 국방부 74%, 해군 73%, 육군 65%

17. 2021년 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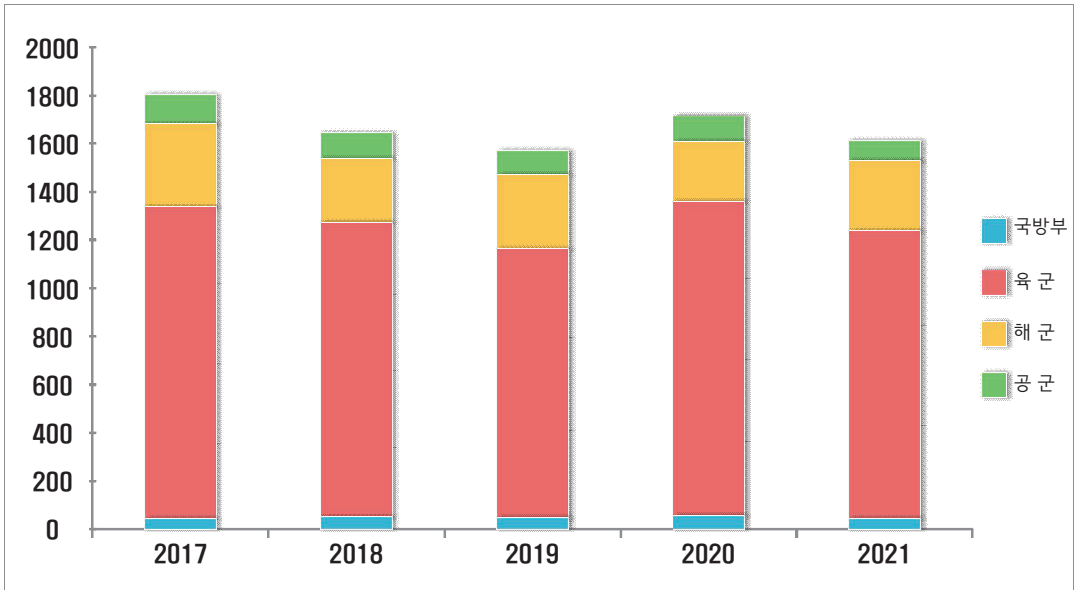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합계 (비율)	1,216 (100)	488 (40)	111 (9)	377 (31)	728 (60)
국방부 (비율)	50 (100)	12 (24)	4 (8)	8 (16)	38 (76)
육 군 (비율)	923 (100)	373 (40)	91 (10)	282 (30)	550 (60)
해 군 (비율)	145 (100)	59 (41)	10 (7)	49 (34)	86 (59)
공 군 (비율)	98 (100)	44 (45)	6 (6)	38 (39)	54 (55)

○ 분석

- 2021년 전체 공판사건 변호인 현황 사선 60%, 국선 40%
- 사선변호인 선임률 국방부 76%, 육군 60%, 해군 59%, 공군 55%
- 국선변호인 중 변호사 선정률 국방부 33%, 육군 24%, 해군 17%, 공군 14%

18.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336 (100)	232 (3)	6,130 (73)	1,457 (18)	517 (6)
2017년	명 (비율)	1,802 (100)	43 (2)	1,292 (72)	345 (19)	122 (7)
2018년	명 (비율)	1,641 (100)	49 (3)	1,223 (75)	265 (16)	104 (6)
2019년	명 (비율)	1,569 (100)	45 (3)	1,116 (71)	307 (20)	101 (6)
2020년	명 (비율)	1,713 (100)	52 (3)	1,306 (76)	249 (15)	106 (6)
2021년	명 (비율)	1,611 (100)	43 (3)	1,193 (74)	291 (18)	84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73%, 해군 18%, 공군 6%, 국방부 3%
- 2021년 전년 대비 국방부·육군·공군 사건 감소, 해군 사건 증가

19. 2021년 약식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611 (100)	131 (8)	517 (32)	918 (57)	45 (3)	0 (0)
국방부 (비율)	43 (100)	11 (26)	14 (33)	10 (23)	8 (18)	0 (0)
육 군 (비율)	1,193 (100)	96 (8)	352 (30)	718 (60)	27 (2)	0 (0)
해 군 (비율)	291 (100)	12 (4)	117 (40)	156 (54)	6 (2)	0 (0)
공 군 (비율)	84 (100)	12 (6)	34 (16.8)	34 (16.8)	4 (2)	0 (0)

○ 분석

- 2021년 전체 약식사건 신분별 병 57%, 준·부사관 32%, 장교 8%, 군무원 3%
- 국방부 준·부사관 33%, 육군 병 60%, 해군 병 54%, 공군 준·부사관 및 병 16.8%

20. 2021년 약식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법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국보/군기	기타 법률
합계 (비율)	1,611 (100)	61 (4)	399 (25)	506 (31)	142 (9)	217 (13)	0 (0)	286 (18)
국방부 (비율)	43 (100)	0 (0)	11 (25)	18 (42)	2 (5)	3 (7)	0 (0)	9 (21)
육 군 (비율)	1,193 (100)	27 (2)	315 (26)	359 (31)	111 (9)	152 (13)	0 (0)	229 (19)
해 군 (비율)	291 (100)	31 (11)	46 (16)	102 (35)	20 (7)	54 (18)	0 (0)	38 (13)
공 군 (비율)	84 (100)	3 (4)	27 (32)	27 (32)	9 (11)	8 (9)	0 (0)	10 (12)

○ 분석

- 2021년 전체 약식사건 죄명별 교통범죄 31%, 주요 형법법 25%
- 전체 교통범죄 사건 중 육군 71%, 해군 20%, 공군 5%, 국방부 4%

21. 2021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합계 (비율)	1,611 (100)	1,501 (93)	92 (6)	18 (1)
국방부 (비율)	43 (100)	37 (86)	5 (12)	1 (2)
육 군 (비율)	1,193 (100)	1,118 (94)	65 (5)	10 (1)
해 군 (비율)	291 (100)	268 (92)	16 (6)	7 (2)
공 군 (비율)	84 (100)	78 (93)	6 (7)	0 (0)

○ 분석

- 2021년 전체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93%, 공판절차 회부 6%, 이송 등 1%
- 2021년 이송 제외한 공판절차 회부율 국방부 12%, 공군 7%, 해군 6%, 육군 5%

22. 2021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 구속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23	15 (65)	217	146 (67)	40	18 (45)	28	21 (75)	308	200 (65)

○ 분석

- 2021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5%
- 구속영장 발부율 공군 75%, 육군 67%, 국방부 65%, 해군 450%

■ 체포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3	2 (67)	29	29 (100)	5	5 (100)	1	1 (100)	38	37 (97)

○ 분석

- 2021년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 97%
- 체포영장 발부율 육군·해군·공군 각 100%, 국방부 67%

■ 압수·수색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발부율)
103	92 (89)	477	290 (61)	83	44 (53)	79	41 (52)	742	467 (63)

○ 분석

- 2021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63%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국방부 89%, 육군 61%, 해군 53%, 공군 52%

23. 2021년 구속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 보석허가청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청 구	허 가 (허가율)
6	2 (33)	14	4 (29)	1	0 (0)	2	0 (0)	23	6 (26)

○ 분석

- 2021년 전체 보석허가청구 허가율 26%
- 보석허가청구 허가율 국방부 33%, 육군 29%

■ 구속적부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1	0 (0)	14	2 (14)	2	0 (0)	1	1 (100)	18	3 (17)

○ 분석

- 2021년 전체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17%

■ 형사보상청구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계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청 구	인 용 (인용률)
1	1 (100)	14	13 (93)	0	0 (0)	1	1 (100)	16	15 (94)

○ 분석

- 2021년 전체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9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 2021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104 (100)	56 (53.8)	48 (46.2)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491 (100)	255 (51.9)	236 (48.1)
2017년	88 (100)	45 (51.1)	43 (48.8)
2018년	105 (100)	55 (52.3)	50 (47.6)
2019년	82 (100)	38 (46.3)	44 (53.6)
2020년	112 (100)	61 (54.4)	51 (45.5)
2021년	104 (100)	56 (53.8)	48 (46.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1.9%, 약식 사건 48.1%
-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유사

2.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04		35		28		20		18		3	
	56	48	22	13	14	14	9	11	8	10	3	0
민간인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군용물에관한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등)	10		2		6				2		
기타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3		3								
	문서인장죄	4		4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죄	1	3			1		1	1	1		
	사기공갈죄	1	1					1	1			
	횡령배임죄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0	8	5	3	3	2	1	3	1		
치안범죄	교통법위반		4	2				2				
	도교법위반	1	2	1	2							
	도교법위반(음주)	1	12		2		6	1		4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소년범죄	형법위반	3	1	1			2			1		
	성폭법위반	2	1	1			1	1	1			
	아청법위반	3	1	1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기타												
폭력범죄	상해, 폭행죄	4	1			2		1		1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2	3			1	1	1	1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										2	
기타법률위반	7	9	4	4	1	2	1	2	1	1		

○ 분석

- 2021년 접수 중 주요형법범 31.7%, 성범죄(군형법 포함) 20.2%, 교통범죄 19.2%, 폭력범죄 9.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9%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0%

3. 2021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04 (100)	35 (33.7)	28 (26.9)	20 (19.2)	18 (17.3)	3 (2.9)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91 (100)	199 (40.5)	102 (20.8)	90 (18.3)	90 (18.3)	10 (2.1)
2017년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2018년	명 (비율)	105 (100)	57 (54.2)	18 (17.1)	12 (11.4)	18 (17.1)	0 (0)
2019년	명 (비율)	82 (100)	33 (40.2)	18 (21.9)	18 (21.9)	13 (15.8)	0 (0)
2020년	명 (비율)	112 (100)	36 (32.4)	23 (20.5)	27 (24.1)	20 (17.8)	6 (5.3)
2021년	명 (비율)	104 (100)	35 (33.7)	28 (26.9)	20 (19.2)	18 (17.3)	3 (2.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40.5%, 준·부사관 20.8%, 병 18.3%, 군무원 18.3%
- 2021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및 민간인 사건 감소
- 2021년 접수 중 장교 33.7%, 준·부사관 26.9%, 병 19.2%, 군무원 17.3%, 민간인 2.9%
- 2021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7.1% 감소

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56 (100)	22 (39.3)	14 (25)	9 (16.1)	8 (14.3)	3 (5.3)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55 (100)	124 (48.6)	44 (17.3)	37 (14.5)	40 (15.7)	10 (3.9)
2017년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2018년	명 (비율)	55 (100)	36 (65.4)	8 (14.5)	3 (5.4)	8 (14.5)	0 (0)
2019년	명 (비율)	38 (100)	20 (52.6)	7 (18.4)	6 (15.7)	5 (13.1)	0 (0)
2020년	명 (비율)	61 (100)	26 (42.6)	8 (13.1)	12 (19.6)	9 (14.7)	6 (9.8)
2021년	명 (비율)	56 (100)	22 (39.3)	14 (25)	9 (16.1)	8 (14.3)	3 (5.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48.6%, 준·부사관 17.3%, 병 14.5%, 군무원 15.7%, 민간인 3.9%
- 연도별 각 신분별 접수 현황은 계속 변동
- 2021년 접수 중 장교 39.3%, 준·부사관 25%, 병 16.1%, 군무원 14.3%, 민간인 5.3%
- 2021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8.2% 감소

5.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99	56	19	10	13	10	4	43	11	14	10	8	0
(비율)	(100)	(56.6)	(19.2)	(10.1)	(13.1)	(10.1)	(4.1)	(43.4)	(11.1)	(14.1)	(10.1)	(8.1)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473	241	111	43	38	40	9	232	73	58	52	49	0
(비율)	(100)	(51)	(23.5)	(9.1)	(8)	(8.5)	(1.9)	(49)	(15.4)	(12.3)	(11)	(10.3)	(0)
2017년	98	55	22	13	9	11	0	43	18	8	5	12	0
(비율)	(100)	(56.1)	(22.4)	(13.2)	(9.1)	(11.2)	(0)	(43.8)	(18.3)	(8.1)	(5.1)	(12.2)	(0)
2018년	93	44	27	6	3	7	1	49	20	10	10	9	0
(비율)	(100)	(47.3)	(29)	(6.4)	(3.2)	(7.5)	(0)	(52.7)	(21.6)	(10.7)	(10.7)	(9.7)	(0)
2019년	96	51	27	10	5	9	0	45	13	11	12	9	0
(비율)	(100)	(53.1)	(28.1)	(10.4)	(5.2)	(9.3)	(0)	(46.8)	(13.5)	(11.4)	(12.5)	(9.3)	(0)
2020년	87	35	16	4	8	3	4	52	11	15	15	11	0
(비율)	(100)	(40.2)	(18.4)	(4.6)	(9.2)	(3.4)	(4.6)	(59.8)	(12.6)	(17.2)	(17.2)	(12.6)	(0)
2021년	99	56	19	10	13	10	4	43	11	14	10	8	0
(비율)	(100)	(56.6)	(19.2)	(10.1)	(13.1)	(10.1)	(4.1)	(43.4)	(11.1)	(14.1)	(10.1)	(8.1)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21년 처리 사건 중 장교 30.3%, 준·부사관 24.2%, 병 23.2%, 군무원 18.2%, 민간인 4.1%
- 2021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6. 2021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99	56	0	9	15	13	2	4	3	10	0	43	37	6
(비율)	(100)	(56.5)	(0)	(9.1)	(15.2)	(13.1)	(2)	(4.1)	(3)	(10.1)	(0)	(43.4)	(37.3)	(6.1)

* 약식사건의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기타', 정식재판청구 '벌금'에 기재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	473	241	0	44	49	67	6	30	3	42	0	232	201	31
(비율)	(100)	(51)	(0)	(9.3)	(10.4)	(14.2)	(1.3)	(6.3)	(0.6)	(8.9)	(0)	(49)	(42.5)	(6.5)
2017년	98	55	0	11	11	15	1	8	0	9	0	43	41	2
(비율)	(100)	(56.1)	(0)	(11.2)	(11.2)	(15.3)	(1)	(8.1)	(0)	(9.1)	(0)	(43.8)	(41.8)	(2)
2018년	93	44	0	13	5	9	0	7	0	10	0	49	46	3
(비율)	(100)	(47.3)	(0)	(13.9)	(5.3)	(9.6)	(0)	(7.5)	(0)	(10.7)	(0)	(52.7)	(49.5)	(3.2)
2019년	96	51	0	5	9	21	1	9	0	6	0	45	35	10
(비율)	(100)	(53.1)	(0)	(5.2)	(9.3)	(21.8)	(1)	(9.3)	(0)	(6.2)	(0)	(46.8)	(36.4)	(10.4)
2020년	87	35	0	6	9	9	2	2	0	7	0	52	42	10
(비율)	(100)	(40.2)	(0)	(6.8)	(10.3)	(10.3)	(2.2)	(2.2)	(0)	(8)	(0)	(59.8)	(48.3)	(11.5)
2021년	99	56	0	9	15	13	2	4	3	10	0	43	37	6
(비율)	(100)	(56.5)	(0)	(9.1)	(15.2)	(13.1)	(2)	(4.1)	(3)	(10.1)	(0)	(43.4)	(37.3)	(6.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처리 비율과 유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27.8%, 집행유예 20.3%, 자유형 18.3%, 무죄 12.4%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21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26.8%, 재산형 23.2%, 자유형 16.1%, 무죄 7.1%

8.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9	56	0	9	15	13	2	4	3	10	0	43	37	6
장교	장성	0	0									0		
	영관	21	15		2	6	2		2	1	2	6	5	1
	위관	9	4				4					5	3	2
준·부사관	24	10		2	3	3			1	1		14	13	1
병	23	13		1	2	3	1		1	5		10	9	1
군무원	16	8		3	1	1	1			2		8	7	1
민간인	6	6		1	3			2				0		

○ 분석

-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6.8%, 재산형 23.2%, 자유형 16.1%, 무죄 7.1%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31.6%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 각 30%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23.1%, 집행유예 15.4%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37.5%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50%, 무죄 33.3%

9.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56	9	2	10	8	8	0	2	2	1	14
구 속	10	0	0	3	1	3	0	1	0	0	2
불구속	46	9	2	7	7	5	0	1	2	1	12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7.9%, 불구속 사건 82.1%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30%, 151일 이상 180일 이내 30% 처리, 301일 이상 20% 처리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39.1%, 121일 이상 300일 이내 34.8%, 301일 이상 26.1% 처리

10. 2021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56	19	10	13	10	4
확 정	소계	12	2	2	4	3	1
	유죄	8	1	1	3	2	1
	무죄	1				1	
	면소	0					
	공소기각판결	3	1	1	1		
상 소	소계	34	15	7	4	5	3
	쌍방향소	14	8	4		2	
	피고인항소	14	4	3	2	2	3
	군검사항소	6	3		2	1	
이송		10	2	1	5	2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26.1%, 상소율 73.9%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66.7%
- 신분별 상소율 장교 88.2%, 준·부사관 77.8%, 병 50%, 군무원 62.5%, 민간인 75%

11.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9 (100)	0 (0)	0 (0)	1 (11.1)	2 (22.2)	6 (66.7)	0 (0)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4 (100)	0 (0)	0 (0)	5 (11.4)	6 (13.6)	28 (63.6)	5 (11.4)
2017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2018년	명 (비율)	13 (100)	0 (0)	0 (0)	2 (15.4)	1 (7.7)	8 (61.5)	2 (15.4)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3 (60)	2 (40)	0 (0)
2020년	명 (비율)	6 (100)	0 (0)	0 (0)	0 (0)	0 (0)	6 (100)	0 (0)
2021년	명 (비율)	9 (100)	0 (0)	0 (0)	1 (11.1)	2 (22.2)	6 (66.7)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5%, 1년 이상 3년 미만 63.6%, 1년 미만 11.4%
- 2021년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66.7%

12.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50 (100)	12 (24)	4 (8)	8 (16)	38 (76)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2 (100)	41 (20.3)	13 (6.4)	28 (13.9)	161 (79.7)
2017년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2018년	명 (비율)	34 (100)	6 (17.6)	2 (5.9)	4 (11.7)	28 (82.4)
2019년	명 (비율)	44 (100)	11 (25)	3 (6.8)	8 (18.1)	33 (75)
2020년	명 (비율)	28 (100)	6 (21.4)	3 (10.7)	3 (10.7)	22 (78.6)
2021년	명 (비율)	50 (100)	12 (24)	4 (8)	8 (16)	38 (7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79.7%,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31.7%
- 2021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76%,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66.7%
- 2021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감소

13.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20	0	3	2	0	1	0	1	1	1	1	0	0	0	1	1	0	2	0	0	0	0	2	2	0	0	0	1	0	1
군형법위반	8		2			1		1	1														1				1		1	
형법위반	6			2				1						1									1							
성폭법위반	1																	1					1							
아청법위반	5		1							1					1		1					1								
기타	0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43	2	4	4	0	1	0	1	2	2	3	0	2	0	1	1	0	5	0	0	0	0	5	3	2	2	0	2	0	1
군형법위반	13	0	2	0	0	1	0	0	2	1	0	0	2	0	0	0	0	0	0	0	0	0	1	2	0	0	0	1	0	1
형법위반	11	1	0	2	0	0	0	1	0	0	0	0	0	0	1	0	0	1	0	0	0	0	2	1	0	1	0	1	0	0
성폭법위반	12	1	1	2	0	0	0	0	0	0	2	0	0	0	0	0	0	3	0	0	0	0	0	2	1	0	0	0	0	0
아청법위반	7	0	1	0	0	0	0	0	0	1	1	0	0	0	0	1	0	1	0	0	0	0	2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6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1	1	0	0	0	0	0	0
2017년	1																						1							
군형법위반	0																													
형법위반	4			1						1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소계	5	0	0	0	0	0	0	0	1	1	0	0	1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2018년	2								1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1					
기타	0																													
소계	6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2	0	1	0	0	0
2019년	1																					1								
군형법위반	2																													
형법위반	3																		1						1			1		
성폭법위반	0																													
아청법위반	0																													
기타	0																													
소계	6	2	1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2020년	1																													
군형법위반	2	1																												
형법위반	3	1	1	1																										
성폭법위반	0																													
아청법위반	0																													
기타	0																													
소계	20	0	3	2	0	1	0	1	1	1	1	0	0	0	1	1	0	2	0	0	0	2	2	0	0	0	1	0	1	
2021년	8		2			1			1	1													1				1		1	
군형법위반	6			2				1							1															
형법위반	1																		1				1							
성폭법위반	5		1								1				1		1													
아청법위반	0																													
기타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0.2%, 성폭법위반 27.9%, 형법위반 25.6%, 장교 27.9%, 병 25.6%, 준·부사관 및 군무원 각 23.3%
재산형 32.6%, 집행유예 및 자유형 18.6%, 무죄 11.6%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21년 군형법위반 40%, 형법위반 30%, 아청법위반 25%
- 2021년 장교 35%, 병 25%, 준·부사관 및 군무원 각 20%
- 2021년 재산형 25%, 자유형 및 집행유예 20%, 무죄 10%

1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 (100)	1 (25)	3 (75)	0 (0)	0 (0)	0 (0)	0 (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9 (100)	2 (22.2)	6 (66.7)	1 (11.1)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9년	명 (비율)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	명 (비율)	4 (100)	1 (25)	2 (50)	1 (25)	0 (0)	0 (0)	0 (0)
2021년	명 (비율)	4 (100)	1 (25)	3 (75)	0 (0)	0 (0)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6.7%, 자유형 22.2%

15.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56 (100)	34 (60.7)	12 (21.4)	10 (17.9)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1 (100)	158 (65.6)	41 (17)	42 (17.4)
2017년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2018년	명 (비율)	44 (100)	31 (70.5)	3 (6.8)	10 (22.7)
2019년	명 (비율)	51 (100)	38 (74.5)	7 (13.7)	6 (11.7)
2020년	명 (비율)	35 (100)	19 (54.2)	9 (25.8)	7 (20)
2021년	명 (비율)	56 (100)	34 (60.7)	12 (21.4)	10 (17.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65.6%, 확정 17%, 이송 17.4%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비율 계속 변동
- 2021년 항소 60.7%, 확정 21.4%, 이송 17.9%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율 증가

16.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4 (100)	14 (41.2)	6 (17.6)	14 (41.2)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8 (100)	45 (28.5)	33 (20.9)	80 (50.6)
2017년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2018년	명 (비율)	31 (100)	2 (6.4)	7 (22.5)	22 (70.9)
2019년	명 (비율)	38 (100)	12 (31.5)	8 (21)	18 (47.3)
2020년	명 (비율)	19 (100)	7 (36.8)	3 (15.7)	9 (47.3)
2021년	명 (비율)	34 (100)	14 (41.2)	6 (17.6)	14 (41.2)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9.1%, 군검사의 항소율 71.5%
- 2021년 피고인의 항소율 82.4%, 군검사의 항소율 58.8%
- 2021년 전년 대비 피고인 및 군검사의 항소율 소폭 감소

17. 2021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명 (비율)	43 (100)	37 (86.1)	5 (11.6)	1 (2.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2 (100)	201 (86.6)	28 (12.1)	3 (1.3)
2017년	명 (비율)	43 (100)	41 (95.3)	2 (4.7)	0 (0)
2018년	명 (비율)	49 (100)	46 (93.9)	3 (6.1)	0 (0)
2019년	명 (비율)	45 (100)	35 (77.7)	8 (17.7)	2 (4.4)
2020년	명 (비율)	52 (100)	42 (80.8)	10 (19.2)	0 (0)
2021년	명 (비율)	43 (100)	37 (86.1)	5 (11.6)	1 (2.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86.6%, 공판절차 회부 12.1%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연도별 계속 변동
- 2021년 약식명령 확정 86.1%, 공판절차 회부 11.6%, 전년 대비 공판절차 회부 감소

18. 2021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3	15	8	65.2
체포영장	3	2	1	66.7
압수·수색영장	103	92	11	89.3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69	51	18	73.9
	체포영장	4	2	2	50
	압수·수색영장	699	641	58	91.7
2017년	구속영장	8	8		10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2
2018년	구속영장	16	14	2	87.5
	체포영장	1		1	
	압수·수색영장	196	178	18	90.8
2019년	구속영장	12	6	6	50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141	129	12	91.4
2020년	구속영장	10	8	2	80
	체포영장	0			
	압수·수색영장	70	62	8	88.5
2021년	구속영장	23	15	8	65.2
	체포영장	3	2	1	66.7
	압수·수색영장	103	92	11	89.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90%, 압수·수색영장 93.4%
- 연도별 분석결과 영장청구 건수 연도별 계속 변동
- 2021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5.2%, 체포영장 66.7%, 압수·수색영장 89.3%

19. 2021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23	8	14	1	14	9
장 교	7	2	5		4	3
준·부사관	4	1	3		3	1
병	4	3	1		4	
군무원	6	1	5		2	4
기 타	2	1		1	1	1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69	19	44	6	50	19
	장 교	35	5	28	2	28	7
	준·부사관	12	3	7	2	8	4
	병	6	5	1	0	4	2
	군무원	13	5	8	0	8	5
	민간인	3	1	0	2	2	1
2017년	소계	8	0	8	0	8	0
	장 교	4		4		4	
	준·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2018년	소계	16	3	12	1	14	2
	장 교	12		11	1	11	1
	준·부사관	3	2	1		2	1
	병						
	군무원	1	1			1	
2019년	소계	12	2	8	2	6	6
	장 교	6		6		4	2
	준·부사관	4		2	2	2	2
	병	2	2				2
	군무원						
2020년	소계	10	6	2	2	8	2
	장 교	6	3	2	1	5	1
	준·부사관						
	병						
	군무원	3	3			2	1
2021년	소계	23	8	14	1	14	9
	장 교	7	2	5		4	3
	준·부사관	4	1	3		3	1
	병	4	3	1		4	
	군무원	6	1	5		2	4
민간인	2	1		1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50.7%, 군무원 18.8%, 준·부사관 17.4%, 병 8.7%, 민간인 4.3%
발부율 중 장교 80%, 준·부사관 및 병 각 66.7%, 군무원 61.5%
- 2021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대폭 증가

20. 2021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보석허가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1	0	1	0
형사보상청구	1	1	0	100
기 타	7	3	4	42.9

* 기타: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 2, 비용보상청구, 변호인진술거부권행사조인 제한처분, 증거보전, 재판권쟁의재정신청, 즉시항고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8	6	12	33.3
	구속적부심	7	0	7	0
	형사보상청구	8	7	1	87.5
	기 타	26	18	8	69.2
2017년	보석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2018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7	7		100
2019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	1	1	50
2020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		1	0
2021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1	0	1	0
	형사보상청구	1	1	0	100
	기 타	7	3	4	42.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33.3%, 구속적부심 인용률 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7.5%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계속 변동

21. 2021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59	16	18	13	11	1
원판결확인	59	16	18	13	1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316	117	77	54	66	2
	원판결확인	316	117	77	54	66	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67	29	15	8	15	0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68	32	12	11	13	0
	원판결확인	68	32	12	11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61	20	15	13	13	0
	원판결확인	61	20	15	13	13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소계	61	20	17	9	14	1
	원판결확인	61	20	17	9	1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1년	소계	59	16	18	13	11	1
	원판결확인	59	16	18	13	1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21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	2	0	0	2	0
군 형 법 범 죄	간첩이적죄	0				
	군무이탈죄	0				
	상관에관한죄	0				
	군용물에관한죄	0				
	초병에관한죄	0				
	성범죄(군인등)	1			1	
	기타	0				
주 요 형 법 범 죄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0				
	문서인장죄	0				
	살인죄	0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죄	0				
	사기공갈죄	0				
	횡령배임죄	0				
	성폭속에관한죄	0				
기타	0					
교 통 법 범 죄	교통법위반	1			1	
	도교법위반	0				
	도교법위반(음주)	0				
	특가법위반(도주)	0				
	특가법위반(치사상)	0				
상 해 법 범 죄	형법위반	0				
	성폭법위반	0				
	아청법위반	0				
	성매매특별법위반	0				
	기타	0				
폭 력 법 범 죄	상해, 폭행죄	0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기타법률위반	1	1				

23. 2021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국방부 2021조1	육군일병	절도	벌금 50,000원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1. 2021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2,635 (100)	1,256 (47.7)	1,379 (52.3)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1,363 (100)	4,893 (43)	6,470 (57)
2017년	명 (비율)	2,231 (100)	945 (42.4)	1,286 (57.6)
2018년	명 (비율)	2,096 (100)	859 (41)	1,237 (59)
2019년	명 (비율)	2,114 (100)	878 (42)	1,236 (58)
2020년	명 (비율)	2,287 (100)	955 (42)	1,332 (58)
2021년	명 (비율)	2,635 (100)	1,256 (47.7)	1,379 (52.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3.1%, 약식사건 56.9%
- 2021년 접수 중 공판사건 47.7%, 전년 대비 공판사건 비율 증가

2.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256	1,379	129	127	304	405	798	818	18	29	7	0
면역외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7		1		4		12				
	상관에관한죄	113		4		19		90				
	군용물에관한죄	11	2	3		3		5	2			
	초병에관한죄	19						13				6
	성범죄(군인등)	205		32		87		84		2		
	기타	23	38	3	6	12	18	6	13	1	1	1
주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3				3						
	문서인장죄	11	1	4		2		5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9	5	1		4	2	4	3			
	절도강도죄	26	18	4	5	3	5	19	8			
	사기공갈죄	101	88	3		12	7	86	81			
횡령배임죄	3	5			1			5	2			
성폭속에관한죄	3	4				1	3	2		1		
기타	99	250	15	10	34	52	48	187	2	1		
외면범죄	교통법위반	22	89	3	20	4	40	12	23	3	6	
	도교법위반	5	22	1	2	1	9	3	11			
	도교법위반(음주)	26	271	6	46	9	172	10	41	1	12	
	특가법위반(도주)	6	4			4	1	2	3			
	특가법위반(치사상)	6	9	1		4	5	1	4			
외면중	형법위반	101	20	12	2	20	5	67	13	2		
	성폭법위반	92	59	10	3	16	8	64	47	2	1	
	아정법위반	112	43	6	4	15		91	39			
	성매매특별법위반	4	6	2	1	2	2		2		1	
	기타	5	1	1	1	1		3				
외면중	상해, 폭행죄	77	146	6	14	28	40	41	90	2	2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34	25					34	24		1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기타 법률위반	122	273	10	13	16	38	95	219	1	3		

○ 분석

- 2021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4.6%, 주요형법범 23.8%, 교통범죄 17.5%, 폭력범죄 10.7%,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8.5%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5.9%

3. 2021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635 (100)	256 (9.7)	709 (26.9)	1,616 (61.3)	47 (1.8)	7 (0.3)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1,363 (100)	1,070 (9.4)	3,050 (26.8)	6,996 (61.5)	215 (2)	32 (0.3)
2017년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2018년	명 (비율)	2,096 (100)	205 (9.8)	585 (27.9)	1,246 (59.4)	53 (2.5)	7 (0.3)
2019년	명 (비율)	2,114 (100)	221 (10.4)	555 (26.2)	1,301 (61.5)	31 (1.5)	6 (0.3)
2020년	명 (비율)	2,287 (100)	175 (7.7)	557 (24.4)	1,506 (65.9)	45 (2)	4 (0.2)
2021년	명 (비율)	2,635 (100)	256 (9.7)	709 (26.9)	1,616 (61.3)	47 (1.8)	7 (0.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5%, 준·부사관 26.8%, 병 61.6%, 군무원 1.9%
- 연도별 분석결과 신분별 비율 유사
- 2021년 접수 중 장교 9.7%, 준·부사관 26.9%, 병 61.3%, 군무원 1.8%

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256 (100)	129 (10.3)	304 (24.2)	798 (63.5)	18 (1.4)	7 (0.6)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893 (100)	476 (9.7)	1,089 (22.3)	3,225 (65.9)	75 (1.5)	28 (0.6)
2017년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2018년	명 (비율)	859 (100)	77 (9)	176 (20.5)	586 (68.2)	14 (1.6)	6 (0.7)
2019년	명 (비율)	878 (100)	101 (11.5)	200 (22.8)	560 (63.8)	11 (1.3)	6 (0.7)
2020년	명 (비율)	955 (100)	78 (8.2)	222 (23.2)	632 (66.2)	20 (2.1)	3 (0.3)
2021년	명 (비율)	1,256 (100)	129 (10.3)	304 (24.2)	798 (63.5)	18 (1.4)	7 (0.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10.3%, 준·부사관 24.2%, 병 65.9%, 군무원 1.5%, 민간인 0.6%
- 2021년 접수 중 장교 10.3%, 준·부사관 24.2%, 병 63.5%, 군무원 1.4%, 민간인 0.6%
- 2021년 전년 대비 장교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5.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244 (100)	1,051 (46.8)	96 (4.3)	237 (10.6)	693 (30.8)	18 (0.8)	7 (0.3)	1,193 (53.2)	96 (4.3)	352 (15.7)	718 (32)	27 (1.2)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56 (100)	3,826 (38.4)	342 (3.5)	799 (7.9)	2,608 (26.3)	54 (0.5)	23 (0.2)	6,130 (61.6)	555 (5.6)	1,828 (18.3)	3,612 (36.4)	132 (1.3)	3 (≒0)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76 (3.6)	155 (7.4)	569 (27)	10 (0.5)	5 (0.2)	1,292 (61.3)	134 (6.4)	435 (20.6)	696 (33)	25 (1.3)	2 (≒0)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53 (2.9)	119 (6.5)	442 (23.9)	6 (0.3)	4 (0.2)	1,223 (66.2)	127 (6.9)	393 (21.3)	666 (36)	37 (2)	0 (0)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68 (3.9)	137 (7.8)	421 (24)	8 (0.4)	5 (0.3)	1,116 (63.6)	105 (6)	317 (18.1)	676 (38.5)	18 (1)	0 (0)
2020년	명 (비율)	2,003 (100)	697 (34.8)	49 (2.5)	151 (7.5)	483 (24.1)	12 (0.6)	2 (0.1)	1,306 (65.2)	93 (4.7)	331 (16.5)	856 (42.7)	25 (1.3)	1 (≒0)
2021년	명 (비율)	2,244 (100)	1,051 (46.8)	96 (4.3)	237 (10.6)	693 (30.8)	18 (0.8)	7 (0.3)	1,193 (53.2)	96 (4.3)	352 (15.7)	718 (32)	27 (1.2)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21년 처리 사건 중 장교 8.6%, 준·부사관 26.3%, 병 62.8%, 군무원 2%, 민간인 0.3%

6. 2021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2,244 (100)	1,051 (46.8)	0 (0.0)	118 (5.2)	250 (11.1)	302 (13.5)	62 (2.8)	61 (2.7)	14 (0.6)	238 (10.6)	6 (0.3)	1,193 (53.2)	1,183 (52.7)	10 (0.5)

* 약식 기타: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등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56 (100)	3,826 (38.4)	0 (0)	333 (3.4)	1,082 (10.9)	1,146 (11.5)	229 (2.3)	218 (2.2)	61 (0.6)	751 (7.5)	6 (≒0)	6,130 (61.6)	5,817 (58.4)	313 (3.2)
2017년	명 (비율)	2,107 (100)	815 (38.7)	0 (0)	83 (3.9)	282 (13.4)	221 (10.5)	57 (2.7)	54 (2.6)	7 (0.3)	111 (5.3)	0 (0)	1,292 (61.3)	1,169 (55.5)	123 (5.8)
2018년	명 (비율)	1,847 (100)	624 (33.8)	0 (0)	39 (2.1)	205 (11.1)	208 (11.3)	36 (1.9)	26 (1.4)	12 (0.7)	98 (5.3)	0 (0)	1,223 (66.2)	1,119 (60.6)	104 (5.6)
2019년	명 (비율)	1,755 (100)	639 (36.4)	0 (0)	49 (2.8)	178 (10.1)	185 (10.5)	35 (2)	51 (2.9)	12 (0.7)	129 (7.4)	0 (0)	1,116 (63.6)	1,080 (61.5)	36 (2.1)
2020년	명 (비율)	2,003 (100)	697 (34.8)	0 (0)	44 (2.2)	167 (8.3)	230 (11.5)	39 (2)	26 (1.3)	16 (0.8)	175 (8.7)	0 (0)	1,306 (65.2)	1,266 (63.2)	40 (2)
2021년	명 (비율)	2,244 (100)	1,051 (46.8)	0 (0.0)	118 (5.2)	250 (11.1)	302 (13.5)	62 (2.8)	61 (2.7)	14 (0.6)	238 (10.6)	6 (0.3)	1,193 (53.2)	1,183 (52.7)	10 (0.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처리비율 38.4%, 약식사건 처리 비율 61.6%
공판사건 중 재산형 30%, 집행유예 28.3%, 자유형 8.7%, 무죄 5.7%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21년 공판사건 중 재산형 28.7%, 집행유예 23.8%, 자유형 11.2%, 선고유예 5.9%, 무죄 5.8%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자유형 및 무죄 증가, 재산형 감소

7.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244	1,051	0	118	250	302	62	61	14	238	6	1,193	1,183	10	
균형법범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21	21		5	8		6			2	0			
	상관에관한죄	105	105		3	29	2	17	6		48	0			
	군용물에관한죄	13	11		3	3	1	2	1		1	2	2		
	초병에관한죄	18	18		1	14		1		1		0			
	성범죄(군인등)	157	157		24	62	2	12	8		49	0			
	기타	43	18			5	3	3	3		4	25	25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0	0									0			
	문서인장죄	9	7		2	1	2			2		2	2		
	살인죄	0	0									0			
	과실치사상죄	13	10				3		3	1	3	3	3		
	절도강도죄	32	19		3	7	4	2	1		2	13	13		
	사기공갈죄	141	72		7	11	37		1		16	69	67	2	
	횡령배임죄	7	4			1	1		2			3	3		
	성폭속에관한죄	9	4				3				1	5	5		
	기타	294	74		5	1	37	3	9	4	14	1	220	217	3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98	19		2	2	9	1	1	2	2	79	79		
	도교법위반	22	5		1		3				1	17	17		
	도교법위반(음주)	275	24		2	2	16				4	251	250	1	
	특가법위반(도주)	15	11		1	1	8		1			4	4		
	특가법위반(치사상)	14	6		1	2	3					8	8		
성범죄	형법위반	99	80		11	21	23	1	10		13	1	19	19	
	성폭법위반	133	87		19	12	35	2	1	1	16	1	46	46	
	아청법위반	135	96		21	37	13	1	4	1	19		39	39	
	성매매특별법위반	8	2				2						6	6	
	기타	4	3			2					1		1	1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186	57		2	6	29	5		2	12	1	129	126	3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52	29			6	14	1	1		6	1	23	23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	2			2							0			
기타 법률위반	339	110		5	15	52	5	9	2	22		229	228	1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23.9%, 주요형법범 22.5%, 교통범죄 18.9%,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8.9%
- 균형법범 중 성범죄 44%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4.7%
- 균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39.5%

8.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244	1,051	0	118	250	302	62	61	14	238	6	1,193	1,183	10
장 교	장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관	50	36	0	2	10	11	2	6	0	5	0	14	14
	위관	142	60	0	10	12	22	3	8	0	3	2	82	82
준·부사관	589	237	0	36	50	76	20	29	5	19	2	352	350	2
병	1,411	693	0	70	168	185	36	16	7	210	1	718	710	8
군무원	45	18	0	0	5	8	0	2	2	1	0	27	27	0
민간인	7	7	0	0	5	0	1	0	0	0	1	0	0	0

○ 분석

- 장교 공판사건 재산형 34.4%, 집행유예 22.9%, 무죄 14.6%, 선고유예 5.2%
- 준·부사관 공판사건 재산형 32.1%, 집행유예 21.1%, 무죄 12.2%, 선고유예 8.4%
- 병 공판사건 재산형 26.7%, 집행유예 24.2%, 자유형 10.1%, 무죄 2.3%
- 군무원 공판사건 재산형 44.4%, 집행유예 27.8%, 무죄 11.1%
- 민간인 공판사건 집행유예 71.4%

9.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1,051	250	263	175	124	72	59	37	24	17	30
구 속	82	14	21	18	10	16	0	1	1	0	1
불구속	969	236	242	157	114	56	59	36	23	17	29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78%, 불구속 사건 92%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4.6%, 121일 이상 210일 이내 31.7%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5.5%, 121일 이상 210일 이내 23.6% 차지

10. 2021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051	96	237	693	18	7	
확정	소계	444	18	97	318	4	7
	유죄	430	18	92	311	2	7
	무죄	0					
	면소	0					
	공소기각	14		5	7	2	
상소	소계	364	68	119	164	13	0
	쌍방향소	109	23	44	37	5	
	피고인항소	126	23	39	60	4	
	군검사항소	129	22	36	67	4	
이송 등	243	10	21	211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42.2%, 상소 34.6%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6.8%
- 신분별 상소율 장교 79%, 준·부사관 55.1%, 병 34%, 군무원 76.5%

11.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18 (100)	0 (0)	5 (4.2)	13 (11)	40 (34)	45 (38.1)	15 (12.7)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28 (100)	0 (0)	8 (1)	28 (7)	77 (18.2)	140 (45.1)	75 (28.7)
2017년	명 (비율)	83 (100)	0 (0)	1 (1.2)	4 (4.8)	16 (19.3)	40 (48.2)	22 (26.5)
2018년	명 (비율)	39 (100)	0 (0)	0 (0)	2 (5.1)	5 (12.8)	20 (51.3)	12 (30.8)
2019년	명 (비율)	49 (100)	0 (0)	1 (2)	4 (8.2)	8 (16.3)	15 (30.6)	21 (42.9)
2020년	명 (비율)	39 (100)	0 (0)	1 (2.6)	5 (12.8)	8 (20.5)	20 (51.3)	5 (12.8)
2021년	명 (비율)	118 (100)	0 (0.0)	5 (4.2)	13 (11)	40 (34)	45 (38.1)	15 (12.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34.5%, 1년 이상 3년 미만 42.7%, 1년 미만 22.8%
- 2021년 3년 이상 49.2%, 1년 이상 3년 미만 38.1%, 1년 미만 12.7%

12.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923 (100)	373 (40.4)	91 (9.9)	282 (30.5)	550 (59.6)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080 (100)	1,909 (62)	393 (12.8)	1,516 (49.2)	1,170 (38)
2017년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2018년	명 (비율)	511 (100)	384 (75.1)	87 (17)	297 (58.1)	127 (24.9)
2019년	명 (비율)	485 (100)	327 (67.4)	83 (17.1)	244 (50.3)	158 (32.6)
2020년	명 (비율)	506 (100)	346 (68.4)	68 (13.4)	278 (55)	160 (31.6)
2021년	명 (비율)	923 (100)	373 (40.4)	91 (9.9)	282 (30.5)	550 (59.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8%,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20.6%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2021년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2021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9.6%,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75.6%
- 2021년 전년 대비 군법무관 국선변호인 선정률 소폭 감소

13.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425	12	17	10	0	7	0	5	26	29	15	4	10	0	6	37	85	48	12	6	2	89	0	3	2	0	0	0	0
군형법위반	157	6	13			4		5	14	23	1	3	4		3	4	23		9										
형법위반	80	2	2	4		3			3	1	5		3			6	18	14	1	4									
성폭법위반	87		1	4					5	1	8		1		2	14	10	22	2			1							
아청법위반	96	4		2					4	4	1	1	2		1	13	33	10		2		1							
기타	5		1													1	2					1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232	22	44	40	4	14	2	8	45	84	52	9	27	7	19	95	260	157	28	27	5	270	0	6	3	1	2	0	1
	군형법위반	449	11	35	1	4	7	0	7	17	64	2	6	12	1	7	12	115	0	20	3	0	118	0	4	1	1	1	0	0
	형법위반	301	4	4	13	0	6	2	0	9	9	21	1	8	1	2	30	59	53	3	13	3	59	0	0	0	0	1	0	0
	성폭법위반	267	2	4	20	0	1	0	1	14	4	20	1	3	4	7	34	33	63	4	4	1	43	0	1	2	0	0	0	1
	아청법위반	198	5	0	6	0	0	0	0	5	7	7	1	3	1	2	19	49	35	1	7	1	48	0	1	0	0	0	0	0
기타	17	0	1	0	0	0	0	0	0	0	2	0	1	0	1	0	4	6	0	0	0	2	0	0	0	0	0	0	0	
2017년	소계	241	5	7	10	4	0	0	1	4	15	5	0	4	0	4	23	78	22	7	6	0	46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96	2	6		4			1		11			1		1	3	42		3	2		20							
	형법위반	61	1		3					1	3	2		2		1	8	19	8	2	1		10							
	성폭법위반	55	2	1	6					2	1	1		1		2	9	10	8	2	2		8							
	아청법위반	25			1					1		2					3	6	4		1		7							
기타	4																1	2				1								
2018년	소계	171	1	7	5	0	3	0	0	2	7	11	3	2	1	1	14	48	25	1	5	0	34	0	0	0	0	1	0	0
	군형법위반	68	1	7		2				7		2	1		1	3	25		1	1			16						1	
	형법위반	57			2		1			2		7		1		6	12	13		2			11							
	성폭법위반	30			2						2	1		1		4	8	9					3							
	아청법위반	13			1							1				1	2	2		2			4							
기타	3										1					1	1													
2019년	소계	163	2	5	5	0	3	1	2	5	16	6	2	6	0	2	14	26	18	2	10	0	35	0	1	0	0	1	0	1
	군형법위반	49	1	2	1		1		1		11	1	1	4		1	2	11		1			11							
	형법위반	58		2	2		2	1		2	3	2	1	1		6	6	9		6			14						1	
	성폭법위반	34		1	1				1	3	1	3				5	3	6		2			6							1
	아청법위반	19	1		1						1			1		1	5	2	1	2			4							
기타	3															1	1	1												
2020년	소계	232	2	8	10	0	1	1	0	8	17	15	0	5	6	6	7	23	44	6	0	3	66	0	2	1	1	0	0	0
	군형법위반	79	1	7						3	12			2	1	1	14			6			30					1		1
	형법위반	45	1		2		1			1	2	5		1	1	1	4	4	9				10							
	성폭법위반	61		1	7		1			4	1	6		1	3	3	2	2	18				11					1		
	아청법위반	45			1					2	3			1	1	1	3	17					15				1			
기타	2										1		1																	
2021년	소계	425	12	17	10	0	7	0	5	26	29	15	4	10	0	6	37	85	48	12	6	2	89	0	3	2	0	0	0	0
	군형법위반	157	6	13		4		5	14	23	1	3	4		3	4	23		9				41				3	1		
	형법위반	80	2	2	4		3		3	1	5		3			6	18	14	1	4			14							
	성폭법위반	87		1	4				5	1	8		1		2	14	10	22	2			1	15					1		
	아청법위반	96	4		2				4	4	1	1	2		1	13	33	10		2		1	18							
기타	5		1													1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6.4%, 아청법위반 16.1%, 병 68.3%, 준·부사관 19.7%, 장교 10.9%, 군무원 1.1%, 집행유예 32%, 재산형 20.5%, 자유형 13.1%, 무죄 5.7%
- 2021년 형법위반 24.4%, 군형법위반 36.4%, 성폭법위반 21.7%
- 2021년 병 65.6%, 준·부사관 21.2%, 장교 12%, 군무원 1.2%
- 2021년 집행유예 31.5%, 재산형 및 자유형 각 17.6%, 무죄 5.4%
- 2021년 전년 대비 자유형·집행유예·무죄 증가, 재산형 감소

1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7 (100)	0 (0)	5 (71.4)	1 (14.3)	0 (0)	0 (0)	1 (14.3)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 (100)	0 (0)	16 (69.6)	2 (8.7)	2 (8.7)	0 (0)	3 (13)
2017년	명 (비율)	5 (100)	0 (0)	5 (100)	0 (0)	0 (0)	0 (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1 (25)	0 (0)	1 (25)
2019년	명 (비율)	5 (100)	0 (0)	3 (60)	1 (20)	1 (20)	0 (0)	0 (0)
2020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0 (0)	0 (0)	0 (0)	1 (50)
2021년	명 (비율)	7 (100)	0 (0)	5 (71.4)	1 (14.3)	0 (0)	0 (0)	1 (14.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69.6%, 선고유예 및 재산형 각 8.7%
- 2021년 민간인 처리 7명(집행유예 5명, 선고유예 1명, 이송 1명)

15.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명 (비율)	1,051 (100)	364 (34.6)	444 (42.3)	243 (23.1)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785 (100)	1,108 (29.2)	1,921 (50.8)	756 (20)
2017년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7)	111 (14.1)
2018년	명 (비율)	624 (100)	163 (26.1)	363 (58.2)	98 (15.7)
2019년	명 (비율)	628 (100)	194 (30.9)	305 (48.6)	129 (20.5)
2020년	명 (비율)	697 (100)	182 (26.1)	340 (48.8)	175 (25.1)
2021년	명 (비율)	1,051 (100)	364 (34.6)	444 (42.3)	243 (23.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항소 29.2%, 확정 50.8%, 이송 등 20%
- 2021년 항소 34.6%, 확정 42.3%, 이송 등 23.1%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 비율 대폭 증가, 확정 및 이송 비율 소폭 감소

16.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64 (100)	126 (34.6)	129 (35.4)	109 (30)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108 (100)	471 (42.5)	321 (29)	316 (28.5)
2017년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6)	52 (25.4)
2018년	명 (비율)	163 (100)	78 (47.9)	37 (22.7)	48 (29.4)
2019년	명 (비율)	194 (100)	79 (40.7)	59 (30.4)	56 (28.9)
2020년	명 (비율)	182 (100)	69 (37.9)	62 (34.1)	51 (28)
2021년	명 (비율)	364 (100)	126 (34.6)	129 (35.4)	109 (30)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1%, 군검사의 항소율 57.5%
- 2021년 피고인의 항소율 64.6%, 군검사의 항소율 65.4%
- 2021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소폭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소폭 증가

17. 2021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1,193 (100)	1,118 (93.7)	65 (5.5)	10 (0.8)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300 (100)	5,661 (89.8)	470 (7.5)	169 (2.7)
2017년	명 (비율)	1,292 (100)	1,169 (90.5)	83 (6.4)	40 (3.1)
2018년	명 (비율)	1,223 (100)	1,119 (91.5)	63 (5.1)	41 (3.4)
2019년	명 (비율)	1,116 (100)	989 (88.6)	89 (8)	38 (3.4)
2020년	명 (비율)	1,476 (100)	1,266 (85.8)	170 (11.5)	40 (2.7)
2021년	명 (비율)	1,193 (100)	1,118 (93.7)	65 (5.5)	10 (0.8)

○ 분석

- 최근 5년 약식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89.8%, 공판절차 회부 7.5%
- 2021년 약식명령 확정 93.7%, 공판절차 회부 5.5%

18. 2021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17	146	71	67.3
체포영장	29	29	0	100
압수·수색영장	477	290	187	60.8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962	687	238	71.4
	체포영장	142	124	18	87.3
	압수·수색영장	1,788	1,496	292	83.7
2017년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2018년	구속영장	164	114	38	69.5
	체포영장	27	24	3	88.9
	압수·수색영장	283	267	16	94.3
2019년	구속영장	176	115	45	65.3
	체포영장	26	21	5	80.8
	압수·수색영장	369	340	29	92.1
2020년	구속영장	133	99	34	74.4
	체포영장	17	13	4	76.5
	압수·수색영장	368	335	33	91
2021년	구속영장	217	146	71	67.3
	체포영장	29	29	0	100
	압수·수색영장	477	290	187	60.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1.4%, 체포영장 87.3%, 압수·수색영장 83.7%
- 2021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7.3%,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60.8%
- 2021년 전년 대비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감소, 체포영장 발부율 증가

19. 2021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217	48	120	49	146	71	
장 교	21	5	15	1	12	9	
준·부사관	65	8	40	17	49	16	
병	128	34	63	31	85	43	
군무원	3	1	2			3	
민간인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962	628	167	167	687	238	
	장 교	89	56	24	9	62	25	
	준·부사관	212	127	51	34	137	70	
	병	651	441	89	121	484	138	
	군무원	9	4	3	2	3	5	
	민간인	1	0	0	1	1	0	
2017년	소계	272	213	25	34	213	50	
	장 교	28	22	3	3	21	7	
	준·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민간인							
2018년	소계	164	131	9	24	114	38	
	장 교	14	11	2	1	8	5	
	준·부사관	30	24	2	4	13	16	
	병	119	95	5	19	92	17	
	군무원	1	1			1		
	민간인							
2019년	소계	176	141	5	30	115	45	
	장 교	16	12	2	2	12	3	
	준·부사관	33	29	1	3	19	13	
	병	125	100	2	23	83	29	
	군무원	1			1			
	민간인	1			1	1		
2020년	소계	133	95	8	30	99	34	
	장 교	10	6	2	2	9	1	
	준·부사관	35	27	1	7	25	10	
	병	86	62	4	20	64	22	
	군무원	2		1	1	1	1	
	민간인	0	0	0	0	0	0	
2021년	소계	217	48	120	49	146	71	
	장 교	21	5	15	1	12	9	
	준·부사관	65	8	40	17	49	16	
	병	128	34	63	31	85	43	
	군무원	3	1	2			3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장교 9.3%, 준·부사관 22%, 병 67.7%, 군무원 0.9%
발부율 장교 69.7%, 준·부사관 64.6%, 병 74.3%, 군무원 33.3%, 민간인 100%
- 2021년 구속영장 발부율 67.3%, 전년 대비 발부율 감소

20. 2021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4	4	10	28.6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14	13	1	92.9
기 타	21	2	19	9.5

* 기타: 구속집행정지,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증거보전 및 상소권 회복 청구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56	23	33	41.1
	구속적부심	70	7	63	10
	형사보상청구	30	27	3	90
	기 타	111	20	80	18
2017년	보석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3	2	21	8.7
	형사보상청구	3	2	1	66.7
	기 타	20	6	14	30
2018년	보석청구	5	1	4	20
	구속적부심	11	1	10	9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22	4	18	18.2
2019년	보석청구	11	5	6	45.5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4	4		100
	기 타	34	4	19	11.8
2020년	보석청구	6	2	4	33.3
	구속적부심	8	0	8	0
	형사보상청구	7	7	0	100
	기 타	14	4	10	28.6
2021년	보석청구	14	4	10	28.6
	구속적부심	14	2	12	14.3
	형사보상청구	14	13	1	92.9
	기 타	21	2	19	9.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1.1%, 구속적부심 인용률 10%
- 2021년 보석청구 허가율 28.6%,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21. 2021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603	141	462	965	35	0
원판결확인	1,603	141	462	965	35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7,893	757	2,360	4,620	149	7
	원판결확인	7,893	757	2,360	4,620	149	7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7년	소계	1,674	174	561	902	35	2
	원판결확인	1,674	174	561	902	35	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소계	1,552	167	486	852	44	3
	원판결확인	1,552	167	486	852	44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소계	1,523	160	448	910	4	1
	원판결확인	1,523	160	448	910	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소계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확인	1,541	115	403	991	31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1년	소계	1,603	141	462	965	35	0
	원판결확인	1,603	141	462	965	35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21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1	17	26	16	2	0
단 면 영 양 죄	간첩이적죄	0					
	군무이탈죄	0					
	상관에관한죄	6	1	2	3		
	군용물에관한죄	1	1				
	초병에관한죄	0					
	성범죄(군인등)	8	4	4			
	기타	3		3			
주 요 면 영 양 죄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0					
	문서인장죄	0					
	살인죄	0					
	과실치사상죄	3	2	1			
	절도강도죄	1		1			
	사기공갈죄	1			1		
	횡령배임죄	2	1	1			
	성폭속에관한죄	0					
기타	9	2	5	1	1		
교 통 면 영 양 죄	교통법위반	1			1		
	도교법위반	0					
	도교법위반(음주)	0					
	특가법위반(도주)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0					
성 범 죄	형법위반	10	3	3	4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4		2	2		
	성매매특별법위반	0					
	기타	0					
폭 력 면 영 양 죄	상해, 폭행죄	0					
	상해 등치사	0					
	폭처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기타 법률위반	9	3	2	3	1		

23. 2021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제5군단 2021조1	일병	절도	벌금 200,000원
육군본부 2021조1	사관생도	재물손괴	선고유예(벌금 50,000원)
수도군단 2021조1	7급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특전사 2021조1	중위	경범죄처벌법위반	청구기각
제5군단 2021조2	중사	절도	벌금 200,000원
특전사 2021조2	중위	일반교통방해	벌금 200,000원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1. 2021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616 (100)	248 (40.3)	368 (59.7)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30 (100)	893 (36.7)	1,537 (63.3)
2017년	명 (비율)	494 (100)	184 (37)	310 (63)
2018년	명 (비율)	393 (100)	115 (29.3)	278 (70.7)
2019년	명 (비율)	457 (100)	147 (32.2)	310 (67.8)
2020년	명 (비율)	470 (100)	199 (42.3)	271 (57.7)
2021년	명 (비율)	616 (100)	248 (40.3)	368 (59.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6.7%, 약식 사건 63.3%
- 2021년 전년 대비 사건 수 31.1% 증가

2.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248	368	27	16	71	136	142	209	3	7	5	0
민도범죄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4		1		2		1				
	상관에관한죄	10		2		2		6				
	군용물에관한죄	3				3						
	초병에관한죄	14						9			5	
	성범죄(군인등)	66		5		25		36				
	기타	24	45	1	1	2	8	20	36	1		
주요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4	8			1	2	3	6			
	사기공갈죄	10	5	2		2		6	5			
	횡령배임죄	3	2	1	1	2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3	49	6	1	3	6	4	41		1	
특별범죄	교특법위반	2	18			1		14	2	3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	5	79	2	6	3	62		9		2	
	특가법위반(도주)	3	6	1	1	1	4	1	1			
	특가법위반(치사상)	1	2			1	2					
	형법위반	12	7	1		2	1	8	5	1	1	
중범죄	성폭법위반	11	18		1	6	3	5	13		1	
	아정법위반	19	8			4	2	15	6			
	성매매특별법위반	1	2	1	1			1				
	기타	2						2				
특별범죄	상해, 폭행죄	15	60	1		6	17	8	42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10	13	2				8	13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기타 법률위반	15	46	1	3	5	13	8	29	1	1		

○ 분석

- 2021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3.7%, 교통범죄 18.8%,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6.2%, 폭력범죄 15.9%, 주요형법범 15.4%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90.5%

3. 2021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616 (100)	43 (7)	207 (33.6)	351 (57)	10 (1.6)	5 (0.8)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30 (100)	218 (9)	980 (40.3)	1,165 (47.9)	55 (2.3)	12 (0.5)
2017년 명 (비율)	494 (100)	49 (9.9)	259 (52.5)	173 (35.1)	12 (2.4)	1 (0.1)
2018년 명 (비율)	393 (100)	38 (9.7)	173 (44)	170 (43.3)	11 (2.8)	1 (0.2)
2019년 명 (비율)	457 (100)	51 (11)	159 (34.9)	235 (51.5)	11 (2.4)	1 (0.2)
2020년 명 (비율)	470 (100)	37 (7.9)	182 (38.7)	236 (50.2)	11 (2.3)	4 (0.9)
2021년 명 (비율)	616 (100)	43 (7)	207 (33.6)	351 (57)	10 (1.6)	5 (0.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47.9%, 준·부사관 40.3%, 장교 9%, 군무원 2.3%
- 2021년 접수 중 병 57%, 준·부사관 33.6%, 장교 7%, 군무원 1.6%

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계	248 (100)	27 (10.9)	71 (28.6)	142 (57.3)	3 (1.2)	5 (2)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93 (100)	97 (10.9)	294 (33)	478 (53.5)	12 (1.3)	12 (1.3)
2017년 명 (비율)	184 (100)	14 (7.6)	83 (45.1)	82 (44.6)	4 (2.2)	1 (0.5)
2018년 명 (비율)	115 (100)	13 (11.3)	38 (33)	61 (53.1)	2 (1.7)	1 (0.9)
2019년 명 (비율)	147 (100)	18 (12.2)	47 (32)	78 (53.1)	3 (2)	1 (0.7)
2020년 명 (비율)	199 (100)	25 (12.6)	55 (27.6)	115 (57.8)	0 (0)	4 (2)
2021년 명 (비율)	248 (100)	27 (10.9)	71 (28.6)	142 (57.3)	3 (1.2)	5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3.5%, 준·부사관 33%, 장교 10.9%, 군무원 및 민간인 각 1.3%
- 2021년 접수 중 병 57.3%, 준·부사관 28.6%, 장교 10.9%, 민간인 2%, 군무원 1.2%
- 2021년 전년 대비 신분별 비율 유사

5.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77 (100)	186 (39)	21 (4.4)	40 (8.4)	120 (25.2)	2 (0.4)	3 (0.6)	291 (61)	12 (2.5)	117 (24.5)	156 (32.7)	6 (1.3)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08 (100)	751 (34)	81 (3.7)	246 (11.1)	404 (18.3)	13 (0.6)	7 (0.3)	1,457 (66)	121 (5.5)	644 (29.2)	649 (29.4)	43 (1.9)	0 (0)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14 (2.8)	73 (14.3)	72 (14.1)	4 (0.8)	1 (0.2)	345 (67.8)	40 (7.8)	183 (36)	113 (22.2)	9 (1.8)	0 (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15 (3.9)	41 (10.6)	62 (16.1)	2 (0.5)	1 (0.2)	265 (68.7)	27 (7)	126 (32.7)	103 (26.7)	9 (2.3)	0 (0)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15 (3.4)	49 (11.1)	67 (15.1)	5 (1.1)	1 (0.2)	307 (69.1)	32 (7.2)	107 (24.1)	160 (36)	8 (1.8)	0 (0)
2020년	명 (비율) 392 (100)	143 (36.5)	16 (4.1)	43 (11)	83 (21.2)	0 (0)	1 (0.2)	249 (63.5)	10 (2.6)	111 (28.3)	117 (29.8)	11 (2.8)	0 (0)
2021년	명 (비율) 477 (100)	186 (39)	21 (4.4)	40 (8.4)	120 (25.2)	2 (0.4)	3 (0.6)	291 (61)	12 (2.5)	117 (24.5)	156 (32.7)	6 (1.3)	0 (0)

○ 분석

- 2021년 처리 사건 중 병 57.9%, 준·부사관 32.9%, 장교 6.9%, 군무원 1.7%, 민간인 0.6%

6. 2021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477 (100)	186 (39)	0 (0)	19 (4)	55 (11.5)	52 (10.9)	9 (1.9)	9 (1.9)	1 (0.2)	41 (8.6)	0 (0)	291 (61)	284 (59.5)	7 (1.5)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08 (100)	751 (34)	0 (0)	68 (3.1)	237 (10.7)	255 (11.5)	58 (2.6)	43 (2)	15 (0.7)	75 (3.4)	0 (0)	1,457 (66)	1,372 (62.1)	85 (3.9)
2017년	명 (비율) 509 (100)	164 (32.2)	0 (0)	8 (1.6)	44 (8.4)	68 (13.4)	20 (3.9)	7 (1.4)	5 (1)	12 (2.3)	0 (0)	345 (67.8)	294 (57.8)	51 (10)
2018년	명 (비율) 386 (100)	121 (31.3)	0 (0)	14 (3.6)	42 (10.9)	47 (12.2)	5 (1.3)	8 (2)	3 (0.8)	2 (0.5)	0 (0)	265 (68.7)	251 (65)	14 (3.7)
2019년	명 (비율) 444 (100)	137 (30.9)	0 (0)	10 (2.2)	50 (11.3)	41 (9.2)	18 (4.1)	7 (1.6)	4 (0.9)	7 (1.6)	0 (0)	307 (69.1)	296 (66.7)	11 (2.4)
2020년	명 (비율) 392 (100)	143 (36.5)	0 (0)	17 (4.4)	46 (11.7)	47 (12)	6 (1.5)	12 (3.1)	2 (0.5)	13 (3.3)	0 (0)	249 (63.5)	247 (63)	2 (0.5)
2021년	명 (비율) 477 (100)	186 (39)	0 (0)	19 (4)	55 (11.5)	52 (10.9)	9 (1.9)	9 (1.9)	1 (0.2)	41 (8.6)	0 (0)	291 (61)	284 (59.5)	7 (1.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4%, 약식 사건 66% 처리
- 최근 5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34%, 집행유예 31.6%, 자유형 9.1%, 무죄 5.7%
- 연도별 분석결과와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 2021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29.6%, 재산형 28%, 자유형 10.2%, 선고유예 4.8%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재산형 증가, 무죄 감소

7.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77	186	0	19	55	52	9	9	1	41	0	291	284	7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3	3		2					1		0		
	상관에관한죄	10	10		6		2			2		0		
	군용물에관한죄	3	3				1	1		1		0		
	초병에관한죄	9	9		1	8						0		
	성범죄(군인등)	37	37		4	18	1	2			12	0		
	기타	49	18			1	4		2		11	31	30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0	0									0		
	문서인장죄	0	0									0		
	살인죄	0	0									0		
	과실치사상죄	0	0									0		
	절도강도죄	7	1		1							6	6	
	사기공갈죄	9	6		1		3				2	3	3	
	횡령배임죄	3	2				2					1	1	
	성풍속에관한죄	0	0									0		
	기타	46	10			1	6			1	2	36	36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4	2				2					12	12	
	도교법위반	0	0									0		
	도교법위반(음주)	82	4				4					78	78	
	특가법위반(도주)	6	2				2					4	4	
	특가법위반(치사상)	2	0									2	2	
성범죄	형법위반	16	10		3	4	3					6	5	1
	성폭법위반	23	11		1	6	1		1		2	12	12	
	아청법위반	21	15		5	3	4	1	1		1	6	6	
	성매매특별법위반	3	1				1					2	2	
	기타	2	2			1					1	0		
폭력범죄	상해,폭행죄	56	10			1	4	1	1		3	46	45	1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20	12			4	6				2	8	7	1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0									0			
기타 법률위반	56	18		3		9	2	3		1	38	35	3	

○ 분석

- 교통범죄 21.8%, 성범죄(군형법 포함) 21.4%,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5.5%, 주요형법범 13.6%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3%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8.6%

8.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77	186	0	19	55	52	9	9	1	41	0	291	284	7
장 교	장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관	13	10	0	1	2	5	0	0	1	1	0	3	3
	위관	20	11	0	1	2	7	0	1	0	0	0	9	9
준·부사관	157	40	0	5	15	11	2	7	0	0	0	117	117	0
병	276	120	0	12	33	27	7	1	0	40	0	156	149	7
군무원	8	2	0	0	0	2	0	0	0	0	0	6	6	0
민간인	3	3	0	0	3	0	0	0	0	0	0	0	0	0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57.1%, 집행유예 19%, 자유형 9.5%, 무죄 4.8%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7.5%, 재산형 27.5%, 무죄 17.5%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7.5%, 재산형 22.5%, 자유형 10%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100%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100%

9.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86	52	26	45	19	15	6	5	5	4	9
구 속	16	5	1	2	3	4	0	0	0	0	1
불구속	170	47	25	43	16	11	6	5	5	4	8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8.6%, 불구속 사건 91.4%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50%, 121일 이상 210일 이내 43.8%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67.6%,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9.4%

10. 2021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 계		186	21	40	120	2	3
확 정	소계	82	6	16	56	1	3
	유죄	81	5	16	56	1	3
	무죄	0					
	면소	0					
	공소기각	1	1				
상 소	소계	63	14	24	24	1	0
	쌍방항소	36	9	13	14		
	피고인항소	10	4	2	4		
	군검사항소	17	1	9	6	1	
이송		41	1		40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44%, 상소율 33.9%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8.8%
- 신분별 상소율 장교 70%, 준·부사관 60%, 병 30%

11.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9 (100)	0 (0.0)	0 (0.0)	4 (21.1)	5 (26.3)	5 (26.3)	5 (26.3)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5 (100)	0 (0)	3 (5.5)	7 (12.7)	10 (18.1)	24 (43.6)	11 (20.1)
2017년	명 (비율)	8 (100)	0 (0)	1 (11.1)	0 (0)	2 (33.3)	3 (33.3)	2 (22.3)
2018년	명 (비율)	14 (100)	0 (0)	1 (7.1)	2 (14.3)	2 (14.3)	6 (42.9)	3 (21.4)
2019년	명 (비율)	10 (100)	0 (0)	1 (10)	1 (10)	0 (0)	7 (70)	1 (10)
2020년	명 (비율)	4 (100)	0 (0)	0 (0)	0 (0)	1 (25)	3 (75)	0 (0)
2021년	명 (비율)	19 (100)	0 (0.0)	0 (0.0)	4 (21.1)	5 (26.3)	5 (26.3)	5 (26.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36.4%, 1년 이상 3년 미만 43.6%, 1년 미만 20%
- 2021년 징역 5년 이상 21%

12.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145 (100)	59 (40.7)	10 (6.9)	49 (33.8)	86 (59.3)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50 (100)	378 (58.2)	78 (12)	300 (46.2)	272 (41.8)
2017년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2018년	명 (비율)	85 (100)	58 (68.2)	6 (7)	52 (61.2)	27 (31.8)
2019년	명 (비율)	130 (100)	82 (63.1)	23 (17.7)	59 (45.4)	48 (36.9)
2020년	명 (비율)	130 (100)	74 (56.9)	13 (10)	61 (46.9)	56 (43.1)
2021년	명 (비율)	145 (100)	59 (40.7)	10 (6.9)	49 (33.8)	86 (59.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1.8%, 민간변호사 선정률 12%
- 2021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9.3%, 군법무관 선정률 33.8%
- 2021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율 증가

13.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계	76	0	1	2	0	0	0	5	12	3	0	2	0	0	8	19	4	3	0	0	16	0	0	1	0	0	0	0
군형법위반	37		1	1				3	9					1	8		2			12								
형법위반	10			1				1	1					2	3	1							1					
성폭법위반	11							2	1		1			1	4					2								
아청법위반	15							1		2	1			4	3	2	1			1								
기타	3													1	1					1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241	6	10	6	0	5	0	13	26	21	5	8	1	0	24	56	23	5	3	0	25	0	0	3	0	1	0	0
	군형법위반	102	3	9	3	0	1	0	5	20	14	4	1	0	0	6	26	0	4	1	0	17	0	0	0	0	1	0	0
	형법위반	53	0	0	2	0	1	0	2	2	7	0	4	0	0	7	12	10	0	2	0	2	0	0	2	0	0	0	0
	성폭법위반	56	2	1	1	0	3	0	5	4	9	0	2	1	0	5	12	6	0	0	0	4	0	0	1	0	0	0	0
	아청법위반	26	1	0	0	0	0	0	1	0	4	1	1	0	0	6	5	1	0	0	1	0	0	0	0	0	0	0	0
	기타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0	0	1	0	0	0	0	0	0	0
2017년	소계	38	1	1	2	0	1	0	3	4	3	1	2	0	3	10	2	1	1	0	1	0	0	2	0	0	0	0	
	군형법위반	15		1	1				3	1					1	6					1								
	형법위반	10							1	1		2			1	2	1		1						1				
	성폭법위반	11	1		1		1		3		1				2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0																											
2018년	소계	30	3	1	0	0	0	0	2	7	0	2	0	0	1	9	5	0	0	0	0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1	3	1					2						5														
	형법위반	11								3		1			1	2	4												
	성폭법위반	5								3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0																											
2019년	소계	43	1	2	2	0	2	0	2	4	4	4	0	1	0	3	12	2	1	0	0	2	0	0	0	0	1	0	0
	군형법위반	19	2	1		1			3		3					1	5		1			1					1		
	형법위반	8			1				1	2					1	2													
	성폭법위반	15	1				1		1	1	2			1	1	5	2												
	아청법위반	1									1																		
	기타	0																											
2020년	소계	54	1	5	0	0	2	0	3	4	4	0	2	0	0	9	6	10	0	2	0	6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20		4					2	3	1		1			3	2			1		3							
	형법위반	14				1				1			1			2	3	4		1		1							
	성폭법위반	14		1			1		1	1	2					3	1	2				2							
	아청법위반	5	1													1	3												
	기타	1														1													
2021년	소계	76	0	1	2	0	0	0	5	12	3	0	2	0	0	8	19	4	3	0	0	16	0	0	1	0	0	0	0
	군형법위반	37		1	1				3	9						1	8		2			12							
	형법위반	10			1				1	1					2	3	1								1				
	성폭법위반	11							2	1		1			1	4						2							
	아청법위반	15							1		2	1			4	3	2	1				1							
	기타	3													1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42.3%, 성폭법위반 23.2%, 형법위반 22%, 병 56.4%, 준·부사관 30.7%, 장교 11.2%, 군무원 1.7%, 집행유예 38.2%, 재산형 22%, 자유형 17.8%, 무죄 7.1%
- 2021년 군형법위반 48.7%, 아청법위반 19.7% 차지, 전년 대비 군형법위반 대폭 증가
- 2021년 병 65.8%, 준·부사관 28.9%, 장교 3.9%
- 2021년 집행유예 42.1%, 자유형 17.1%, 재산형 13.2%

1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3 (100)		3 (10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7 (100)		5 (71.4)	2 (28.6)			
2017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8년	명 (비율)	1 (100)			1 (100)			
2019년	명 (비율)	1 (100)			1 (100)			
2020년	명 (비율)	1 (100)		1 (100)				
2021년	명 (비율)	3 (100)		3 (100)				

○ 분석

- 최근 5년 민간인 처리 7건
 - 2017년 초병특수협박 등으로 집행유예(예비역) 1건
 - 2018년 군용물손괴로 선고유예(예비역) 1건
 - 2019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선고유예(예비역) 1건
 - 2020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예비역) 1건
 - 2021년 초병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예비역) 3건

15.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명 (비율)	186 (100)	63 (33.9)	82 (44.1)	41 (22)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751 (100)	263 (35)	413 (55)	75 (10)
2017년	명 (비율)	164 (100)	65 (39.6)	87 (53.1)	12 (7.3)
2018년	명 (비율)	121 (100)	31 (25.6)	88 (72.7)	2 (1.7)
2019년	명 (비율)	137 (100)	44 (32.1)	86 (62.8)	7 (5.1)
2020년	명 (비율)	143 (100)	60 (42)	70 (49)	13 (9)
2021년	명 (비율)	186 (100)	63 (33.9)	82 (44.1)	41 (2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5%, 확정 55%, 이송 등 10%
- 2021년 항소 33.9%, 확정 44.1%, 이송 등 22%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율 소폭 감소

16.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63 (100)	10 (15.9)	17 (27)	36 (57.1)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63 (100)	83 (31.6)	66 (25.1)	114 (43.3)
2017년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2018년	명 (비율)	31 (100)	14 (45.2)	6 (19.3)	11 (35.5)
2019년	명 (비율)	44 (100)	8 (18.2)	10 (22.7)	26 (59.1)
2020년	명 (비율)	60 (100)	18 (30)	20 (33.3)	22 (36.7)
2021년	명 (비율)	63 (100)	10 (15.9)	17 (27)	36 (57.1)

* 항소율은 쌍방 항소 포함됨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4.9%, 군검사의 항소율 68.4%
- 2021년 피고인의 항소율 73%, 군검사의 항소율 84.1%
- 2021년 전년 대비 피고인 및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17. 2021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291 (100)	268 (92.1)	16 (5.5)	7 (2.4)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481 (100)	1,376 (92.9)	78 (5.3)	27 (1.8)
2017년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2018년	명 (비율)	265 (100)	251 (94.7)	8 (3)	6 (2.3)
2019년	명 (비율)	307 (100)	304 (99)	2 (0.7)	1 (0.3)
2020년	명 (비율)	273 (100)	259 (94.9)	12 (4.4)	2 (0.7)
2021년	명 (비율)	291 (100)	268 (92.1)	16 (5.5)	7 (2.4)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92.9%, 공판절차 회부 5.3%
- 2021년 약식명령 92.1%, 공판절차 회부 5.5%
- 2021년 전년대비 약식명령 확정 소폭 감소, 공판절차 회부 소폭 증가

18. 2021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40	18	22	45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83	44	39	53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170	120	50	70.6
	체포영장	32	31	1	96.9
	압수·수색영장	498	429	69	86.1
2017년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2018년	구속영장	34	24	10	70.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2	98	4	96.1
2019년	구속영장	30	23	7	76
	체포영장	12	11	1	91
	압수·수색영장	115	110	5	95
2020년	구속영장	30	24	6	80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101	92	9	91.1
2021년	구속영장	40	18	22	45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83	44	39	5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발부율 구속영장 70.6%, 체포영장 96.9%, 압수·수색영장 86.1%
- 2021년 전년 대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감소

19. 2021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합계	40	18	22
장 교	6	2	4
준·부사관	18	11	7
병	16	5	11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5년 평균율	합 계	170	120	50
	장 교	26	19	7
	준·부사관	61	45	16
	병	83	56	27
	군무원	0	0	0
2017년	민간인	0	0	0
	소계	36	31	5
	장 교	7	5	2
	준·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2018년	군무원			
	민간인			
	소계	34	24	10
	장 교	4	4	
	준·부사관	12	9	3
2019년	병	18	11	7
	군무원			
	민간인			
	소계	30	23	7
	장 교	4	4	
2020년	준·부사관	11	9	2
	병	15	10	5
	군무원			
	민간인			
	소계	30	24	6
2021년	장 교	5	4	1
	준·부사관	9	6	3
	병	16	14	2
	군무원			
	민간인			
2021년	소계	40	18	22
	장 교	6	2	4
	준·부사관	18	11	7
	병	16	5	11
	군무원	0		
민간인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중 병 48.8%, 준·부사관 35.9%, 장교 15.3%, 발부율 준·부사관 73.8%, 장교 73.1%, 병 67.5%
- 2021년 전년대비 구속영장 청구건수 증가, 영장 발부율 감소

20. 2021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7	3	4	42.9
	구속적부심	12	1	11	8.3
	형사보상청구	6	3	3	50
	기 타	9	5	4	55.6
2017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3	1	2	33
	기 타	4	1	3	25
2019년	보석청구	3	2	1	67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2		100
2020년	보석청구				
	구속적부심	2	1	1	50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21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2.9%, 구속적부심 인용률 8.3%

21. 2021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355	26	133	188	8	
원판결확인	355	26	133	188	8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총계	1,721	153	760	758	50	
	원판결확인	1,721	153	760	758	5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총계	406	45	230	119	12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8년	총계	305	29	143	124	9	
	원판결확인	305	29	143	124	9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9년	총계	346	38	126	172	10	
	원판결확인	346	38	126	172	1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총계	309	15	128	155	11	
	원판결확인	309	15	128	155	1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1년	총계	355	26	133	188	8	
	원판결확인	355	26	133	188	8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21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9	1	7	1	0	0
군형법	간첩이적죄	0				
	군무이탈죄	0				
	상관에관한죄	0				
	군용물에관한죄	1		1		
	초병에관한죄	0				
	성범죄(군인등)	0				
	기타	2	1	1		
주요형법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0				
	문서인장죄	0				
	살인죄	0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죄	0				
	사기공갈죄	0				
	횡령배임죄	0				
	성폭속에관한죄	0				
기타	0					
교통법위반	교통법위반	0				
	도교법위반	0				
	도교법위반(음주)	0				
	특가법위반(도주)	0				
	특가법위반(치사상)	0				
성범죄	형법위반	0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0				
기타	0					
폭력범죄	상해, 폭행죄	1		1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0				
국가보안법위반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기타 법률위반	3		2	1		

23. 2021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해병제2사단 2021조1	일병	절도	선고유예(벌금 100,000원)
제2함대 2021조1	하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1. 2021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명 (비율)	248 (100)	149 (60)	99 (40)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사건	약식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31 (100)	515 (50)
2017년	명 (비율)	193 (100)	74 (38)
2018년	명 (비율)	186 (100)	97 (52)
2019년	명 (비율)	188 (100)	85 (45)
2020년	명 (비율)	216 (100)	110 (51)
2021년	명 (비율)	248 (100)	149 (6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50%, 약식사건 50%
- 2021년 전년 대비 전체 형사사건 14.8% 증가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35.5% 증가, 약식사건 6.6% 감소

2.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49	99	31	18	44	33	69	42	5	6	0	0
면역대상인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8		2		3		3				
	상관에관한죄	8		2		2		4				
	군용물예관한죄	1		1								
	초병예관한죄											
	성범죄(군인등)	44		10		14		18		2		
기타	3	3		1	1	1	2	1				
주	내란소요죄											
	뇌물예관한죄	1							1			
	문서인장죄	1				1						
	살인죄											
	과실치사상죄	1		1								
	철도강도죄		1					1				
	사기공갈죄	7	9	1		2		4	9			
	횡령배임죄	1				1						
성폭속에관한죄												
기타	13	22	5	5	4	7	3	7	1	3		
초과법위반	교특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		3			3						
	도교법위반(음주)	4	27		10	3	12	1	2		3	
	특가법위반(도주)											
특가법위반(치사상)												
초범법위반	형법위반	5	3	2		1	1	2	2			
	성폭법위반	12	6	3		7	2	2	4			
	아정법위반	12	1					12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1	1	1							
기타												
초범법위반	상해, 폭행죄	12	11	1		3	3	7	8	1		
	상해등치사죄											
	폭처법위반	4		1		1		2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기타 법률위반	10	10			1	3	9	7				

○ 분석

- 2021년 접수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34.3%, 주요형법범 22.6%, 교통범죄 14.5%, 폭력범죄 10.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9.3%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88.9%
- 전체 주요사건 중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 0.4%

3. 2021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248 (100)	49 (19.8)	77 (31)	111 (44.8)	11 (4.4)	0 (0)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31 (100)	179 (17.4)	426 (41.3)	363 (35.2)	55 (5.3)	8 (0.8)
2017년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2018년	명 (비율)	186 (100)	29 (16)	86 (46)	59 (32)	10 (5)	2 (1)
2019년	명 (비율)	188 (100)	39 (21)	82 (44)	57 (30)	8 (4)	2 (1)
2020년	명 (비율)	216 (100)	34 (16)	85 (39)	78 (36)	17 (8)	2 (1)
2021년	명 (비율)	248 (100)	49 (19.8)	77 (31)	111 (44.8)	11 (4.4)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1.3%, 병 35.2%, 장교 17.4%, 군무원 5.3%
- 연도별 분석결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건 증가 추세
- 2021년 접수 중 병 44.8%, 준·부사관 31%, 장교 19.8%, 군무원 4.4%
- 2021년 전년 대비 장교 및 병 사건 증가, 준·부사관 및 군무원 사건 감소

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49 (100)	31 (20.8)	44 (29.5)	69 (46.3)	5 (3.4)	0 (0)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15 (100)	88 (16)	191 (39)	200 (37)	28 (6)	8 (2)
2017년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2018년	명 (비율)	97 (100)	16 (17)	39 (40)	35 (36)	5 (5)	2 (2)
2019년	명 (비율)	85 (100)	17 (20)	36 (42)	27 (32)	3 (4)	2 (2)
2020년	명 (비율)	110 (100)	17 (15)	37 (44)	44 (40)	10 (9)	2 (2)
2021년	명 (비율)	149 (100)	31 (20.8)	44 (29.5)	69 (46.3)	5 (3.4)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38.8%, 준·부사관 37.1%, 장교 17.1%, 군무원 5.4%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35.5% 증가
- 2021년 접수 중 병 46.3%, 준·부사관 29.5%, 장교 20.8%, 군무원 3.4%
- 2021년 전년 대비 장교 및 병 사건 증가, 군무원 사건 감소

5.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비율)	202 (100)	118 (58.4)	22 (10.9)	38 (18.8)	51 (25.2)	7 (3.5)	0 (0)	84 (41.6)	12 (6)	34 (16.8)	34 (16.8)	4 (2)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4 (100)	477 (48)	75 (7.6)	185 (18.6)	183 (18.4)	28 (2.8)	6 (0.6)	517 (52)	87 (8.8)	247 (24.8)	156 (15.7)	27 (2.7)	0 (6)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7 (4)	31 (17)	23 (12)	4 (2)	0 (0)	122 (65)	19 (10)	68 (36)	30 (17)	5 (2)	0 (0)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2)	18 (8)	46 (22)	39 (19)	5 (2)	2 (1)	104 (49)	18 (8)	52 (24)	28 (13)	6 (3)	0 (0)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14 (8)	30 (16)	32 (18)	3 (2)	2 (1)	101 (55)	21 (12)	46 (25)	30 (16)	4 (2)	0 (0)
2020년	명 (비율)	209 (100)	103 (49)	14 (7)	40 (19)	38 (18)	9 (4)	2 (1)	106 (51)	17 (8)	47 (23)	34 (16)	8 (4)	0 (0)
2021년	명 (비율)	202 (100)	118 (58.4)	22 (10.9)	38 (18.8)	51 (25.2)	7 (3.5)	0 (0)	84 (41.6)	12 (6)	34 (16.8)	34 (16.8)	4 (2)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3.4%, 병 34.1%, 장교 16.4%, 군무원 5.5%
- 2021년 처리 중 병 42%, 준·부사관 35.6%, 장교 16.9%, 군무원 5.5%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14.6% 증가, 약식사건 20.7% 감소

6. 2021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비율)	202 (100)	118 (58.4)	0 (0)	15 (7.4)	47 (23.3)	23 (11.4)	10 (4.9)	1 (0.5)	2 (1)	19 (9.4)	1 (0.5)	84 (41.6)	84 (41.6)	0 (0)

*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및 이송 '기타', 정식재판청구 '벌금'에 기재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994 (100)	477 (48)	0 (0)	28 (2.8)	158 (15.9)	150 (15.1)	49 (4.9)	21 (2.1)	3 (0.3)	55 (5.6)	13 (1.3)	517 (52)	480 (48.3)	37 (3.7)
2017년	명 (비율)	187 (100)	65 (35)	0 (0)	2 (1)	16 (9)	22 (12)	7 (4)	6 (3)	0 (0)	10 (5)	2 (1)	122 (65)	112 (60)	10 (5)
2018년	명 (비율)	214 (100)	110 (51)	0 (0)	4 (2)	41 (19)	37 (17)	11 (5)	5 (2)	0 (0)	6 (3)	6 (3)	104 (49)	99 (47)	5 (2)
2019년	명 (비율)	182 (100)	81 (45)	0 (0)	2 (1)	22 (12)	28 (15)	13 (7)	5 (3)	0 (0)	10 (6)	1 (1)	101 (55)	92 (50)	9 (5)
2020년	명 (비율)	209 (100)	103 (49)	0 (0)	5 (2)	32 (15)	40 (19)	8 (3.5)	4 (2)	1 (0.5)	10 (5)	3 (2)	106 (51)	93 (45)	13 (6)
2021년	명 (비율)	202 (100)	118 (58.4)	0 (0)	15 (7.4)	47 (23.3)	23 (11.4)	10 (4.9)	1 (0.5)	2 (1)	19 (9.4)	1 (0.5)	84 (41.6)	84 (41.6)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사건 48%, 약식사건 52% 처리,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33.1%, 재산형 31.4%, 선고유예 10.3%, 자유형 5.9%, 무죄 4.4%
- 2021년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39.8%, 재산형 19.5%, 자유형 12.7%, 선고유예 8.5%, 무죄 0.8%
- 2021년 전년 대비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유형 증가, 무죄 감소

7. 2021년 형사사건 죄명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2	118	0	15	47	23	10	1	2	19	1	84	84	0
군형법 범	간접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8	8	3	4		1					0		
	상관에관한죄	7	7		3		2			2		0		
	군용물에관한죄	1	1	1								0		
	초병에관한죄	0	0									0		
	성범죄(군인등)	32	32	5	18		4			5		0		
	기타	5	2			1				1		3	3	
주요형법 범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2	2	1		1						0		
	문서인장죄	0	0									0		
	살인죄	0	0									0		
	과실치사상죄	1	1			1						0		
	절도강도죄	0	0									0		
	사기공갈죄	16	8	1	2	2	1			2		8	8	
	횡령배임죄	1	1			1						0		
	성폭속에관한죄	0	0									0		
기타	30	11		2	4	1	1	2	1		19	19		
교통법 죄	교통법위반	3	0									3	3	
	도교법위반	3	0									3	3	
	도교법위반(음주)	24	3		1	2						21	21	
	특가법위반(도주)	0	0									0		
	특가법위반(치사상)	0	0									0		
성범죄	형법위반	8	5	2	2					1		3	3	
	성폭법위반	11	7	1	1	5						4	4	
	아청법위반	12	11		9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0									1	1	
	기타	0	0									0		
폭력법 죄	상해,폭행죄	17	9		2	4				2	1	8	8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0	0									0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0			
기타 법률위반	19	9	1	2	2	1			3		10	10		

○ 분석

- 성범죄(군형법 포함) 31.7%, 주요형법범 24.8%, 교통범죄 14.9%,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0.4%, 폭력범죄 8.4%
- 군형법범 중 성범죄 60.4%
- 교통범죄 중 약식사건 90%
- 군형법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6.3%, 자유형 15.6%, 선고유예 12.5%

8. 2021년 형사사건 신분별·처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02	118	0	15	47	23	10	1	2	19	1	84	84	0
장 교	장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관	16	11	0	2	3	4	2	0	0	0	5	5	0
	위관	18	11	0	2	5	2	2	0	0	0	7	7	0
준·부사관	72	38	0	6	13	13	2	0	1	3	0	34	34	0
병	85	51	0	2	24	3	4	0	1	16	1	34	34	0
군무원	11	7	0	3	2	1	0	1	0	0	0	4	4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분석

- 장교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6.4%, 재산형 27.3%, 선고유예 및 자유형 각 18.2%
- 준·부사관 공판사건의 경우 재산형 및 집행유예 각 34.2%, 자유형 15.8%, 선고유예 5.3%
- 병 공판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7.1%, 선고유예 7.8%, 재산형 5.9%
- 군무원 공판사건의 경우 자유형 42.9%, 집행유예 28.6%, 재산형 및 무죄 각 14.3%

9.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18	48	32	11	9	11	3	1	3	0	0
구 속	18	9	3	2	2	2	0	0	0	0	0
불구속	100	39	29	9	7	9	3	1	3	0	0

○ 분석

-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15.3%, 불구속 사건 84.7%
- 구속사건 중 120일 이내 77.8%, 121일 이상 210일 이내 22.2%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7%, 121일 이상 210일 이내 19%

10. 2021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18	22	38	51	7	0	
확정	소계	44	1	18	24	1	0
	유죄	41	1	17	23		
	무죄	1				1	
	면소	0					0
	공소기각	2		1	1		
상소	소계	54	21	17	10	6	0
	쌍방향소	41	13	16	8	4	
	피고인항소	10	7	1	1	1	
	군검사항소	3	1		1	1	
이송	20		3	17			

○ 분석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37.3%, 상소율(이송 제외) 55.1%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2%
- 신분별 상소율 장교 95.5%, 군무원 85.7%, 준·부사관 48.6%, 병 29.4%

11.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5 (100)	0 (0)	0 (0)	3 (20)	1 (6.7)	4 (26.7)	7 (46.7)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8 (100)	0 (00)	0 (0)	4 (14.3)	4 (14.3)	12 (42.8)	8 (28.6)
2017년	명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2018년	명 (비율)	4 (100)	0 (0)	0 (0)	0 (0)	3 (75)	1 (25)	0 (0)
2019년	명 (비율)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2020년	명 (비율)	5 (100)	0 (0)	0 (0)	0 (0)	0 (0)	4 (80)	1 (20)
2021년	명 (비율)	15 (100)	0 (0)	0 (0)	3 (20)	1 (6.7)	4 (26.7)	7 (46.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42.8%, 3년 이상 28.6%, 1년 미만 28.6%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21년 1년 이상 3년 미만 26.7%

12.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98 (100)	44 (44.9)	6 (6.1)	38 (38.8)	54 (55.1)

* 이송 및 정식재판취하 사건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01 (100)	201 (50.1)	54 (13.5)	147 (36.6)	200 (49.9)
2017년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2018년	명 (비율)	91 (100)	44 (48)	18 (20)	26 (28)	47 (52)
2019년	명 (비율)	71 (100)	37 (52)	10 (14)	27 (38)	34 (48)
2020년	명 (비율)	85 (100)	44 (52)	4 (5)	40 (47)	41 (48)
2021년	명 (비율)	98 (100)	44 (44.9)	6 (6.1)	38 (38.8)	54 (55.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9.9%,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13.5%
- 연도별 분석결과 2021년 민간 국선변호사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계속 변동
- 2021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5.1%, 군법무관 선정률 38.8%, 민간국선변호사 선정률 6.1%
- 2021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13. 2021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55	2	5	2	3	0	0	4	7	3	0	0	0	1	1	17	0	1	0	0	0	7	1	1	0	0	0	0
군형법위반	32	1	4		3			3	6						7		1					5	1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7			2				1		3					1													
아청법위반	11								1						8							2						
기타	0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85	5	15	4	5	2	0	0	8	32	16	3	3	0	4	6	37	11	5	2	0	19	1	5	1	1	0	0	0
	군형법위반	97	4	12	0	5	0	0	0	5	21	1	3	2	0	1	0	21	0	5	0	0	11	1	4	0	1	0	0	0
	형법위반	21	1	1	0	0	1	0	0	0	1	0	0	1	0	1	3	3	3	0	1	0	3	0	1	1	0	0	0	0
	성폭법위반	41	0	2	3	0	0	0	0	3	7	10	0	0	0	0	1	4	7	0	1	0	3	0	0	0	0	0	0	0
	아청법위반	25	0	0	1	0	1	0	0	0	3	4	0	0	0	2	2	9	1	0	0	0	2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년	소계	25	1	0	0	0	1	0	0	4	3	0	1	0	0	2	5	2	3	1	0	2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3	1							4			1				3		3			1								
	형법위반	4				1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2	1												
	기타	0																												
2018년	소계	42	0	5	1	1	0	0	0	2	9	4	1	1	0	1	1	7	2	0	0	0	3	0	3	0	1	0	0	0
	군형법위반	23		5		1				1	5		1				5					2		2		1				
	형법위반	5											1				1	1	1											
	성폭법위반	10							1	4	2						1	1				1								
	아청법위반	3			1						1					1														
	기타	1									1																			
2019년	소계	27	1	2	1	1	0	0	0	1	4	6	1	0	0	0	0	1	3	1	1	0	4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1	1	2		1				1	1	1					1		1			2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12				1				1	2	3					3		1			1				1				
	아청법위반	3									1	2																		
	기타	0										2																		
2020년	소계	36	1	3	0	0	1	0	0	1	8	0	1	1	0	2	2	7	4	0	0	0	3	0	1	1	0	0	0	0
	군형법위반	18	1	1						1	5		1	1		1		5				1		1						
	형법위반	6									1						1	1	1				1				1			
	성폭법위반	8		2							1						1	1	2				1							
	아청법위반	4				1					1								1											
	기타	0																												
2021년	소계	55	2	5	2	3	0	0	0	4	7	3	0	0	0	1	1	17	0	1	0	0	7	1	1	0	0	0	0	0
	군형법위반	32	1	4		3				3	6						7		7		1		5	1	1					
	형법위반	5	1	1														1	1	1										
	성폭법위반	7			2					1		3						1												
	아청법위반	11									1						8													
	기타	0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52.4%, 성폭법위반 22.2%, 아청법위반 13.5%, 형법위반 11.4%, 신분별 병 43.2%, 준·부사관 35.7%, 장교 16.8%, 군무원 4.3%, 처분별 집행유예 48.1%, 재산형 17.3%, 자유형 10.8%, 선고유예 7.6%, 무죄 3.8%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성범죄 사건 수 계속 변동
- 2021년 군형법위반 58.2%, 아청법위반 20%, 성폭법위반 12.7%, 형법위반 9.1%
- 2021년 병 47.3%, 준·부사관 27.3%, 장교 21.8%, 군무원 3.6%
- 2021년 집행유예 54.5%, 자유형 14.5%, 재산형 9.1%

14. 2021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해당사항 없음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0 (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재산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 (100)	0 (0)	2 (33.3)	1 (16.7)	0 (0)	1 (16.7)	2 (33.3)
2017년	명 (비율)	0 (100)						
2018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19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20년	명 (비율)	2 (100)					1 (50)	1 (50)
2021년	명 (비율)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사건 처리 중 집행유예 33.3%, 선고유예 및 무죄 각 16.7%
- 최근 5년 민간인 사건 처리 총 6건
- 2021년 민간인 사건현황 없음

15.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명 (비율)	118 (100)	54 (45.8)	44 (37)	20 (16.9)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87 (100)	190 (00)	241 (00)	56 (00)
2017년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2018년	명 (비율)	110 (100)	48 (44)	56 (50)	6 (6)
2019년	명 (비율)	81 (100)	29 (36)	42 (52)	10 (12)
2020년	명 (비율)	103 (100)	32 (31)	61 (59)	10 (10)
2021년	명 (비율)	118 (100)	54 (45.8)	44 (37)	20 (16.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확정 49.5%, 항소 39%, 이송 등 11.5%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확정, 이송 사건 수 각 계속 변동
- 2021년 확정 37.3%, 항소 45.8%, 이송 등 16.9%
- 2021년 전년 대비 항소 증가

16. 2021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54 (100)	10 (18.5)	8 (14.8)	36 (66.7)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82 (100)	40 (22)	30 (16.5)	112 (61.5)
2017년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2018년	명 (비율)	48 (100)	10 (21)	8 (17)	30 (62)
2019년	명 (비율)	21 (100)	9 (43)	3 (14)	9 (43)
2020년	명 (비율)	32 (100)	6 (19)	1 (3)	25 (78)
2021년	명 (비율)	54 (100)	10 (18.5)	8 (14.8)	36 (66.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쌍방 항소 61.5%, 피고인 항소 22%, 군검사 항소 16.5%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항소 각 계속 변동
- 2021년 전년 대비 군검사 항소 증가, 쌍방 항소 감소

17. 2021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명 (비율)	84 (100)	78 (92.9)	6 (7.1)	0 (0)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61 (100)	515 (91.8)	43 (7.7)	3 (0.5)
2017년	명 (비율)	150 (100)	134 (89)	15 (10)	1 (1)
2018년	명 (비율)	122 (100)	112 (92)	8 (6)	2 (2)
2019년	명 (비율)	104 (100)	99 (95)	5 (5)	0 (0)
2020년	명 (비율)	101 (100)	92 (91)	9 (9)	0 (0)
2021년	명 (비율)	84 (100)	78 (92.9)	6 (7.1)	0 (0)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91.8%, 공판절차 회부 7.7%
- 2021년 약식명령 확정 92.9%, 공판절차 회부 7.1%
- 2021년 전년 대비 약식명령 확정 소폭 증가, 공판절차 회부 소폭 감소

18. 2021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8	21	7	75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79	41	38	51.9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을	구속영장	77	60	17	77.9
	체포영장	16	16	0	100
	압수·수색영장	298	249	49	83.6
2017년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2018년	구속영장	15	14	1	93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29	27	2	93
2019년	구속영장	13	8	5	62
	체포영장	2	2	0	100
	압수·수색영장	46	41	5	89
2020년	구속영장	10	10	0	100
	체포영장	7	7	0	100
	압수·수색영장	119	116	3	97
2021년	구속영장	28	21	7	75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79	41	38	51.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7.9%,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83.6%
- 연도별 분석결과 각종 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 계속 변동
- 2021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5%,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51.9%
- 2021년 전년 대비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감소

19. 2021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28	6	21	1	21	7	
장 교	4		4		3	1	
준·부사관	11	3	8		10	1	
병	12	3	8	1	7	5	
군무원	1		1		1		
기 타	0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 계	77	49	25	3	60	17	
	장 교	15	9	6	0	11	4	
	준·부사관	27	17	8	2	24	3	
	병	32	21	10	1	22	10	
	군무원	3	2	1	0	3	0	
	민간인	0	0	0	0	0	0	
2017년	소계	11	10	1	0	7	4	
	장 교	3	3			2	1	
	준·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0						
2018년	소계	15	13	1	1	14	1	
	장 교	3	2	1		3		
	준·부사관	5	4		1	4	1	
	병	7	7			7		
	군무원	0						
2019년	소계	13	10	2	1	8	5	
	장 교	3	2	1		1	2	
	준·부사관	7	6		1	7		
	병	3	2	1			3	
	군무원	0						
2020년	소계	10	10	0	0	10	0	
	장 교	2	2			2		
	준·부사관	0						
	병	6	6			6		
	군무원	2	2			2		
2021년	소계	28	6	21	1	21	7	
	장 교	4		4		3	1	
	준·부사관	11	3	8		10	1	
	병	12	3	8	1	7	5	
	군무원	1		1		1		
민간인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병 41.6%, 준·부사관 35.1%, 장교 19.5%, 군무원 3.9%, 발부를 군무원 100%, 준·부사관 88.9%, 장교 73.3%, 병 68.8%
- 2021년 청구율 병 42.9%, 준·부사관 39.3%, 장교 14.3%, 군무원 3.5%, 발부를 군무원 100%, 준·부사관 90.9%, 장교 75%, 병 58.3%

20. 2021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		2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1	1	50

* 기타: 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증거보전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7	0	7	0
	구속적부심	6	3	3	50
	형사보상청구	4	4	0	100
	기 타	11	1	10	90.9
2017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8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3		3	0
2019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3		3	0
2020년	보석청구	2		2	0
	구속적부심	1		1	0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3		3	0
2021년	보석청구	2		2	0
	구속적부심	1	1		100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	1	1	5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적부심 허가율 5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2021년 구속적부심 허가율 100%

21. 2021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계	122	22	53	39	8	0
원판결확인	122	22	53	39	8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약식사건 포함)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665	113	325	190	36	1
	원판결확인	665	113	325	190	36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7년	소계	136	22	76	32	6	0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8년	소계	140	21	73	40	6	0
	원판결확인	140	21	73	40	6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9년	소계	126	28	57	36	4	1
	원판결확인	126	28	57	36	4	1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0년	소계	141	20	66	43	12	0
	원판결확인	141	20	66	43	12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21년	소계	122	22	53	39	8	0
	원판결확인	122	22	53	39	8	0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021 군사법원 연감

2021년 주요 판례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공군 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2020노252 뇌물수수(일부 예비적 죄명: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 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여부
- [2] 입찰방해죄의 성립여부
- [3]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원 전부를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 원심 및 상고심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0. 7. 7.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5,780,342원)
- 고등군사법원 2021. 1. 14.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 원, 추징 1,920만 원)
- 대법원 2021. 4. 29.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义务的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이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입찰공고문 초안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5. 31.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최고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서는 낙찰 가능한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이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입찰공고문 초안에는 실제로 공고된 최종 입찰공고문에는 빠져있는 토사반출을 위한 총 제반경비에 관한 예정가격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유한회사 A의 3억 5천만 원 투찰행위 및 최종적인 낙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입찰공고문 초안 누설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공여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공여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제3자의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을 단순히 빌려 주었다는 진술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종전에 지급한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금전을 차용증도 없이 지급하여 변제에 대한 기대 없이 금원 전부를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고등군사법원 2020노210 준강간

-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로서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님
- [2]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부인한 사례

• 원심 및 상고심

-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6. 16. 선고(무죄)
- 고등군사법원 2021. 1. 28. 선고(징역 1년 6월)
- 대법원 2021. 3. 26.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로서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① 피해자는 2019. 4. 1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준 담배를 같이 피고 자고 있는데 강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의식X). 눈을 떠보니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템포가 빠져 있었고 하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 함께 술을 먹다가 A가 먼저 집에 가는 것을 배웅하고 피고인과 함께 돌아오면서 재차 술을 구입하여 추가로 마셨으며, 잠이 들기 직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 그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없었다는 점 및 아침에 일어나서의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당일에는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먹었고, 또한 본인의 기억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며 피고인이 준 담배에 원인이 있다고 여겨 수사기관에 자신의 모발, 혈액, 소변 등에 마약류의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는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취했다. 제가 강아지 때문에 울고 잤고 제 위에 피고인이 있어서 네 자리인 침대로 가라고 말 한 후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잠이 들 때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었다. 중간에 깬 적은 없는데, 이것은 꿈같기도 한데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의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주 잠깐이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꿈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피고인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꿈결에 ‘올라가라’라고 했던 것 같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술에 너무 취해서 몽롱하게 본 것 같은데 몸 위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 같고 얼굴이 보여서 밀쳐냈는데 그게 꿈인지 사실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고 확실치가 않다.”, “저를 위로해 줄 때 피고인이 침대 위에 앉은 상태로 토닥토닥한 것인지 바닥으로 내려앉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량보다 초과하여 마셨다. 만취하였다. 처음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중간중간 끊기는 것도 있다. 침대에 보내고 저는 잠든 것까지 밖에 기억이 안 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깬다. 사건 직전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울었고 피고인이 옆에 와서 달래주면서 어깨를 토닥였다. 키스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침대로 올려보냈다.”라고 진술하여, 당일 만취하여 간음 당시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을 침대에 올려보냈다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온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사건 이전인 2019. 초반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은 맞는데 제가 뭔가 진짜 당한 것은 확실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말하면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것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당했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예 없었고, 스킨십도 없었다.”, “사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그날 당시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별일도 없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사건 발생 이전의 정황에 대하여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왜냐하면 성관계를 시작했을 때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으나 질문에 “거부하는 반응도 하지 않았다. 밀쳐낸다거나 하지 말라든가 거부,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키스했고 그 친구도 별 거부가 없어서 제가 가슴을 만졌다. 가슴을 만지고 그 친구의 바지를 내렸고 그런데 그 친구가 당시 생리 중이어서 템포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콘돔을 사 와서 그 콘돔을 사용해서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전후로 제가 직접 템포를 빼거나 한 적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만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졸리니까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 너는 침대 위에 가서 자라. 나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건들지 마’라고 했고 저는 바로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갔다.”,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사 주면 안 되냐’고 말했고, 제가 ‘너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그거 사서 써라’라고 말했다.”, “진짜 어이가 없다. 동의하에 했으면 신고하지도 않았겠조. 귀찮게 뭐하러 이런 일을...”, “전혀 제 기억과 다르고 만약 제가 성관계를 시작할 당시 의식이 있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제가 기억을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헤어지고 이후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침대에서 자기 전에 피해자가 ‘거실에서 나가서 자라’ 혹은 ‘내가 거실에서 자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욕 내지 용인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앞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에 “중간에 콘돔을 뺐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좀 쳐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었다. 콘돔을 빼고 전 계속 성관계를 했고 관계를 다하고 나서 그냥 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콘돔을 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삽입하지 않았다. (2019. 4. 21.에 진술한 진술조서에서는) 기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착각했던 것 같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진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보인 후에 성관계를 지속했는지에 대하여 초기의 진술에 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는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옷 벗길 때도 피해자의 얼굴을 안 봐서 잘 모르겠다. 성관계를 할 때에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처음 성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두 손으로 제 허리 쪽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잡았던 피해자의 손이 바닥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 중간 이후부터는 잠이 들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보았을 때는 자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모르겠다. 어두워세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관계를 하면 여자가 소리를 낸다던지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고 끝나고는 코 골더라고요.”라고 진술을 하다가, 당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그때 키스할 때도 깨어있었다. 그 직전까지 같이 대화했고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친구를 토닥여주었을 당시에 깨어있던 상태이다. 키스하기 직전에 같이 대화하고 있었다.”, “별 거부감이 없었고 그냥 제가 키스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도 받아주었다. 바지를 내릴 때 피해자를 보았다. 피해자가 눈을 뜨고 정신이 있는 상태였다.”, “템포를 빼고 삽입하였을 때 당시에 의식이 있었다. 눈을 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 피해자가 당시 술과 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술 마시고 미쳤었나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성폭행범이랑전화안해 자는데건드리는상증못할새기”라고 함에도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안 풀리겠지... 그래도 사과하고싶어”, 피해자가 “진짜소름끼쳐 내허락도 없이 의식없고 그러고있는동안이곳저곳다만졌을거야냐 그리고 눈뜨니까바지벗겨져있는 기분아냐진짜 진짜개소름끼쳐”라고 함에도 “왜 그랬는지 몰르겠어 술먹고 실수 했나봐 너한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해”라고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제일 큰 부분은 만약 이게 커져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까 봐 미리 사과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희 할머니가 알게 될 것이 제일 무서웠다.”고 변명하나,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상태에서 단 한 차례의 부인도 없이 배변패드를 깔았던 점과 신고되어 할머니께 걱정 드릴 것이 무서워서 즉시 사과하였다는 변명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합의금을 청구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너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금액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 밖에 없다. 화가 나 거액인 2천만 원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며 저에게 월 3~5만원 가량씩 합의금을 갚아나가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고 경위에 대하여 “저는 그냥 진실성 있게 사과만 해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장난식으로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서 이것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 싶어서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관계가 특별히 나쁜 사이는 아니었고 친구 사이로 연락하며 가끔 만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게 된 이후에 피해자가 연락이 왔거나 제가 연락했던 적이 없다. (합의금 이야기는 이전에 얘기했던) 그 뒤로 얘기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오로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310 군인등강제추행

- [1] 군무원인 피해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오랜만이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
- [2]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이에 군검사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 원심 및 상고심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0. 9. 9. 선고(무죄)
- 고등군사법원 2021. 3. 11.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상고심 진행 중

• 판단 이유

1. 원심의 판단

① 볼 부위는 접촉 방식 및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볼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비비거나 쓰다듬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손가락 두 마디가 몇 초 가량 볼에 맞닿은 것에 불과하여 접촉 시간이 짧고 접촉 면적이 작은 점, ②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고, “언제 셋이서 밥이나 한 번 먹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A도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따구 한 번 만져보자.”, “볼따구 한 번 만져주면 통과시켜 주지.”, “볼따구 한 번 만져주면 보내주지.”라는 등의 말을 장난식으로 하며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볼을 꼬집어 흔들는 것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를 통하여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게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은 직장 동료로서의 친분관계 정도만 있던 피고인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을 유아(乳兒)시 한다는 불쾌감 혹은 당혹감의 표현일 수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균형법상 추행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사를 건네는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잡고 흔드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와 계급(직급) 차이가 상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드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에는 신고 같은 것이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몸을 피하고 왜 이러시냐는 말로 거부를 표현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A는 “당시 주임원사였던 피고인에게 청첩장을 건네주러 갔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아내니까 볼을 만지시면 안된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내가 워낙 그것을 되게 싫어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기억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마과장이었던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행동에 관하여 주의를 준 사실도 인정된다.

③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사실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남편이 다쳐서 외부 민간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乙병원을 방문하였고 중앙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인사하자 피고인이 ‘오랜만이네’ 하면서 다짜고짜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제 볼을 잡고 흔드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가했다.”, “저는 쪽 이것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느꼈고 많이 힘들었고 남편이 결혼하면서 하지 말라는 뜻도 비추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몇 년 만에 봤는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신체접촉을 했었고, 차에는 시어머니가 저의 아이와 함께 대기하고 있어 혹시나 시어머니가 보시고 저에 대해서 제가 처신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까 그런 것도 너무 수치스러웠고 사회가 그 사이에 성추행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싫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동기와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행위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단지 친한 사이에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한편,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볼을 비비거나 쓰다듬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접촉 시간이 짧고 접촉 면적이 작았다는 점, 신체접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313 도박공간개설

- [1] 범죄수익 추징의 법리
- [2]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 9. 17.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4,347,700원)
- 고등군사법원 2021. 2. 9. 선고(항소기각)
- 대법원 2021. 4. 29.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 5652 판결 등 참조).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은 몰수대상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이란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항 사.목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상당은 도박공간개설 행위의 직접적 대가인 급여 및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319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 [1] 특수상해죄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 정도
- [2]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상해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9. 17. 선고(벌금 500만 원)
- 고등군사법원 2021. 2. 25.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21 3. 5. 판결 확정

• 판단 이유

-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14. 선고 2007도136판결 등 참조).
- [2]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①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팔 상박부에 공기못총을 맞은 후 통증을 느끼고 박혀있는 타카심을 뽑았을 뿐 의무실에 가자는 피고인의 권유도 거절하였으며, 위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진술이 없다. ②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23일 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해당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4일이나 지난 후인 2020. 4. 29. 국군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료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다.
- [3]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4일이 지난 시점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타박상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특수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6. 피고인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공기못총(에어타카)로 제 왼팔 상박부에 1발을 발사했고 그 후 통증이 나서 마져보니 타카심이 박혀 있는게 느껴져 그것을 뽑았다. 피고인도 당황하면서 웃으며 저에게 사과를 했으나 저는 너무 화가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4일 후에 진단을 받았는데, 국군대전병원 군의관의 진단서에는 병명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좌측 상완부 좌상을 인한 상처 있는 상태임, 증상에 대한 주의깊은 추시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목공실에서 피해자의 팔에 못총을 쏘았을 때 그 못이 피해자의 팔에 박혔는데, 그때 피해자는 동계형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팔에서 피가 난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제가 너무 놀라서 사과했고 의무실에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아서 계속 가자고 하니깐 괜찮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255 군인등강간미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 [1] 군인등강간미수에서 실행의 착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의 의미
- [2]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군인등강간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원심 및 상고심**

-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6. 25. 선고(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고등군사법원 2021. 3. 25. 선고(항소기각), 2021. 4. 2. 판결 확정

• **판단 이유**

-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부사관 기수가 높은 군대 선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당기자 저는 ‘무섭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도 양손으로 당겨 침대에 앉히고는 양손으로 제 양어깨 부분으로 밀어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고, 저는 눕혀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침대를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바지 밴딩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려 이때 제 바지가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10센티 정도 내려갔다. 저는 침대를 잡고 버티고 있던 제 양손을 제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았고 ‘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 바지를 내리려 하여 제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쪽 골반 부위를 밀어냈다”고 진술한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를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양손이 자유롭지 못하자 피해자의 바지까지 내린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바지까지 벗기려고 한 것으로 보서는 제 의사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계속 싫다 무섭다 이야기했음에도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 단순한 추행을 넘어 강간을 하기 위함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성행위를 할 의도는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신체접촉을 이어 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297 위증

-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질문에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8. 10. 선고(벌금 500만 원)
- 고등군사법원 2021. 4. 1. 선고(무죄)
- 대법원 2021. 7. 8.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가. 사적인 대화나 연락 관련

원심 및 상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사적으로 만남에도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외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취지를, 업무대화만 하였으므로 ‘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 조사 중 간단히 김밥을 먹은 것에 불과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회피하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피고인은 2017. 5. 15.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외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아래에 후술할 녹음파일 관련한 질문이 있을 뿐 당시 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는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으로 위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위 질문은 ‘사건 이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외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한 적’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로 조합되어 있어 답변을 하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기, 진술조서, 피해자, 사적, 대화, 연락 등 여러 가지 단어 중 어느 단어에 중점을 두어 답변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없다’는 답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건 전에는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로도, 진술조서 작성을 위하여는 만난 적이 있다는 의미로도, 공적으로 만난 적은 있다는 의미로도, 대화나 연락은 안 했지만 마주친 적은 있다는 의미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하여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질문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증언을 현출시켜 증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야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증언 청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법정 증언 당시에는 오로지 하나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질문만을 하였고, 답변자에게 답변의 의미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다면,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당시 B 사건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하였을 것이고 이를 평소 위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직후에 단둘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이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다거나 선임수사관의 승인을 얻어 나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16. 12. 5. A에 대한 1차 조사 후 D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사적으로 먹은 것은 아니고 일과시간이었고 부대 점심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팀장님이 위 선임수사관의 승인을 득해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은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해서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적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 것 같다.”, “만약 사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일과 이후 약속을 잡고 식당도 괜찮은 곳을 잡았을 텐데 저도 빨리 밥 먹고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D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어서 간부님들이 ‘네가 가서 관찰도 하고 좀 해라’고 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여성들과 면담을 할 때도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업무할 때 피해자 면담이든, 이런 것을 할 때 부대 밖에서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군부대에서 신변을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끔 먹기는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는 이 법정에서 ‘2016. 12. 5. 본인이 처음 피해자 진술을 한 날인데 조사를 받고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식사했던 것이 너무 겹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때 C를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해서 그것을 다독여주었던 것만 기억난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답변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일 피고인이 조사를 마치고 B 사건 피해자인 A를 조사하였던 여성 조사관으로서 피해자와 간단하게 식사를 한 것이라 공적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납득이 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해명을 선뜻 거짓인 것으로 단정하여 배척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C나 A와는 사건 외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A를 위하여 위증을 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A도 “처음 부대에 전입을 왔을 때 맞선임이라서 부대 위치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밥을 가끔 먹는 사이였다.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이유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증죄의 공소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전역한 이후에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측과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A를 위하여 위증을 할 동기를 추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녹음파일 관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사 전에 A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고도 ‘나중에 들려주겠다고 했다’라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조사’과정은 조서를 받기 전 ‘사전 면담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녹음파일이 확보된 사실은 알려주었으나 음성녹음을 들려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안된다고 말하고,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음성녹음을 들려주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A는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들어보았던 것도 다 조사실이었던 것은 기억난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파일을 다 듣고 그 내용을 피고인과 상의한 그런 적은 없다.”, ‘2차 사건 영상녹화를 하기 직전에 그런 녹취 음성파일이나 파일내용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기억이 정말 희미하게 나기는 하는데 영상 촬영할 때만 저는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6. 12. 5. A 2차 진술조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미 녹음파일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해당 녹음파일을 처음 듣는 것과 같은 반응이라고 봄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를 위하여 위증을 할 동기를 추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고등군사법원 2021노11 군무이탈미수, 상관폭행, 상관모욕**

- [1] 군무이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 군무이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위병소 앞까지 걸어 갔다는 것만으로는 군무이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에도, 유죄를 인정할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사안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12. 28. 선고(징역 8월)
- 고등군사법원 2021. 4. 29. 선고(항소기각), 피고인 상고포기 확정

• **판단 이유**

이탈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맡은 군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탈의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행동으로 구체화 되었을 때 군무이탈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입영한 피고인이 위병소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위병소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탈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고등군사법원 2020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예비적 죄명 준강간)**

- [1]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기준
- [2] 합동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11. 19. 선고(징역 5년)
- 고등군사법원 2021. 6. 22. 선고(항소기각)
- 대법원 2021. 9. 30.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1]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서도 간음하였다고 보이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 시간, 술 게임 등을 하면서 마신 음주 속도 및 앞서 본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거나 물을 마시는 등 행동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성인 남성 2명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 직후 잠에서 깨어나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의 전후 객관적 정황 및 피해자와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 A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평소 생활 패턴 및 성생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적 관계를 이례적으로 볼 수 없고, 단지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촬영 당시에는 성관계에 집중하느라 동영상 촬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들자마자 성관계가 아닌 동영상이 유포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A의 행동을 저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당시에는 촬영을 인지하였음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의식을 차리자마자 신고에 나섰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신체적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로 역추산하면 0.08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법과학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섭취 음식물, 술의 종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⑤ 공범인 A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이제 그만해라, 하지 마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었고, 피고인을 보내려고 ‘피해자가 피곤한가 보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고, 피고인을 먼저 보내고 3~4분 정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피해자를 깨우는데 피해자가 안 일어나기에 제가 ‘큰일 났다. 피고인이 안에 썼다’고 큰일이 났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A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여 그만 하라는 식으로 손을 흔들었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피해자에게는 “큰일났다. 피고인이 안에 썼다”는 식으로 흔들여 깨운 것으로 보인다.

⑥ 나아가,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고, 제가 계속 씻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받쳐서 일으키려고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누우려고 했다”, “A와 동시에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다가 A는 그만두고 옆 침대로 이동하였고, 제가 피해자를 오른쪽 침대로 옮기다가 A가 다리를 잡으니깐 들어서 옮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두 번째 성관계 시 신음소리도 줄어있었고, 눈을 보았을 때 조금 피곤해 보였다”, “두 번째 성관계 직후에 잠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모텔을 떠나기 전 피해자는 잠이 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두 번째 성관계 시 피해자가 피곤해하자 A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휴가 복귀를 위해 빨리 가보라는 의미로 툭툭 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기 귀찮아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하고 나면 힘들어 넘어질 수 있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나,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변경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모텔에 이동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술자리 게임을 주도하고, 자신이 먼저 리드하여 술집을 데려가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며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당시에 자신이 들춰져 이동되거나 성관계 장면이 카메라로 촬영되거나 갑자기 성관계가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어떠한 말이나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바,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A의 합동성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는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A가 ‘쉬었다가 내일도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였고, 여기서 ‘쉬자’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은 것 같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집이 멀어서) 가기 힘들지 않냐, 쉬다 가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모텔에 가기 전 주점에서 피고인과 A가 나눈 대화를 사전공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는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서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마치고 모텔 밖으로 먼저 나갈 때까지 아무도 현장을 이탈한바 없는 이상 적어도 모텔 안에서 범행할 당시에는 서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모텔로 이동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A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동안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③ 이후 A는 간음행위를 멈추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간음하던 도중 피고인과 A는 피해자를 더 넓은 오른쪽 침대로 함께 옮기기도 하였다. 옮겨진 침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고, A는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 고등군사법원 2021노28 상습도박(변경된 죄명 도박)

[1] 일시오락의 판단기준

[2]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 1. 8. 선고(벌금 50만 원)

- 고등군사법원 2021. 6. 24. 선고(무죄)

- 상고심 진행 중

• 판단 이유

[1]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수입 정도,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오락을 넘어선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2~3회 이상 카드게임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년에 6,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친목을 다지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모여서 술도 마시고 놀다가 술값 등을 걸고 카드놀이를 한 것이어서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급 및 입금이 반복되고 있고 A와 2019. 7. 19. ~ 2019. 12. 6. 10만 원 단위로 이체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과 A 사이에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하나, A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돈들은 배달대행 관련해서 주고받은 것들이며, 피고인과 거래가 새벽에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배달대행은 일 마치고 정산 보는 데까지가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평균 2-4시에 마감한다. 그때 은행에 가서 돈을 못 찾기도 하고 목돈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CD기로 할 때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저는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새벽 같은 때에 배달 라이더들이 수금을 해 가는 상황에서 돈을 계좌로 부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19. 11. 13. CCTV를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출입 내역을 보면, 같은 날 22:14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같은 날 22:34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20분에 불과하고, 2019. 12. 6.에는 사무실 출입내역이 없어, 위 출입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④ 게임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포커카드를 이용해서 바둑이라는 게임을 했다. 한 판당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걸린다. 처음에 천원, 안 죽으면 2천원, 또 안 죽으면 4천원 내고 대부분 거기서 판가를 난다. 15,000원 그런 판은 많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는 "1인당 전체적으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한 명이 5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토탈 잃은 것이 30만 원이 될 수 있다. 30만 원 모을 때도 있고 6명에서 90만 원이 된 적도 있다. 한판당 1,000원짜리로 왔다 갔다 해서 만 몇천 원 될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도박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원심법정에서 "내기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도박을 2-3번 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따먹기가 아니어서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이 된다고 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는 "저녁에 모여 놀고 비가 오면 낮에 모이기도 한다. 꼴등하고 한두 명 정도가 돈을 내고 나머지는 공짜로 술을 먹는다.", "참여하다가 가게가 바쁘면 간다. 동네에 한 20명 정도 있다. 피고인은 오면 거의 술을 먹었다. 자주는 아니고 두어 번 정도 카드놀이를 한 적 있다. 피고인이 막내급이라 심부름을 했다. '담배 하나는 네 거다' 이 정도.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동네 형들 때문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는 길어야 2-3시간 했다. 다음날 출근한다고.", "피고인은 가끔 놀러와서 같이 술 마시고 논 것 뿐이다. 카드놀이 관련해서는 2019. 11.과 12. 사이 두 차례 룸클럽 내기로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한번 같이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평소엔 친분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술 내기 등의 카드놀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걸린 판돈의 총 액수도 확실치 않다.

○ 고등군사법원 2021노38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1] 피고인은 '○○함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원으로, 사업종료 후에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위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관해 오다가 위 용역사업에 같이 참여 하였던 A의 요청으로 결과보고서를 A에게 송부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례
- [2] 피고인은 A가 위 용역사업을 함께 수행한 자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누설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컴퓨터 '백업'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우연히 군사기밀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중간에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때 기존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었음)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 원심 및 상고심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0. 11. 17.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고등군사법원 2021. 7. 8. 선고(항소기각), 2021. 7. 16. 판결 확정

• 판단 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가 군사기밀 누설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2012. 10. 22. 이전에 A가 이 사건 보고서의 핵심적인 군사기밀 내용, 즉 ○○함 등의 각 중량, 속력, 항속거리, 최대 잠항수심, 함정에 탑재할 장비와 무기체계의 성능, 전력화 예상 시기와 운용 대수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가 군사기밀 누설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취합하면 각자 작성했던 내용이 달라지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어 취합한 다음에는 전체 관련자들에게 배포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A는 "최종본을 따로 열람한 기억이 없다", "전력계통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된 형태로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이후에 B박사나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자신은 손을 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② A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이 끝난 이후 이 사건 보고서를 다시 들춰보거나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2. 10. 2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파일을 수신받기 전까지 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보고서 작성 이후 A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 들을 다시 검토하거나 활용할 계기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하고 그 직업, 직무는 법령에 의하든, 관례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관계없고,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군사기밀인 사항을 주재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참여하고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등으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모두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로 인하여 점유한'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상의 비밀인 물건의 보관을 직무 또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또 반드시 주재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일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6.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D기술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백업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단절되거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과제 종료 후 6개월 내지 1년간의 AS기간 동안 보고서 수정 및 보완업무를 위해 과제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다른 용역과제를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보고서가 자신의 컴퓨터 내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D기술원으로 복귀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컴퓨터 내의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백업한 것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고서를 포함하여 기존에 자신이 삭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D기술원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대로 보관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백업한 자료에 "당시 C에서 했던 모든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2. 10. 21. 이 사건 보고서를 찾아서 보내 달라는 A의 요청에 다음 날인 10. 22. 직장으로 출근하여 백업한 자료에서 곧바로 이 사건 보고서를 찾아 09:55경 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 **고등군사법원 2021노1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폭행**

-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범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후 별도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바도 없고,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정황도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 원심 및 상고심

-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 4. 28. 선고(징역 4년)
- 고등군사법원 2021. 10. 21. 선고(징역 3년)
- 대법원 2022. 1. 27. 선고(상고기각)

• 판단 이유

-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외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구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시청한 후 별도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바도 없고,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6항의 [별지 2] 기재 범죄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고등군사법원 2021노13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 [1] 군기누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18년 하반기 장성급장교 진급 선발자 명단」이 찍힌 사진 파일이 군사상 기밀 또는 대외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안.

• 원심 및 상고심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 3. 19.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고등군사법원 2021. 11. 11. 선고(항소기각)
- 상고심 진행 중

• 판단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명단이 군사상 기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중령으로서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다수의 정보, 보안 관련 보직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 법정에서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비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되었던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2] '4. 인사 분야'의 '나. 분류 기준' 이하 표에는 대외비 등급에 '10. 장군 인사속보/장관급 장교 정기 인사명령'이 명시되어 있다[위 내용은 2012. 2. 13. 국방부훈령 제1393호로 개정된 군사보안업무 훈령 (2012. 4. 1. 시행)부터 이미 훈령에 명시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 게시되는 위관 및 영관 장교의 진급 명단과 달리 장군 진급명단은 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으며,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장군 진급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입수한 경위 역시 개인적인 연락망을 통해서였다[피고인은 언론기사나 인터넷 웹사이트(나무위키) 등을 통하여 진급명단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대외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론기사의 경우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주요 직위자의 명단과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으로 진급자의 극히 일부만이 공개되고, 나무위키의 경우 진급명단 자체가 게시되지 않고 누구나 항목의 작성과 수정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주요 직위자의 인물 정보 등을 제공할 뿐이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비록 원본의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파일의 내용이 장성급 장교 진급 선발자 명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A에게 발송한바, 군형법 제80조의 군사상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당시 장성급 장교 진급명단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대외비로 분류하여 군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000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위 사진파일 전송 이후 '해군 공군 세부명단 확보는 제한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바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파일이 군사상 기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2020고30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2021. 4. 9.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P군사학교 교학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18. 6. 초순경 여행업체(A)가 제출한 2018년 현장학습 견적서 중 1인당 각각 10,000원 및 18,000원이던 식사비와 교통비를 각각 12,000원 및 20,000원으로 인상시켜 최초 견적보다 852,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여행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2018. 6. 19.경 여행업체(A) 전무로부터 카드수수료 42,000원을 공제한 현금 810,000원을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852,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018. 7. 9.경 행정담당 B로 하여금 온나라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직원 C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전자문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교학과장의 결재를 받고, 재정과장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 2건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함.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여행업체(D) 관계자로부터 시가 49,500원 상당의 생선선물세트 1상자를, 여행업체(E) 관계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홍삼음료 선물세트 1상자를 받아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1]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교학과장으로 국내·외 현장학습 관련업무 조정·통제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현장학습 계약은 교학과에서 여행업체(A)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예산 세부 집행계획을 포함한 현장학습 계획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최초 여행업체(A)로부터 받은 견적보다 식사비, 교통비를 각각 1인당 2,000원씩 높게 책정하여 견적을 올려서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실무자D가 여행업체(A)측에 이를 반영한 견적서를 요청하였던 점, ③ 이를 토대로 교학과에서 재정과에 계획보고 및 예산 집행 의뢰를 하여 재정과에서 이와 같이 높게 책정된 견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학습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현장학습을 계획함에 있어 적절한 가격에 여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함.

[2] 뇌물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학과장으로서 국내·외 현장학습 관련업무 조정·통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여행업체(D,E)들은 당시 P군사학교에서 주관하는 국외현장학습에 참여한 점, ③ 위 여행업체(D,E) 관계자들이 선물세트를 보낼 당시에 피고인과 특별히 감안할 만한 개인적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함.

○ 2020고42 준강간미수(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2021. 4. 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이 2011. 4. 19.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A(여, 14세)에게 용돈을 줄테니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끌어 추행함.

* 2011. 10. 17.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군검사가 재기하여 기소함

2.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1. 00:17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상체를 끌어안고, 손목을 잡아당겨 추행하고, 같은 날 00:27경 위 피해자를 상가건물 안으로 데려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뽀뽀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간음을 시도하다 목격자의 제지에 의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0:30경 다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바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들쳐업는 방법으로 추행함.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1년, 취업제한 5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에 대해서는 택시 타는 곳을 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것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추행행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됨./ (유리)피해자들과 합의, (불리)죄질 불량, 범행 부인, 반성하지 않음

[2] 준강간미수의 점(무죄) : 준강간 실행의 착수 불인정

* 다만,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축소사실인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2020고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료법위반 [2021. 5. 3.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의관이 피고인에게 처방한 처방전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군의관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국방의료정보체계에 접속하고, 피고인에게 처방된 인공눈물의 수량을 3개에서 2개로 정정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병원 약제과로 발송함

• 1심 판단 및 이유 : 벌금 300만 원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대면 진료 의무를 위반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이므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처방전을 발송한 행위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단)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문언 내용 및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사가 아닌 자가 임의로 처방전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

[2] 양형 : (유리) 의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음, 진지하게 반성

○ 2020고51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 [2021. 6. 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5. 22:05경 군인인 피해자(여, 28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2. 군인등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인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무감각마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3년 6월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왕 병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고, B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A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각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점, ② 피해자가 최초 진단 이후 2020. 10. 23. 곧바로 휴직하고 외부의 자극이 적은 쉼터, 집, 병원 등에서 생활하여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별개 사건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으며, 두 곳 이상의 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및 향후 치료에 대하여 유사한 진단 및 소견을 받은 바, 위 상해 진단서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는 기왕에 불면증, 우울 등의 기분장애 증상이 있어 2017.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주기적으로 A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병원 외래재진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과로 생활하고 있었고, 담당의사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에 대해 ‘피해자의 기왕력과 관계없이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무감각마비’ 증상은 기존에 피해자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리로 인한 기억 상실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은 피해자에게 처음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피해자가 겪고 있던 증상들 역시 빈도 및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상해 진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새로 발병되었거나 기왕 증세가 더욱 중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만 해야겠다. 하자.” 등의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 방해받거나 좌절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계속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피고인이 계속 저의 왼쪽 손목을 꼭 잡고 있어서 빠지지 않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 누군가와 간음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발기부전이라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발기부전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함.

○ 2020고31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2021. 7. 2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뇌물수수

피고인이 「손상통제 교육훈련용 CBT개발용역 사업」의 담당자로서, 사업 입찰 절차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19. 1.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주류 및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 접대 등이 포함된 합계 1,5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15.경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응찰을 준비하고 있던 A업체 대표인 B에게, 공무상비밀인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함정 손상통제 교범, 제안요청서 초안 등 사업 관련 서류를 누설함.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50만 원, 추징 154만 원, 일부 무죄

[1] 이 사건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함.

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7. 12.경 B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B와 친해지게 된 것일 뿐, 오랜 기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오거나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음.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 출장의 기회에 B를 만나, 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 받았으며, 그 비용은 1회에 인당 50만 원 가량으로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위 3차례의 비용 모두 B가 계산하였을 뿐 피고인이 계산하거나 그 금액의 일부를 분담한 사실은 없음.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였고 B는 위 사업을 낙찰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였다. 즉, B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을 수주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사업의 담당자였던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수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도 충분함.

[2] 이 사건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함정 손상통제 교범, 제안요청서 초안 등 사업 관련 서류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됨.

① 이 사건 사업은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임. 따라서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투찰금액과는 무관하게 입찰 절차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위 입찰 절차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의 영향력도 매우 큼. ②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이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전에 외부에 누설될 경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행위나 외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 확정되지 않은 추천 단계에 있는 평가위원 명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평가위원 선정 절차에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등 입찰 절차의 안정적 수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평가위원의 이름이 아닌 직책만을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평가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위험성은 동일함. 또한, 결과적으로 누설한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불만한 이유는 없다. 따라서 위 평가위원 명단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함정 손상통제 교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범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위 교범이 외부로 누설된다고 하여 군의 전투력 유지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① 이 사건 교범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함정 손상통제 훈련 검증 및 토의 결과를 토대로, 미 해군 교범 및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군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 워크숍 및 정책발전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임.

② 이 사건 교범은 함정 손상통제에 관한 기본개념, 조직편성 및 임무, 손상규모에 따른 대응태세 및 지휘통제, 손상통제 장비·물자에 대한 기본제원 및 운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함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상상황(선체, 인명, 장비손상 등)에 대한 표준 대응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③ 위 교범은 군사비밀이나 대외비가 아닌 일반교범으로서 해군의 문서관리(교범관리)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교범의 경우 민간사업체에 대한 영외 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보안서약서 작성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 영내 사무실에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학·군 제휴 군사학과 교수가 교범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대(서)장의 승인 하에 대여 및 영외 반출이 가능함.

④ 군검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범의 실질적인 비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절차규정을 위반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교범을 영외로 반출시켰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3) 제안요청서 초안 등 사업 관련 서류

피고인이 누설한 제안요청서 초안 중 일부는 사전에 공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 이기는 하나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고하는 취지가 입찰 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안요청서가 사전에 공고된 바 있다 하더라도 최종 입찰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상태임. 즉, 입찰 공고 시 사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요청서가 공고될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공고가 있기 전에 사업담당자인 피고인이 제안요청서 초안의 일부 내용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정업체 대표에게 누설하는 것은 그 초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요청서가 사전에 공고된 바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특정업체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입찰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그 제안요청서 초안의 특정 일부만을 나누어서 보냈다고 하여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음. 따라서 위 제안요청서 초안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 외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 역시 제안요청서 작성계획 및 방향, 제안서 평가시 예상 질문을 정리한 내용으로 그것을 특정 업체에 누설할 경우 그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줌으로써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모두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음. 따라서 위 제안요청서 초안 등 사업 관련 서류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2021고9 상해 [2021. 8. 1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7. 01:4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자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빼면서 피해자의 아랫니 한 개를 빠지게 하여 치료 일상 미상의 상해를 가함.

• 1심 판단 및 이유 : 벌금 200만 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뺀 것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반사적 행위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이미 싸움이 종료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을 물린 상태에서 그 손가락을 빼는 행위는 피해자와 싸움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위 당시 미필적이거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싸움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이어서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싸움이 중단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시 공격을 가하기까지의 시간도 짧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을 당시 기존에 진행되었던 싸움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약 10분 동안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싸우고, 눈이 붓고 피가 날 정도로 얼굴을 때리고 할렘 기존 싸움의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것이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게 되어 이를 빼는 행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의 특성상 방어행위가 곧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공격행위가 다소 방어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싸움 행위 중 다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특정 행위만을 가려내어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음.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려고 했는데 자신이 꽉 물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빠졌고 후에 다시 피고인이 빼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빨이 같이 밀려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인 고통을 느껴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뺐 경우 피해자의 이빨이 빠지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육군 군사법원

○ 수도권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2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2021. 3.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A에게 군사통제구역인 '지휘통제본부 모든 시설'(이하 'CCC'라고 한다) 내부에서 군단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의 음성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여 A와 B는 지하 앰프장비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까지 통신선로를 연결하고 스피커 설치를 완료하였다. CCC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3. 12. 사이에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작동시켜 'CCC'에서 열리는 현행작전평가회의의 보고 내용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청취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군사기밀 탐지로 인한 각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3. 12. 사이에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작동시켜 'CCC'에서 열리는 현행작전평가회의의 비밀내용을 무단으로 청취하였다. 이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

나.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각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로서 2020. 1. 2.부터 2020. 3. 12. 사이에 기재된 일시에 지하 AV실에서 자신의 집무실까지 통신선로를 연결하여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현행 작전평가회의에서 보고되는 II급 군사비밀 내용의 음성이 그대로 송출 되도록 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 일부 무죄

1. 유죄 부분

-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단장이 동석하여 진행한 현행작전평가회의를 무단으로 청취한 것으로, 현행작전평가회의는 군사기밀이 포함된 회의로서 회의 현장에 참석한 인원들 외에는 청취할 수 없는 비밀회의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현행작전평가회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 ②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의간 통신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인정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2. 무죄 부분

- ① 피고인이 CCC 내에서 진행된 현행작전평가회의를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별도로 설치한 스피커를 통하여 청취한 사실, 현행작전평가회의에서 II급 군사비밀이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현행작전평가회의의 참석이 가능하고, 회의에서 보고되는 군사비밀은 인가자들에게 공유되는데, 피고인이 해당 인가자에 포함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군사비밀들을 회의를 청취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찾아 알아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②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현행작전평가회의를 청취하면서 청취 전후에 군사비밀이 취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집무실은 군사제한구역으로 출입문에 시건장치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출입에 제한이 있다. 또한, 스피커에 on/off 스위치가 있어 상황에 따라 음성 송출의 차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무실에서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혼자 현행작전평가회의를 청취하는 피고인이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2021. 6. 17.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을 한 다음, 위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에 저속한 말을 하거나, 염불 소리, 성인영화의 신음소리, 총소리 등의 소리를 피해자의 라디오에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무죄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입의 대상이 '정보통신망'이어야 하는데, 정보통신망이란 기계적 설비를 갖추어 각종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의 송수신은 송출국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송신하고 라디오 수신기를 그 주파수에 동조시키면 해당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라디오 주파수는 특정 라디오 전파가 가지는 고유한 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파가 가지는 특성 또는 성질이라 할 수는 있어도 라디오 주파수 자체를 정보통신체제 또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② 설령 라디오 주파수가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므로 피해자가 청취하던 방송용 라디오 주파수의 관리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보아야 하고 만약 주파수가 침입을 당했다면 그 피해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침입에서 '침입'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망과는 달리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 기계장치를 이용한 송수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전파 자체에 접근 또는 접속·침입한다는 개념, 나아가 전파에 대한 접근권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파의 성질상 성립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취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불쾌한 음향을 송출한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취하고 있던 라디오 전파 수신을 방해(간섭) 또는 교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라디오 방송의 정상적인 수신을 방해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전파의 방해(간섭) 또는 교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있어도, 침입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방송국이 어떤 침입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향 송출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

○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56 군인등유사강간 등 [2021. 6.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군인등유사강간

가. 2020. 1. 22.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22.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숙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끌고 가 얼굴을 잡고 강제로 구강성교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누르는 자세로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고, 머리를 눌러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뒤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3. 19.자 군인등유사강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9.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종료 후 피고인은 별도의 술자리를 가지고, 피해자는 숙소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숙소의 현관문을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당긴 뒤 강제로 구강성교하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추행

가. 2020. 2. 12.자 추행

피고인은 2020. 2. 12. B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숙소에서 B와 술을 마시고 B는 구강성교를 하였다. 구강성교 후 피고인은 성기를 B의 항문에 삽입하여 B의 항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B와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2020. 2. 19.자 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B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B는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B와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3년

① 피해자는 핵심 피해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은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대부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화 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믿기 어렵다.

② 사건 다음 날 오전경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 2명에게 “어제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날의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편,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 때문에 다음날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구강성교는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키 168cm에 몸무게 56kg이고, 피고인은 키 176cm에 몸무게 83kg으로 체격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고인의 강제적 행위를 고려하면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32, 2021고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 [2021. 8. 12.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32』

1. 피고인이 A, B, C와 공모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5. 12. 7. P 일행 성접대

피고인과 A는 P 일행에게 성접대 및 파티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에게 메인 자리 두 개를 잡고, 잘 주는 애들로 불러달라고 지시하였으나 여성들을 부르지 못하자, A와 B를 통해 여성들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A는 J에게 ‘지금 창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B는 C에게 다시 성매매여성을 요청하고, C는 지인인 S, T, U를 모집하여 P 일행의 숙소인 V 객실로 각각 보내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C는 다음 날 S 등에게 각각 9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하고, A는 2015. 12. 25.경 C에게 위 성매매 대가인 약 300만 원을 포함하여 성매매 대가를 합산한 4,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나. 2015. 12. 23.부터 12. 26.까지의 G 일행 성접대

피고인과 A는 G 일행 중 남성들에게 성접대 및 파티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5. 11.경부터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A는 2015. 12. 초순경 B에게 위 성접대 계획의 각 일시, 장소별로 필요한 여성의 수를 고지하였고, B는 C에게 위 계획을 전달하면서 여성들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G 일행이 2015. 12. 23.경 국내에 입국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AG에 묵게 되었고, 피고인과 A, B, C는 사전계획에 따라 모집한 S와 성명불상자를 AG의 각 객실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W 및 X 형제가 2015. 12.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자, W, X와 미리 모집한 AH, AI, 성명불상자를 벤츠 스프린터 승합차에 태운 다음 성매매를 하게 하여, W는 성교행위를 하고, X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A, B, C는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24회에 걸쳐 일본인들 및 J, L과 24명의 여성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이 B, C와 공모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 24. 01:00경 R 클럽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들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AJ에 숙박하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를 통해 BP, U를 모집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있는 호텔 각 객실로 보내주어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무렵 BP 등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경 성매매 여성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A와 B가 AL을 통해 모집한 AM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자, AM과 성교행위를 한 다음 A와 B를 통하여 AM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여 AM과 성매매를 하였고, 2015. 12. 23.경 성매매 여성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 및 A의 의뢰를 받은 B가 C를 통해 모집한 AO, 성명불상자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자,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5. 12. 25.경 A가 성매매 대가를 합산한 4,28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31.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AQ 카지노에서 미화 5,000달러를 칩으로 교환하고, 속칭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여 한 판에 5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를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 원)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7,950만 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경 중국 난닝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L, M, J, K,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소재 'AS'를 운영하였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DJ박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DJ를 고용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로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지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6. 7.경 'AS'의 관리를 담당한 AT가 무허가영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6. 9.경 'AS'의 DJ로 근무한 AU가 준강간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E의 자금으로 AT, AU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을 시켜 2016. 10. 17.경 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U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법무법인 AV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10. 19.경 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T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법무법인 AV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E의 자금 합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이 AW와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W는 2018. 5.경 AZ로부터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고, 피고인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회계연도 종료 후 BA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금이 적을 것을 우려하여 AW에게 E가 받아야 할 영업이익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AW가 E가 지급받을 영업이익금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해당 금액의 절반을 클럽 BA의 'AS' 브랜드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직원을 통해 AW에게 전달하였고, E가 지점으로 운영하던 'AS'를 분리하여 2018. 5. 29.경 주식회사 BE를 설립하였다. 그 후 A는 위 금액의 나머지 절반을 클럽 BA의 주식회사 BF에 대한 컨설팅용역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직원을 통해 AW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W는 2018. 9. 19.경 BA엔터테인먼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E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경까지 합계 2억 6,400만 원을 BE에 지급하였으며, 2018. 10. 18.경 BA엔터테인먼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F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까지 합계 2억 6,400만 원을 BF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공모하고, 위 BF에 지급한 2억 6,400만 원 부분은 A와도 공모하여 AW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A엔터테인먼트의 자금 합계 5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A가 부른 사람을 기다렸다. A는 밖으로 나가, 폭력단체 BK파 소속 조직원 BL, BM, BN, BO와 3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들을 지목하였다. 이에 BL 등은 피해자의 목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침을 뱉으며 욕설하고, BM, BN, BO 등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겁에 질려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BH를 끌고 가 BL이 욕설을 하고, BM은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팔을 잡아 끌었으며, BN, BO 등은 피해자들을 둘러싸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BL 등이 다종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3년, 추징금 1,156,900,000원**

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BA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 최대 투자자이자 주주인 BP가 먼저 월 1억 원의 영업이익금을 받아가겠다고 요구하여 나머지 주주들도 정식 이익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영업이익금을 배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주 전원이 영업이익금 배분에 동의하였고, 배분된 영업이익금도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이익배당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주주들에게는 당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특수폭행 교사 범행의 경우 피해자 B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들과의 친분을 쌓아 추후의 일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단기간에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 시켜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갖게 한 점, 그릇된 성인식으로 외국인들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익도 큰 점 등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다.

③ 또한, 상습도박의 범행과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④ 식품위생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AS' 운영이 불법 영업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피고인 자신임에도 2016. 7. 28. 단속될 무렵 AT에게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⑤ BA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범행은 상법, 정관 및 주주간 계약에 정한 이익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한다는 그릇된 판단하에 주주별로 허위 명목을 만들어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의 재산을 분리한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마치 주식회사의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영업년도 중간에 배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BE와의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했던 점, 피고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은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도 상당하여 그로 인한 BA엔터테인먼트의 피해사실도 큰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⑥ 특수폭행 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비가 붙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할 사람들을 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사건 범행 후 일자리를 잃고, 약 6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⑦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반 대중들의 지지로 인기를 얻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돈을 벌고 있던 유명 연예인이었고, 피고인을 따르는 청소년기의 학생들도 많아 대중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2021. 8. 2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죄 부분

가. A·B로부터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1) A로부터 2017. 9.경 C가 납품한 떡에서 손톱이 발견된 것을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5.경 C 사장실에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2) A로부터 2019. 10.경 C가 납품한 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을 무마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3) 2020. 6.경 C의 대표 B로부터 품평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민원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를 대신하여 민원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20. 6. 24.경 C 사장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4) C가 떡을 납품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20. 1. 20.경 C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 35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5,000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 95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D로부터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8. 9.경 D로부터 군차량 정비 일감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F로부터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4.경 F로부터 군차량의 정비 일감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알선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1) A로부터 2017. 8.경 C가 납품한 떡에서 손톱이 발견된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8. 17. 커피점에서 A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았고, 2) A로부터 2019. 10.경 C가 납품한 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을 무마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10. 30.경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3) 2020. 6. 30.경 A에게 군단으로 가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2020. 6. 30. 피고인의 차량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고, 4) C가 군부대에 떡을 납품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020년 추석 무렵 C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 80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요구의 점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F에게 군차량 정비 일감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 타이어 4개의 교환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H로부터 1일당 렌트로 25만 원 상당의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빌려 5일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임에도 H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라.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년 영내자 증식 제조 납품'입찰에서 C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20. 4. 23. C의 A에게 현장실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같은 날 본 건 입찰의 현장실사에 점검관으로 참여하는 같은 사단 소속 수사관 J에게 C를 추천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20. 4. 29. 본 건 입찰의 품평회에 입회관으로 참여하는 J에게 C가 품평회에 제출한 떡을 알려주면서 J로 하여금 품평회에 참여하는 인원들로부터 C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고, I는 2020. 4. 29. C의 A에게, 피고인은 2020. 5. 1. C의 B에게 각 I가 J로부터 보고받은 업체별 품평회 평가 점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1) 피고인은 I와 함께 2021. 2. 19. C의 대표이자 A의 배우자인 B를 만났고, 피고인은 B에게 자동녹음된 파일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B에게 A 사장도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집에 들어간 B가 나오지 않고 A의 아들이 나와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A의 아들에게 공장 문 닫게 할 테니 아버지한테 전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단독으로 2021. 2. 20.경 A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A에게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A가 계속 거절하고 차량에 탑승하자, A의 차량 뒷좌석에 타며 '헌병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집을 팔아서라도 공장 문 닫게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750,000원, 일부 무죄

1. 유죄 부분

- ①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군기강 확립과 대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대군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②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2. 무죄 부분

① 알선뇌물수수의 점

- 1) 2017. 8. 17. 4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3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경 떡에서 나온 이물질을 이유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직권으로 '2017. 7. ~ 9.경 C가 납품한 떡에서 손톱이 나온 사실'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2021. 7. 8.경 군수참모처에서 '2017. 9. 20.경 급식에서 손톱이 발견되어 사단장 경고장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가 2017. 8. 17.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은 시기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 2019. 10. 30. 5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통화녹음 중 B와 피고인 사이의 2019. 10. 30.자 통화녹음에 따르면 피고인은 A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A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B와의 통화과정에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A와 B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에게 A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였던 B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을 축소하여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3) 2020. 6. 30. 300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금원 수령을 부인하였고, B와 A 사이의 2020. 6. 30.경 통화녹음에 따르면 품평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얘기하지 말자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부의 상대방이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 장부 출력물의 경우 A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20. 6. 24.경 50만 원, 2020. 1. 20.과 2020. 추석 무렵의 떡 등에 대한 기재가 없어 통상문서로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20. 6. 30.경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4) 추석 무렵 떡 선물세트 80개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떡 수령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80개까지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A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떡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부대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병 또는 피고인의 부하가 가져갔고, 떡 선물세트 80개의 경우 승용차량에는 실리지 않으며, 스타렉스 정도의 차량에 실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G는 추석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C에서 떡을 수령하였고, 당시 받아온 수량은 8개에서 10개 정도로 검은색 로체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2020. 추석 무렵 피고인에게 떡 선물세트 80개를 교부하였다는 A과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② 알선뇌물요구의 점
F는 피고인이 본인의 차종을 말하며 타이어 4개의 금액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을 타이어를 교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차량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곳보다 저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고 F가 말해준 금액이 인터넷에서 알아본 가격보다 비싸 다른 곳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이어 가격을 문의한 것을 F이 타이어 교체 요구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예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2020. 여름경 H로부터 시보레 익스프레스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동종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어 지인들이 필요로 할 때 차량을 빌려준 경우가 많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점, H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기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가고 반환한 시기도 밤에 빌려 가서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 반환 시 차량에 연료를 가득 채워 두었는데, 약 20만 원 가량이 소모된다는 점 등을 H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비용은 시간으로 환산되며, 그 금액이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변동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H로부터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I와 입찰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입찰에 대한 정보를 듣고 I와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과 I의 직책이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현장실사를 갈 때 방문 예정이라고 모든 업체에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준비하는 것 없이 현 상태를 보여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불시에 현장실사를 하여 C가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I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품평회 결과를 알려준 사실과 관련하여 품평회 결과는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알려줄 수 있고, A는 해당 입찰이 최저단가제이기 때문에 품평회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와 A를 2회에 걸쳐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K와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 후 A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이를 풀고 포렌식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는 피고인이 부모님과 말을 맞추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이 법원에서의 A의 진술보다 수사 초기 A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A 등의 진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의 오해를 풀고 포렌식에 참여하도록 할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당시 A와 B의 대응에 비추어 A와 B가 피고인의 발언에 공포심을 느끼며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A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3 업무상과실치상 [2021. 9. 3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수송정비반장이자 B 군용차량을 정비해야 하는 차량정비관이다. 피고인은 위 군용차량에 대하여 2020. 5.경 반년 정비 등 예방정비를 해야 하고 위 군용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군용차량의 예방정비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 문제를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2020. 7. 4. 20:49경 전술 도로에서 위 군용차량의 제동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원인과 운전병인 피해자 F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위 군용차량이 전술 도로의 좌측 방벽과 충돌한 후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위 군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는 좌측 안와골절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 G는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및 절단 등 최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피해자 H에게는 다발성 타박상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무죄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현장감식결과 및 증인 I, F, J의 각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운전병 F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 ② 증인 I는 본 법정에서 “정비병도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비가 예정된 일자에 정비관이 휴가를 가면 정비병과 다른 간부가 정비하고, 통상적으로 정비관과 정비병이 같이 정비를 할 때도 있지만 정비관이 정비병들에게 예방정비를 시키고 정비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휴가를 가서 다른 간부에게 정비하게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실제 반년 정비 일자인 2020. 5. 7.에 정비한 주체가 피고인은 아니나, 증인 I의 진술에 따르면 담당 정비관이 부재중일 경우 다른 간부와 정비병이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0. 5. 7.자 정비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군용차량에 대한 반년 정비가 완료되어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른 간부와 정비병이 이 사건 군용차량에 대해 반년 정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용차량에 대한 예방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군용차량의 브레이크가 밀리는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이후인 2020. 5. 7.에 K와 정비병이 해당 차량에 대한 반년 정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5. 7.자 정비지시서에는 제동장치 점검 결과에 '이상 없음', 고장 영향에 '정상임무가능'이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군용차량의 브레이크가 밀리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차량의 반년 정비 등 예방정비를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54 군인등강간 등 [2021. 12. 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죄 부분

가. 군인등강제추행

1) 피해자 A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7. 01:00경 피해자 A와 대화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한 뒤 몸을 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020. 10. 8. 21:40경 부대 간부들과 음주 회식을 마치고 주임원사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A와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횡단보도에서 왼팔로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맞춤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7. 00:21경부터 00:25경까지 사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약 10초가량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며 앞머리를 쓸어 넘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0. 01:27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피해자 A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뜨거울까 아냐?", "예스 또는 노", "나 니랑 뜨겁고 싶다구~~~", "싫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4. 15. 19:30~20:00경 정비고에서 피해자 A, B를 포함한 소속대 간부 다수와 여군 간담회 음주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들 및 C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해 “쌍년들아, 너넨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A, B를 모욕하고, 피해자 C와 D가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 대해 “개새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8:30경~다음날 00:20경 사이에 피해자 C를 포함한 다수의 소속대 간부와 음주 회식을 하던 피해자 및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개 같이 생겼다.”, “개새끼”, “개같은”, “애 좀 못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각 군인등강간의 점

1) 2020. 10. 24.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A와 함께 2020. 10. 24. 22:38경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과상여금, 평정에 대해 언급하고, 둘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뒤 남들이 알아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1. 21. 군인등강간

피고인은 2020. 11. 21. 11:27경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A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군인등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가 신체접촉을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넣어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A에 대한 2020. 10. 13., 2020. 11. 초순경, 2020. 11. 하순경 각 군인등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13.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 2020.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뽀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2020.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 사무실 문을 닫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1년 6월, 일부 무죄

1. 유죄 부분

- ① 피해자 A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 방법 등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포옹 시의 상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일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 피해 사실 진술이 피해자 C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 관계였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각 추행 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것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며 앞머리를 쓸어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군 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대군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한 것인 바,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의 피해자가 각 3명으로 다수인 점, 부대 동료들이 함께 있는 차량 내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부대 회식 등으로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제식 동작을 지시하고 이를 수단으로 범행하는 등 군의 위계질서와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일부 피해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들추어내며 이들의 행실을 비난한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무죄 부분

① 피고인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A와 남녀 관계로 발전해 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을 뿐, A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군사경찰 1회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A는 남녀관계였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군인등강간 부분에 관하여 결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군인등강간 부분 외에도 약 4차례 A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는 내용이 수긍할만하다. 한편, A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중 이 사건 군인등강간 이후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식사를 한 사실, 2020. 12. 14.에 피고인과 무인텔에 함께 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도 한 바, A가 그 주장대로 1차 강간 시의 피고인의 협박에 계속 외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전후 사정로나마 진술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A는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각 군인등강간 시점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거나, 자신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제외하고 일부분만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남녀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추가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군인등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와 성적 접촉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군인등강간의 점과 마찬가지로 이는 A와 남녀 관계로 발전해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적 접촉이었을 뿐, A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도 A의 진술이 유일한데 A는 군인등강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도 군사경찰 2회 조사에서야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또한, A와 피고인은 공원에서 21:30경 만났다가 22:30경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23:07경 A, B와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대빵은 기분좋아 혼술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는 23:08경 피고인에게 '우와 한라산~~!! 진급축하드립니다 대대장님!'이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이는 불과 30여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언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A에 대한 2020. 10. 13., 2020. 11. 초순경, 2020. 11. 하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A는 군인등강간과 마찬가지로 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군사경찰 2회 조사에서야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A는 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하여 군사경찰 2회 조사 시 이 사건 각 범행을 2020. 10. 24. 군인등강간 이후임을 전제로 2020. 10.부터 12.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군사경찰 3회 조사 시 범행일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간은 기억이 안나지만 처음 강간을 당하고 나서니 2020. 10. 24. 이후부터 12월까지 일과시간 중'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그 직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2020. 10. 13. 한 차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A는 2020. 11. 초순경과 하순경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2021. 6. 24. 군검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일시를 문자 별다른 근거 없이 2020. 11. 초순경과 하순경으로 각 기억한다고 답신하여 범행일시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대로 특정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의 시점을 특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88 강간상해 등 [2021. 12. 28.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데, 2021. 4. 4. 피해자가 보관하던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였고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내려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그만하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며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 에브리타임에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① 연인관계의 데이트 폭력과 강간은 더 이상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단이 큰 사회적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②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③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9 군인등강간 등 [2021. 12. 3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군인등강간의 점

피고인은, 1) 2021. 4. 11.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군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2021. 4. 13. 주차된 투싼 승용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군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1) 2021. 4. 8. 훈육근무자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트라넷 PC를 사용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21. 5.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관으로서 교육생을 상대로 군사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교육생의 교육과목 등을 지도·평가하는 등 권한이 있는 자이다.

가. 피감독자간음의 점

피고인은, 1) 2021. 4. 11.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교육생인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고, 2) 2021. 4. 13. 주차된 투싼 승용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교육생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고인은, 1) 2021. 4. 8. 훈육근무자실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2) 2021. 5. 18.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무죄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사정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24.경부터 일과시간 이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훈육근무자실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2021. 4. 22. 전까지 거의 매일 종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피해자도 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평소 사용하는 향수를 선물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는 사적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교관과 교육생의 관계에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어렵지 않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와서 얼굴을 보여달라거나 놀자고 연락하면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거절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본인의 의사 표현에 제한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여러 교육과목 중 한 과목의 교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직접적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언급한 것은 2021. 4. 13. 단 한 차례일 뿐이고 그것도 피고인이 이미 애정을 표현한 이후 시험으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였고 이를 신체접촉과 결부시키기에는 나머지 대화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2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2022. 1. 6.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9. 19. A에게 B를 1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1차 결재 권한이 있는 A에게 B의 성적을 수정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20. C가 교육생의 종합성적을 보고하자, 보고한 문서에 기재된 B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B의 성적을 수정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C는 A 및 교관들에게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전하였고, B의 담임 교관이었던 F가 B 성적을 수정하냐고 물어본 다음 C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적 종합파일을 열어 B의 성적 중 한 과목을 3등에서 2등으로, 다른 한 과목을 2등에서 1등으로 수정하여 B의 성적을 종합 1등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C는 피고인에게 F가 수정한 종합성적을 보고하면서 1등이 B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보고와는 달리 수고했다고 대답하여 B의 성적이 변경되었음을 인식하였다. C는 F가 수정한 허위의 성적을 평가업무관리체계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평가업무관리체계의 성적을 위작하였고, A가 평가업무관리체계에 입력된 성적처리의 1차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평가업무관리체계에 입력된 성적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차로 결재하여 위 성적이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C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도록 교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A에게 교육생 성적 수정을 지시하고, 2018. 9. 20. C에게 허위의 성적을 공전자기록인 평가관리체계에 입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평가업무관리체계에 입력된 성적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차 결재를 하여 위 허위의 성적이 전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개최된 성적 사정심의위원회에 교육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수정된 허위의 성적에 따라 B가 상을 받는 데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B는 성적 사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성적 사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성적 사정심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C에게 B의 성적을 수정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 C는 허위의 교육생 성적을 공전자기록인 평가관리체계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관 관리, 통제 및 감독, 평가 및 성과분석업무, C에 대한 2차 평정 권한, 평가관리체계에 입력된 성적처리에 대한 2차 결재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성적처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C로 하여금 허위의 교육생 성적을 공전자기록인 평가관리체계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① 실제로 A, C 및 F의 진술대로 F는 B의 종합성적이 1위가 아니었음에도 2과목의 성적을 수정하였다. 상장 수여기준에 의하면 추천순위 1, 2위까지 우수자로 심의하므로 성적조작이 없었더라면 B는 상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A 및 C에게 직접적·암묵적으로 성적조작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평정권자이자 지휘·감독을 받는 A, C는 이미 교육이 모두 종료되고, 성적이 종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B를 1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1등으로 만들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 조직 내에서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추상적인 의견 제시만으로도 A, C가 B의 종합성적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적조작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충분히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상 대상이 아니었던 B의 성적을 조작하여 성적 사정심의에 추천 1순위로 심사를 받게 하고 나아가 수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특정 교육생에 대한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독립적인 성적 사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우수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교관 및 교육생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성적 처리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45 군인등강제추행 등 [2022. 1. 25.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4. 12:20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갑자기 혀로 2회 핥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1회 핥음으로써 총 3회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개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휴가 취소 건을 조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1회 핥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무죄

① 피해자는 부대에 전입해온 이후 자신을 잘 챙겨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의 1차 평정권자는 소대장이고, 2차 평정권자는 중대장이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이 있기 전의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련된 대화가 많았으며, 서로 말장난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모습, 하루에 연락한 횟수나 전체적인 빈도수 등을 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반면, 피고인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손목에 입맞춤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도 자신에게 스킨십을 했었기에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동기도 없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증인의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휴가 검토자일 뿐 결재권자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군대 내에서 인사담당자가 다른 과 인원의 휴가에 대하여 조치를 해주지 않을 강력한 영향력이나 힘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강요에 관한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를 보더라도 공소사실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부서관 선후배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오고 갔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③ 사건 이후의 정황에서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 2:41경 피고인에게 먼저 '화해한거 맞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오후 5:37경 '바람쐴기 좋은 날씨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오늘 축구 약속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차 '바람쐴기 좋은 날씨네', '아쉽군'이라고 보내니 피고인이 '한번 뛰고 와'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닌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대화의 흐름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약속이 있어서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강요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 해군 군사법원

○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4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등 [2021. 6.1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14. 오전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국방통합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부서인 B이 훈련장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요청한 것처럼 지출원인 행위 요청에 훈련장 시설공사, 건물수선유지비, 450,000,000원, 수령인 C, 피고인 자신의 계좌번호 D 등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국방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지출원인행위 요청에 대하여 F으로서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D)에 위 국고 450,000,000원을 입금되게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전자기록처럼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침해)

피고인은 2020. 3. 14.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이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위작하고 F으로서 승인한 후, 2020. 3. 16. 11:27경 A에서 사전에 알게 된 당시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2차 아이디, 비밀번호, 3차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지출원인행위 요청대로 지출결의 승인을 함으로써 위 국고 중 450,0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D)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중인 국고 4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1년6월, 추징금 450,000,000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은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피고인이 주식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공전자 기록을 위작,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4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액을 전부 상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홀로 늙은 모친과 아내 및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엄벌이 과해졌을 때 그 가족들이 부수적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4억 5천만 원의 상당한 고액에 이르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동원한 수법도 좋지 않은 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국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어 그 어떤 횡령 범행보다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단하여 그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4 [2021.12.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소속대인 A에서 B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00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소속대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뒤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숙소가 있는 대전 소재 우체국 앞 주차장에 이르러 2020. 11. 19. 00:53경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넣는 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평소 친하게 지낸 상급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해병제1사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6 [2021.08.20.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트위터(twitter.com)에서 피해자 A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포항시'라 한다) 북구 G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같은 불상의 모텔로 들어갔다. 위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자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TV를 보면서 쉬다가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다시 간음할 목적으로 2020. 12. 1. 18:2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불상의 공중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화장실 남자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도록 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돌아 엮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8:49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뒤돌아 엮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2. 12.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00경 포항시 소재 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빌린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남구 J에 있는 C모텔에 가서 주차하고 위 모텔 D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벗었고 피해자도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잠시 쉬다가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2020. 12. 12.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후 위 모텔에서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소재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36경 같은 구 오천읍에 있는 E 모텔로 가서 주차를 하고 위 모텔 F호실로 들어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2년 6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4 [2021.12.21.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여 활동하던 중 2020. 6. 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인능욕사진을 의뢰한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대화방이 있는데 참여해 보아라'는 제의를 받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참교육소'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후, C가 위 '지인능욕사진 의뢰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이에 A은 2020. 7.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참교육소'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위 대화방을 조직 형태로 발전시키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아 활동하기로 마음 먹고, 행동강령인 '필독사항'을 완성한 뒤 위 '사무국', '정보국', '수사국'의 3국 체제를 정비하여 각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A과 'C', 'D'를 수괴로 하고 E(닉네임 'F'), G(닉네임 'H'), I(닉네임 'J'), K(닉네임 'K'), L(닉네임 'M'), N(닉네임 'O'), P(닉네임 'Q') 등을 조직 구성원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AU'을 결성하였다.

이후에는 피고인(닉네임 'R'), 성명불상자(닉네임 'S'), T(닉네임 'U'), V(닉네임 'W'), X(닉네임 'Y'), Z(닉네임 'AA'), AB(닉네임 'AC'), AD(닉네임 'AE'), AF(닉네임 'AG'), AH(닉네임 'AI'), AJ(닉네임 'AK'), AL(닉네임 'AM'), 성명불상자(닉네임 'AN'), 성명불상자(닉네임 'AO'), AP(닉네임 'AQ'), AR(닉네임 'AS')가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이후 A은 직원들로 하여금 트위터 등을 통해 '지인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라거나,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AU이다. 우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능욕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실 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속칭 '검거' 작업을 진행한 후,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AU'의 대화방에 초대 후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기상 보고 등 일상생활의 보고, 반성문 작성, 벌칙 수행 등의 강요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일부 직원이 이탈하고 다수의 직원이 새로 유입되는 형태로 활동하며 'AU'의 직원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조직 내부에 알려지게 된 2021. 3. 8.경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0. 8. 3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AF(닉네임 'AG')으로부터 'AU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여 실적을 내면 박제를 면제하여 주고 전역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9. 'AU'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T'로 개편되었을 때 A으로부터 '작전과장'으로 임명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30.까지 사이에 'AU(AT)' 작전과장으로서 검거된 피해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핵심 체계인 "양호 과실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실적, 과실에 따라 상점,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60점 이상인 피해자들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켜 반성문 작성, 필독사항 수기 작성, 매뉴얼 수기 작성 등을 강요한 뒤 통과 시험에 응시케 하는 것이고, 이는 'AU(AT)'의 전 직원 및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U(AT)'의 통솔 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검거하여 온 뒤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AU(AT)'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V'으로 개편되었을 때 A으로부터 '감사이사(CAO)'로 임명되었고, 그 무렵부터 'AU(AV)'이 활동을 중단한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검거하여 온 뒤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제' 사실을 드러내는 등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며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강요, 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인 'AU'에 가입하고 작전과장, 감사이사(CAO) 등의 직책을 맡아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0. 9. 11. A에게 '보석금' 명목으로 7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 하였음에도 'AU' 이탈에 실패하자 'AU' 활동을 결심하고, 2020. 10. 19. A으로부터 '작전과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0. 10. 19.경 위 'AU'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미성년자 여성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제안하며 접근하고, 2020. 10. 29.경 위 'AU'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AX에게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하여 주겠다며 접근한 뒤 위 각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우리는 AU이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며 'AU'의 격리유치장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하고, 이후 다수 직원들의 범죄집단인 'AU'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각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 및 사진 촬영,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0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AU'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활동하며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피해자들이 지인능욕사진 의뢰 또는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증거물 보관소'에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박제'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박제'작업은 A, 'C', 'D' 등이 피해자에 대한 '박제'를 지시하면 각 직원들이 '박제'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작전과장'으로서 직원들이 박제 작업을 하는 데 조언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N(닉네임 'O') 등 '박제'업무를 담당할 'AU'의 직원들은 피해자 AY에 대한 '박제'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들(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 및 피해자가 합성을 의뢰한 당사자 등에게 'AY는 지인의 합성 사진을 의뢰한 성범죄자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중순경 부터 2021. 2. 중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AU'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5년

피고인의 AU 활동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유희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역할놀이를 지속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인능욕의뢰 사실이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AU의 강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겨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AU 활동인 단체 등의 공동강요, 명예훼손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인능욕의뢰 사실 등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은 AU 활동 당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해외로 우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AU에 약점을 잡혀 강제적으로 AU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2021. 2. 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군 00부대 공병중대 기술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관, 설계담당관,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A로부터 50,000,000원, B로부터 24,000,000원, C로부터 2,550,000원, D로부터 2,475,000원, E로부터 1,090,270원, F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 추징 81,115,270원

피고인은 각 뇌물 금원에 대해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거나, 시공비를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근거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군부대 도시가스 연결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계획서 혹은 그러한 프로젝트가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김찬성과의 투자 약정을 뒷받침하는 투자약정서나 영수증 또한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AA에게 주었다는 5,000만 원의 출처가 나타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2016. 6. 경 현금으로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5. 1. 7. 1천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굳이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 돈의 흐름을 숨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4,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BB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③ B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을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한 흔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BB은 이 점에 대해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자재비 명목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 미군부대 도시가스 연결사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BB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BB로부터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형 C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위 명의의 통장은 2015. 3. 16. 개설된 이래 BB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드러난 업체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된 적은 없다.

○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2 군인등강제추행 [2021. 11. 24. 선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9:30경 A사령부 B 사무실 4층 계단에 위치한 책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의자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C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의 가슴 앞에서 손을 맞잡아 악수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신체 방향으로 휘둘러 피고인의 팔 하박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충격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심 판단 및 이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쪽으로 팔을 휘둘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악수를 하는 도중 손을 좌우로 흔들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가 자신의 가슴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좌우로 흔들며 자신의 가슴을 충격하였고, 너무 놀라 현장에서 울음을 터트렸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나아가 피고인과 악수를 하였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범하게 상하로 악수를 하다가 좌우로 1~2회 정도 흔들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 분이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와 악수한 이후 피해자가 X자로 몸통을 가린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미안'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④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미안'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항의에 당황하고 놀라 한 말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2017. 3. 30. 사이 3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2017. 3. 24. 최초 사과 문자에는 '내 생각이 짧았고 행동이 경솔했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라고 작성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화가 난 이유를 잘 모른 상태에서 빨리 일을 해결하고자 문자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변호와는 달리 피고인은 당시 어느 특정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021 군사법원 연감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법률

- 군사법원법(2021. 9. 24. 일부개정 / 2022. 7. 1. 시행)
- 군형법(2016. 5. 29. 타법개정)
- 군용품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 3. 11. 전부개정 / 2022. 7. 1. 시행)
-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2022. 3. 11. 전부개정 / 2022. 7. 1. 시행)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9. 7. 2.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4. 타법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7. 7. 26.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21. 10. 14. 일부개정)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2017. 3. 27. 제정)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20. 11. 26.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21. 10. 25. 타법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20. 2. 3. 타법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21. 10. 25.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21. 10. 25. 타법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20. 2. 3.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3.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20. 7. 28.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일부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8. 1. 22. 타법개정)

□ 국방부 훈령(군사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20. 7. 2. 일부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7. 6. 22. 일부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20. 9. 3.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2020. 7. 2.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21. 10.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21. 4.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21. 10. 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운영 예규(2019. 7. 10.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20. 7. 1. 일부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8. 2. 1. 일부개정)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21. 5. 31. 부분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9. 4. 17.)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21. 1. 13.)
- 지침·지침서
 - 국선변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 부착명령청구사건 처리 지침(2019. 4. 16.)
 - 군사법원 관할 지침(2020. 7. 7.)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8. 8. 24. 전부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7. 7. 7. 일부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업무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8. 2. 2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 정본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8. 2. 20.)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8. 2. 20.)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8. 2. 20.)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8. 12. 1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8. 2. 20.)
 - 전시 군사법원 운영 예규(2019. 5. 1.)
 - 법원정보체계 입력 및 활용 매뉴얼(2019. 6. 1.)
 -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속기·녹음 고지 및 공판조서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2019. 9. 10.)

2021 군사법원 연감

2021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p>법률 제18398호</p>	<p>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신설). -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제266조의17 신설). 	<p>2021. 8. 17. (2021. 12. 9.)</p>
<p>법률 제17680호</p>	<p>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대상을 정함(제4조)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p>2020. 12. 22. (2021. 6. 23.)</p>

법률호수	법률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법률 제179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1년에서 3년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함(제1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조 제4항 제2호).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 	2021. 3. 23. (2021. 9. 24.)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2021. 1. 26. (2022. 1. 27..)

2021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22년 6월 28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재경지원반 M220640352



신고유형
혹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軍)·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급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법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sc.mil.kr

